

자산이전과세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2009. 12

김 진

서 언

최근의 금융위기·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선진국들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재정정책의 팽창과 더불어 조세, 특히 자산이전과세를 과감하게 완화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한 구성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또는 선진화국 경제의 인구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진전됨에 따라 상속과(자녀세대에게 생전) 증여에 대한 경제적 의사결정 행태가 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국 정부들의 조세정책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경제가 발전하면서 경제주체들인 개인과 기업의 자산규모가 커지고 있다. 기업과 달리 개인은 소유 자산을 다음 세대로 이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세대간 자산이전이 규모와 방법면에서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세대간 자산이전에 대한 주요 과세인 상속세 및 증여세의 GDP 대비 비중이 늘고 있는 바, 자산관리 효율화를 통한 경제선진화의 일환으로 세대간 자산이전과세의 실용적 개선방안이 시기적으로 도출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상속·증여세가 세대간 부의 무상이전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임을 경제학적 이론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자산이전과세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현황 및 문제점 파악에 근거하여 자산이전과세의 이슈별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하고 논하고자 하였다.

먼저 구체적으로는 '부의 무상이전'이 다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자산이전행위 경제모형을 설정하고 국세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여 상속·증여세가 상호보완적인 관계임을 밝힌 후에, 상호보완성을 중심으로 상속·증여세의 현황 및 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자산이전과세의 현황 및 자산이전행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본 보고서는 상속·증여과세 개선방안을 이슈별로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우선 상속·증여세 과세체계의 조정을 살펴보고, 상속·증여 공제범위 조정을 고찰하고 있다. 또한 향후 더 활발히 논의될 재산평가 방법의 개선에 대해서도 천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상속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이슈별 개선방안의 제시에는 좀 더 큰 틀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소득세와 재산세의 접경에 있다는 특징에 의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자산이전과세의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본 연구가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김진 박사가 집필하였다. 저자는 본 보고서의 집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많은 선행연구자들과 정책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보내고 있다. 또한 원내 세미나 토론자, 익명의 논평자 등 본 연구사업에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이 밖에 본 보고서를 발간하기까지 원고 정리와 교정에 도움을 준 류인경 주임연구원, 송유진 연구행정원, 그리고 연구출판팀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

2009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원 윤 희

요약 및 정책시사점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세대간 자산이전에 과세되는 상속·증여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자산이전과세의 현황을 과세체계, 세수구조, 세부담 지표, 자산이전 규모 및 생전증여비율의 추이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세대간 자산이전행위에 대한 분석을 상속 동기에 대한 연구, 개인자산이전행위에 대한 실증분석, 기업상속행위에 대한 연구, 상속·증여세의 주요 논점 등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개선방안 및 시사점으로는 상속·증여 과세체계 조정, 상속·증여 공제 조정, 재산평가 방법 개선, 기업상속제도 개선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자산이전과세의 현황을 과세체계, 세수구조, 세부담 지표, 자산이전 규모, 생전증여비율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상속세수와 증여세수는 2002년까지 비슷한 수치를 보이다가, 2003년 이후 증여세수가 상속세수를 현저히 앞지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최근 다른 나라들 추세와 유사하게 자산이전과세의 비중이 상속세에서 증여세로 이동하는 것을 보여준다. 상속·증여세수의 GDP 대비 세수비중은 OECD국가들과 비교할 때 중간 수준을 나타냈다. 2000년 이후 상속세의 평균유효세율은 34~37%, 증여세의 평균유효세율은 25~31%의 분포를 나타냈다. 이전되는 재산의 유형으로 볼 때, 2004년 이후 금융자산의 비중이 부동산자산의 비중을 앞질렀다. 상속과 대비되는 생전증여비율은 2000년부터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간 자산이전행위에 대한 분석의 출발점인 상속 동기에 대한 연구를 본문에서 자세히 비교 서술함으로써 자산이전과세의 과세

근거가 매우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음을 보였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기본적인 경제모형을 순수 이타적 상속이론에 근거하여 제시하였고, 경제모형의 균형으로부터 자산이전행위에 대한 실증분석의 회귀식을 도출할 수 있었다. 개인자산이전행위에 대한 실증분석으로 수행한 증여세수 추정 결과, 증여세수의 가격탄력성은 단기적으로는 5.99로 매우 높은 반면 장기적으로는 1.38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증여세수 또는 상속세수의 단기적·장기적 가격탄력성의 차이는 자산이전과세에 대한 조세정책이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지난 몇 년간 상속증여세제 개혁의 기본목표로 상속·증여세제의 글로벌 기준과의 조화, 성장잠재력의 확충, 응능부담원칙의 실현과 부의 분산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한 구체적 개혁방안으로 유산취득세형으로의 전환, 창업 유도를 위한 증여세 특례제도의 확충, 상속증여세제 세율수준의 검토, 소득세제와의 관계 명확화 및 역할 조정 등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확장적 조세·재정정책하에서 이상에서 제기한 개혁방안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개선방안이 주효하리라 생각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개선방안 및 시사점으로 상속증여 과세체계 조정, 상속증여 공제 조정, 재산평가방법 개선, 가업상속제도 개선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째, 상속증여 과세체계를 검토·분석하였을 때 좀 더 과감한 세율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 우선 OECD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소득세수 대비 상속세수 또는 소득세수 대비 재산세수 비중이 우리나라가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상속세 세율을 소득세 세율과 비교할 때 상속세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최소이전금액의 크기도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향후 상속세 세율의 완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상속·증여 공제의 범

위를 재조정하여야 하며, 특히 영세점을 낮추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의 상속제 면세점 또는 영세점을 1인당 GDP 수준의 배수로 비교·검토한 결과, 우리나라는 거의 60배로 나타나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상속·증여 공제범위 재조정의 한 방향으로 영세점을 낮추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이전 대상 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 특히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에 관해서는 평가방법의 다양화, 평가기준의 다양화, 그리고 할증 또는 할인제도에 대한 검토를 고려할 수 있다. 넷째, 기업상속제도는 그간 여러 방면으로 기업상속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도하였지만 결국 좀 더 실제적으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자산이전과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분석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이 완결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속·증여세가 소득세·재산세 구조의 접점에 위치하고 있음에 유의한다면, 우선 소득세·재산세 구조의 선택이 선행된 후에 상속·증여세의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선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가 개선방안 선택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본 보고서의 한계로는 다음을 지적할 수 있겠다. 우선 상속·증여행위에 대한 자료로 『국세통계연보』를 사용하였다. 선진국의 연구에서 보듯이, 좀 더 정치한 모형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세무자료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기업상속과 관련하여 좀 더 정치한 형태의 자료가 사용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미시적 접근에 근거한 분석이 상속·증여세제에 직면한 개인의 자산이전행위에 대한 바로미터로 활용되어야 거시경제 차원의 시산(calibration)분석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자산으로는 금융자산의 비중이 상승하였지만 부동산자산의 비중이 가장 크다. 따라서

부동산자산에 대한 과세, 자산평가, 공제 등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 또한 미시적 자료의 사용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이 논의의 출발점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나라 경제가 선진화하면서 자산집적에 대한 정책개발이 자본가 정신(entrepreneurship)의 제고에 주안점을 주기 위해서는, 자산에서 자본으로의 전환이 세대 간 이전에 의해서 약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목 차

I. 서론	15
II. 자산이전과세 현황	17
1.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17
2. 상속·증여세 세수구조	22
3. 상속·증여 세부담 지표	33
4. 자산이전 규모 및 생전증여비율	36
가. 자산형태별 이전자산규모	36
나. 생전증여 비율	40
III. 자산이전행위 분석	43
1. 상속동기에 대한 연구	43
2. 개인자산이전행위	48
3. 기업상속행위	57
4. 상속·증여세 주요 논점	64
가. 상속·증여세 완화논쟁	67
나. 상속·증여 분석논점	69
다. 소득과세와의 관계 검토	71
라. 유산취득세 전환의 검토	75
IV. 이슈별 분석과 개선방안	77
1. 상속·증여 과세체계 조정	78
2. 상속·증여 공제 조정	98

3. 재산평가방법 개선	101
가. 우리나라 현황	101
나. 외국 현황	109
다. 개선방안	119
4. 가업상속제도 개선	124
가. 우리나라 가업상속제도 현황	125
나. 외국 가업상속제도 현황	128
다. 개선방안	142
 V. 결론	 144

표 차례

〈표 II-1〉 각종 상속재산공제	18
〈표 II-2〉 각종 증여재산공제	19
〈표 II-3〉 상속·증여세의 법정세율구조	21
〈표 II-4〉 상속세 과세자 비율	23
〈표 II-5〉 상속세 세수변동 추이	24
〈표 II-6〉 상속재산가액 규모별 유효세율과 공제비율(2007년) ..	25
〈표 II-7〉 상속세 결정현황	26
〈표 II-8〉 상속세 평균유효세율	27
〈표 II-9〉 증여세 결정현황	28
〈표 II-10〉 증여세 평균유효세율	28
〈표 III-1〉 증여세수 추정 결과	54
〈표 III-2〉 증여세수 변화 추정 결과	57
〈표 III-3〉 주요국의 기업 승계 현황	58
〈표 III-4〉 조사대상 중소기업인 추출	59
〈표 III-5〉 설문조사 응답자특성	60
〈표 III-6〉 상속세, 법인세, 갑종근로소득세 추정	63
〈표 III-7〉 추정 상속세액의 국제 비교	63
〈표 IV-1〉 재산제세 부과현황	80
〈표 IV-2〉 양도소득세 세율	82
〈표 IV-3〉 양도소득세 부과 현황	83
〈표 IV-4〉 주요 국가 소득세율과 상속세율 비교	85

〈표 IV-5〉 상속세 비과세 국가의 소득세율	88
〈표 IV-6〉 유산취득세형 국가의 최고세율 기준금액 비교	89
〈표 IV-7〉 유산취득세형 국가의 최고세율 기준금액 비교	90
〈표 IV-8〉 자본이득세형 국가의 최고세율 기준금액 비교	91
〈표 IV-9〉 상속·증여세율 체계 국제비교	92
〈표 IV-10〉 1인당 GNI 대비 상속공제 수준 및 최고세율 구간 국제 비교	99
〈표 IV-11〉 주요국의 상속세 면세점 국제비교	100
〈표 IV-12〉 주요국의 기업승계관련 상속세 운영현황	128
〈표 IV-13〉 독일의 현행 상속세율	138

그림 차례

[그림 II-1] 상속·증여세 세수추이	22
[그림 II-2] 상속재산규모별 총결정세액 점유비율(2007년)	25
[그림 II-3] 상속·증여세의 조세총액 대비 세수 비중	30
[그림 II-4] 상속·증여세의 GDP 대비 세수 비중	30
[그림 II-5] GDP 대비 상속 및 증여세 수입 비중의 국가별 비교	31
[그림 II-6] 주요국의 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 추이 비교	32
[그림 II-7] 주요국의 총세수 대비 상속세수 비중 추이 비교	32
[그림 II-8] 상속·증여세의 최고법정세율 추이	34
[그림 II-9] 상속·증여세의 평균유효세율 추이	35
[그림 II-10] 상속·증여세의 평균유효세율 추이	35
[그림 II-11] 자산종류별 상속재산가액	37
[그림 II-12] 자산종류별 상속재산가액	37
[그림 II-13] 증여재산 종류별 재산가액	38
[그림 II-14] 증여재산 종류별 재산가액	38
[그림 II-15] 재산 종류별 이전재산가액	39
[그림 II-16] 재산 종류별 이전재산가액	39
[그림 II-17] 재산가액: 상속, 증여 (1965~2007년)	40
[그림 II-18] 생전증여비율(1965~2007년)	40
[그림 II-19] 재산가액: 상속, 증여 (1996~2007년)	41
[그림 II-20] 생전증여비율 (1996~2007년)	42
[그림 III-1] 가업승계 의향	60
[그림 III-2] 가업승계의 주된 장애 요인	61

[그림 III-3]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가 어려운 이유	62
[그림 IV-1] 1인당 GNI 대비 소득세 최고구간	79
[그림 IV-2] 1인당 GNI 대비 상속·증여세 최고구간	79
[그림 IV-3] 양도소득세 부과 현황	84
[그림 IV-4] OECD 국가의 소득세와 상속세의 분포	86
[그림 IV-5] 총세수 대비 상속·증여세수와 개인소득세수 비교	87
[그림 IV-6] 총세수 대비 재산세와 개인소득세수 비교	87
[그림 IV-7] 1인당 GNI 배수당 상속세 과표구간 및 세율 분포 (한국, 미국, 영국, 독일)	93
[그림 IV-8] 1인당 GNI 배수당 상속세 과표구간 및 세율 분포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93
[그림 IV-9] 국가별 GNI 배수로 표현한 과표구간과 세율 비교 (GNI 10배수까지만)	95
[그림 IV-10] 국가별 GNI 배수로 표현한 과표구간과 세율 비교 (GNI 10배수까지만)(한국, 미국, 영국, 독일)	95
[그림 IV-11] 국가별 GNI 배수로 표현한 과표구간과 세율 비교 (GNI 10배수까지만)(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96
[그림 IV-12] 주요국 상속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 추이	97
[그림 IV-13] 1인당 GNI 배수로 표현한 공제금액	101

I. 서론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산집적이 이루어지고 세대간 자산이전이 향후 큰 규모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세대간 자산이전과세인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루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¹⁾. 이론적으로 볼 때, 세대간 자산이전에 대한 과세는 자산의 소유자가 바뀌고 자산이전이 소득발생과 연관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소득세와 재산세의 접경에 있고, 다기간에 걸쳐 다양한 자산으로 이루어지는 복잡다기한 경제행위를 다루는 측면이 있다. 또한 이러한 소득발생을 세대간 이전이라는 특수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불로소득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제언이 나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자산이전과세의 현황을 분석하고, 자산이전행위에 대한 경제적 실증분석과 국제간 비교분석을 통해 주요 이슈별로 자산이전과세체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최근까지 이루어진 상속·증여세 개혁이라는 거대담론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국제경쟁력 차원에서의 자산이전과세 선진화 또는 효율화에 대한 시론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다.

먼저 자산이전행위에 대한 과세로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이전행위에 세부담이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연결고리를 분석하고자 한다. 자산이전과세체계의 이해를 위해 상속세와 증

1) 유상으로 이루어지는 자산이전에 대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는 거래세이지 보유세 또는 대표적인 자산이전과세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자산이전과세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여세 각각의 세율구조, 세수구조, 세부담지표, 이전자산의 규모 및 특징 등을 살펴본다. 상속 대비 생전증여의 비율 또한 향후 이루어질 실증분석의 주요 변수이다. 이들 제 변수들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개인의 자산이전행위에 초점을 두어 세대간 사후이전(상속)과 생전이전(증여)의 관계를 살펴보는 자산이전모형을 도입하여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자산이전모형은 실증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풍부한 서구에서는 매우 정교하게 발달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통계자료』를 통한 거시자료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간단한 형태의 자산이전모형을 Joulfaian(2004)에 의거하여 사용하였다.

주요 이슈별 개선방안으로는 상속·증여 과세체계 조정, 상속증여 공제 조정, 재산평가 방법 개선, 가업상속제도 개선 각각에 대해 주로 OECD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상속·증여세는 과세원칙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또한 정부 형태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국제비교를 통한 단순한 비교 및 이에 근거한 제시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비교적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검토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II장에서는 자산이전과세의 현황을 과세체계, 세수구조, 세부담 지표, 자산이전 규모 및 생전증여비율의 추이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제III장에서는 세대간 자산이전 행위에 대한 분석을 상속 동기에 대한 연구, 개인자산이전행위에 대한 실증분석, 기업상속행위에 대한 연구, 상속증여세의 주요 논점 등을 다룬다. 제IV장에서는 개선방안 및 시사점을 상속·증여 과세체계 조정, 상속증여 공제 조정, 재산평가방법 개선, 가업상속제도 개선 등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제V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을 다룬다.

II. 자산이전과세 현황

1.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상속세와 증여세는 개인 간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상속세는 상속 및 유증의 경우에 부과된다.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로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상속인에게 증여하려는 것을 방지하고자 부과된다. 본 소절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체계를 비교하여 그 유사점을 살펴보고 경제적인 상호보완성이 존재함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유의미한 경제적 변수들을 도출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간단하게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체계를 과세표준까지 정리하면, 상속의 경우는 상속재산가액에서 해당 재차증여(재산)가액 등을 합한 후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구하고, 증여의 경우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재차증여가액을 더한 후 증여공제를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구한다. 이러한 과세표준에 과세구간별 법정세율을 곱하고 세액공제를 하여 결정세액을 구하는 과정은 동일하다. 이를 통해 두 세금이 유사한 과세체계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속세 과세표준을 구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래의 상속재산에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의 간주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을 합하고, 비과세재산과 과세가액불산입을 차감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정한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차감하고 사전 증여재산 가산액, 즉 '재차증여가액'을 합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정한다. 이에서 배우자공제,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나 일괄공제액 중의 하나,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

속공제,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수수료공제 등의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구한다. 여기서 상속의 경제적 기능과 관련하여 중요한 경제적 변수로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세 과세표준을 들 수 있다. 각종 상속공제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표 II-1>과 같다.

〈표 II-1〉 각종 상속재산공제

구분	항목	공제내용	한도
① 기초공제		2억원	
②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자공제	법정상속지분내 실제 상속받은 가액 1인당 3,000만원 500만원×20세까지의 잔여연수 1인당 3,000만원 500만원×75세까지의 잔여연수	최소 5억원, 30억원 한도
③ 일괄공제		5억원	
④ 기업상속공제		기업상속재산가액	1억원
⑤ 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재산가액	2억원
⑥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가액이 -2000만원 이하 -2000만원~1억원 -1억원 초과	순금융자산=(금융재산-금융부채) 전액 2,000만원 순금융재산가액×20%	2억원
⑦ 재해손실공제	신고기간 이내에 화재·폭발·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당해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주: 1. ① 기초공제 + ② 인적공제(배우자공제는 제외)와 ③ 일괄공제 중 선택
2. 납세의무자가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2억원)를 제외한 상속공제의 적용에서 배제

상속세 과세표준이 주어지면 과세구간에 따라 법정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을 산정한다. 이때 세대생략 상속의 경우 30%에 해당하는 할증세액을 첨가한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상속세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이에 연부연납, 물납 등을 차감하여 고지세액을 산정한다. 여기서 상속의 경제적 기능과 관련하여 중요한 경제적 변수로 상속세결정세액을 들 수 있다.

증여세 과세표준을 구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래의 증여재산에 증여의제 재산을 합하고 비과세재산과 불산입재산을 차감한 후 다시 채무를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정한다. 증여세과세가액에 10년 내 재차증여가산액을 더하고 인적공제,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각종 증여공제를 제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구한다. 증여의 경제적 기능과 관련하여 중요한 경제적 변수로 증여재산가액, 재차증여재산가액, 그리고 증여세 과세표준을 들 수 있다. 각종 증여공제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2>와 같다.

<표 II-2> 각종 증여재산공제

항목	공제내용	비고
배우자공제	6억원 ¹⁾	모든 경우 10년간 공제금액임
직계존비속	3천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기타친족	500만원	
재해손실공제	신고기한 이내에 화재·폭발·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당해 손실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주: 1. 2008년부터 배우자 공제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 등을 언급하면서 상속·증여세가 그것들 다음으로 취급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²⁾. 상속·증여세의 세율구조 또한 소득세 등과 같이 누진구조를 갖는다. 물론 과세구간들이 다른 세목들과 상이하긴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1996년까지 상속세와 증여세는 그 과세구간이 상이하었다.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동일한 한계세율에 대한 과세표준이 작았다. 따라서 동일한 액수를 갖고 상속과 증여를 비교 선택하는 의사결정자에게 (다른 모든 것들이 동일하다면) 증여가 상속보다 더 조세부담이 작았다고 할 수 있었다.

1997년부터는 과세구간과 세율이 단일화되어 법정세율이 동일하게 됐다. 따라서 결정세액 전체를 과세표준 전체로 나눈 평균유효세율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의 경우 최대 과세구간에 대한 임계치가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법정세율 기준의 세부담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세율 및 과세구간을 포함하는 법정세율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동법 제2조

〈표 II-3〉 상속·증여세의 법정세율구조

1996.12.31 이전		1997.1.1~1999.12.31	2000.1.1 이후
〈상속세〉		과세구간 및 세율 단일화 ·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 10억원 이하 30% · 50억원 이하 40% · 50억원 초과 45%	·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 10억원 이하 30% · 30억원 이하 40% · 30억원 초과 50%
5천만원 이하	10%		
2억5천만원 이하	20%		
5억5천만원 이하	30%		
5억5천만원 초과	40%		
〈증여세〉			
2천만원 이하	10%		
1억5천만원 이하	20%		
3억원 이하	30%		
3억원 초과	40%		

주: 조부가 손자에게 상속·증여하는 경우와 같은 세대생략 상속·증여시 30% 할증 과세

1996년 이전에는 증여세보다 상속세가 과세구간의 임계치가 컸기 때문에 같은 법정한계세율을 갖더라도 증여세보다 상속세가 자산이전 행위에 대해 더 유리하였다. 같은 금액의 자산을 이전할 때 상속세보다 증여세의 한계세율이 작았기 때문이다.

2000년 최상위 과세구간의 최저임계치가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하향조정됨으로써 상속·증여세의 세부담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조세회피로 인한 과세기회 부족의 위험을 세원 확대로 보완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이루어진 상속·증여세 포괄주의에 의해 과세기회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최저임계치의 변화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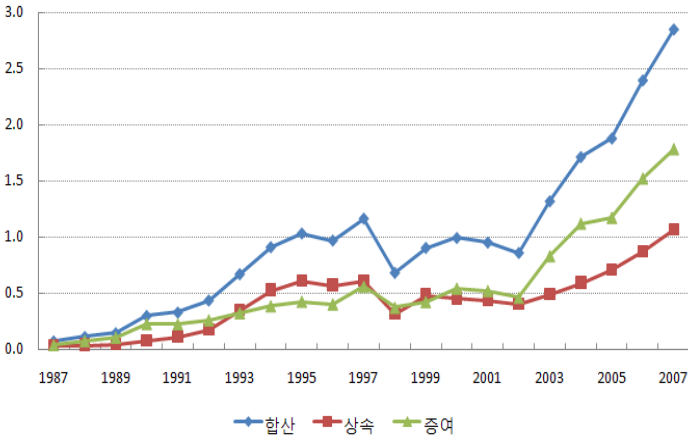
상속·증여세의 법정세율구조는 1997년부터 동일하다. 그러나 증여세가 상속세의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상속공제와 증여공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실제 세부담의 측면에서 보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상속·증여세 세수구조

다음의 [그림 II-1]은 상속세수, 증여세수, 상속·증여세수의 시간적 추이를 1987년부터 2007년까지 나타내고 있다. 상속세수와 증여세수는 2002년까지는 비슷한 수치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다가, 2003년 이후에는 증여세수가 상속세수를 현저히 앞지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7년 현재 상속세수는 1조 590억원, 증여세수는 1조 7,830억원이다. 특히, 2003년 이후 상속세, 증여세 모두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그림 II-1] 상속·증여세 세수추이

(단위: 조원)



상속세 과세자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4>와 같다. 상속세 과세자 비율은 2002년 이후 0.7% 정도를 계속 유지하다가 2007년에는 1%로 약간 증가하였다. 2007년 현재 상속세 과세자 수는 2,603명이다. 국세청은 모든 사망자에 대해 상속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데, 다만 사망 시점과 상속세 과세 여부 결정 시점과는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도별 결정 인원은 실제 해당연도의 사망자보다 1만여명 많거나 적

다.

상속세 과세자 비율이 낮은 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최소한 망자가 남은 자에게 물적 토대를 보호해준다는 과세철학에서 비롯된 큰 규모의 공제에 기인한다. 우리나라 경제가 현대화되고 자산이 집적됨에 따라 향후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신고주의 또는 계세주의에 입각하여 상속세 과세자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표 II-4〉 상속세 과세자 비율

(단위: 명,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과세인원(A)	1,661	1,720	1,808	1,816	2,221	2,603
사망자수(B)	245,317	244,506	244,217	243,883	242,266	244,874
결정인원(C)	241,193	227,209	258,021	227,004	304,215	355,789
비율(A/B)	0.68	0.70	0.74	0.74	0.92	1.06
비율(A/C)	0.69	0.76	0.70	0.80	0.73	0.73

〈표 II-5〉의 GDP 대비 상속세 추이를 살펴보면, 2002년 0.06%에서 이후 증가하는 추세로 2007년에는 0.12%로 나타나고 있다. 국세 대비 상속세 추이를 살펴보면, GDP 대비 상속세 추이와 마찬가지로 약간씩 상승하여 2002년 0.38%에서 2007년 0.66%로 증가하였으나, 상속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표 II-5〉 상속세 세수변동 추이

(단위: 10억원,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GDP(A)	684,264	724,674	779,381	810,516	848,045	901,189
국 세(B)	103,968	114,664	117,795	127,465	138,044	161,414
상속세(C)	398	485	588	702	868	1,059
C/A	0.06	0.07	0.08	0.09	0.10	0.12
C/C	0.38	0.42	0.50	0.55	0.63	0.66

〈표 II-6〉의 상속재산 규모별 총결정세액 점유비율을 살펴보면, 상속재산 100억~500억원 구간의 피상속인은 82명으로 상속세 과세인원의 3.1%이나, 총결정세액은 4,562억원으로 39.1%를 차지하고 있다. 상속재산가액 유효세율도 1억원 이하 구간 1%에서 상속재산가액이 늘어날수록 유효세율은 급격히 증가하여 50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43%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II-2]는 상속재산 규모별 총결정세액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상속재산가액 규모를 1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3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각각 1.9%, 29.3%, 69.6%로 나타나, 50억원 초과 구간이 총결정세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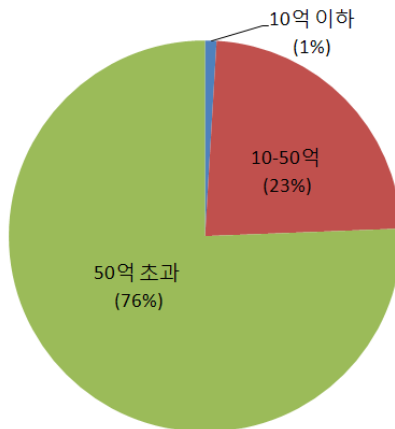
〈표 II-6〉 상속재산가액 규모별 유효세율과 공제비율(2007년)

(단위: 명, 백만원)

상속재산 가액규모별	피상속 인 수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총결정 세액	유효 세율	공제 비율
합계	2,603	5,803,417	2,186,698	3,616,719	1,390,659	1,166,555	0.20	0.38
1억 이하	259	12,569	5,004	7,565	950	89	0.01	0.40
3억 이하	169	27,519	13,495	14,024	1,758	202	0.01	0.49
5억 이하	78	29,966	16,988	12,978	1,995	505	0.02	0.57
10억 이하	436	297,979	214,587	83,392	13,555	10,138	0.03	0.72
20억 이하	903	1,203,147	804,182	398,965	82,32	69,287	0.06	0.67
30억 이하	330	719,628	359,540	360,088	96,534	83,008	0.12	0.50
50억 이하	208	732,302	286,088	446,214	145,140	121,247	0.17	0.39
100억 이하	134	840,575	252,609	587,966	234,888	199,606	0.24	0.30
500억 이하	82	1,414,921	221,117	1,193,804	559,492	456,228	0.32	0.16
500억 초과	4	524,811	13,088	511,723	254,019	226,245	0.43	0.02

- 주: 1. 유효세율 = 결정세액/상속세과세가액
 2. 공제비율 = 상속공제/상속세과세가액
 3.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과는 다름

[그림 II-2] 상속재산 규모별 총결정세액 점유비율(2007년)



상속세 결정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7>과 같다. 인원의 과세비율은 2002년 이후 0.7~0.8%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상속재산가액의 과세비율은 2002년 23.4%에서 2007년 31%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II-7> 상속세 결정현황

(단위: 명, 백만원, %)

	합계		과세			과세미달		과세비율	
	인원	상속재산 가액	인원	상속재산 가액	총결정세 액	인원	상속재산 가액	인원	상속재 산가액
2002	241,193	12,772,043	1,661	2,993,597	473,674	239,532	9,778,446	0.7	23.4
2003	227,209	11,995,521	1,720	3,127,966	462,331	225,489	8,867,555	0.8	26.1
2004	258,021	15,668,786	1,808	4,791,927	953,973	256,213	10,876,859	0.7	30.6
2005	227,004	13,891,030	1,816	4,644,911	725,607	225,188	9,246,119	0.8	33.4
2006	304,215	17,804,629	2,221	4,736,341	757,582	301,994	13,068,288	0.7	26.6
2007	355,789	21,103,460	2,603	6,542,861	1,166,555	353,186	14,560,599	0.7	31.0

2000년 이후의 상속세 평균유효세율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8>과 같다. 상속세 결정인원은 2002년 1,661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2,603명이 되었다. 상속재산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을 1인당으로 비교해보면, 2004년을 정점으로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평균실효세율 또한 최근의 수치들은 2004년의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이는 상속이전으로부터 증여이전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표 II-8〉 상속세 평균유효세율

(단위: 명, 백만원, %)

	결정인원	상속재산 가액 (A)	과세 표준 (B)	산출 세액 (C)	1인당			평균실효세율	
					상속 가액	과세 표준	산출 세액	C/A	C/B
2000	1,389	3,413,441	1,865,282	639,102	2,457	1,343	460	18.7	34.3
2001	1,982	3,081,159	1,433,983	449,280	1,555	724	227	14.6	31.3
2002	1,661	2,993,597	1,767,097	583,178	1,802	1,064	351	19.5	33.0
2003	1,720	3,127,966	1,541,818	534,966	1,819	896	311	17.1	34.7
2004	1,808	4,791,927	2,875,659	1,171,007	2,650	1,591	648	24.4	40.7
2005	1,816	4,644,911	2,645,835	1,032,624	2,558	1,457	569	22.2	39.0
2006	2,221	4,736,341	2,510,410	931,919	2,133	1,130	420	19.7	37.1
2007	2,603	6,542,861	3,616,719	1,390,659	2,514	1,389	534	21.3	38.5

증여세 결정현황과 증여세 평균유효세율은 〈표 II-9〉와 〈표 II-10〉에 나타나 있다. 증여세 결정인원은 2000년 37,165명에서 2004년 103,024명으로 현저히 늘었다가, 2005년과 2006년에 62,925명, 88,279명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2007년 121,471명으로 현저히 증가하였다.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을 1인당으로 살펴보면, 2005년을 정점으로 최근 약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1인당 증여재산가액은 2005년 2억원에서 2007년 1.7억원으로, 1인당 증여세 산출세액도 2005년 4,700만원에서 2007년 3,300만원으로 약간 하락하였다. 평균실효세율 또한 최근의 수치들은 2005년의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표 II-9〉 증여세 결정현황

(단위: 명, 백만원)

	합계		과세			과세미달	
	인원	증여재산 가액	인원	증여재산 가액	총결정세액	인원	증여재산 가액
2002	130,097	7,675,106	55,049	5,725,625	656,930	75,048	1,949,481
2003	101,976	9,728,961	54,441	7,663,495	958,051	47,535	2,065,466
2004	196,348	16,498,467	103,024	13,336,640	1,521,199	93,324	3,161,827
2005	120,866	14,958,087	62,925	12,628,427	1,394,547	57,941	2,329,660
2006	154,868	17,813,625	88,279	15,370,061	1,817,124	66,589	2,443,564
2007	239,671	23,251,475	121,471	20,030,634	2,794,586	118,200	3,220,841

〈표 II-10〉 증여세 평균유효세율

(단위: 명, 백만원, %)

	결정 인원	증여재산 가액	과세 표준	산출 세액	1인당			평균실효세율	
					증여 가액	과세 표준	산출 세액	C/A	C/B
2000	37,165	5,747,667	4,939,427	1,549,591	155	133	42	27.0	31.4
2001	49,645	6,533,226	5,532,642	1,591,307	132	111	32	24.4	28.8
2002	55,049	5,725,625	4,435,486	1,072,792	104	81	19	18.7	24.2
2003	54,441	7,663,495	6,156,833	1,586,499	141	113	29	20.7	25.8
2004	103,024	13,336,640	10,171,371	2,275,017	129	99	22	17.1	22.4
2005	62,925	12,628,427	10,239,632	2,957,755	201	163	47	23.4	28.9
2006	88,279	15,370,061	12,282,063	3,021,348	174	139	34	19.7	24.6
2007	121,471	20,030,634	16,019,612	4,058,526	165	132	33	20.3	25.3

상속세 및 증여세 세수는 1980년대 초반까지 그다지 크지 않았다. 물론 경상가격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이지만 실질가격으로 계산하여도 유사한 추이를 나타낸다.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7년에 정점을 이루었고 그 이후 하락하다가 다시 증가하여 1997년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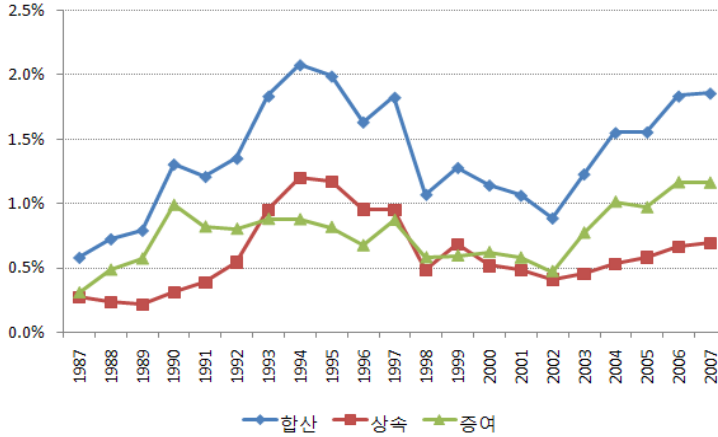
상속세수와 증여세수는 2002년까지는 비슷한 수치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다가, 2003년 이후에는 증여세수가 상속세수를 현저히 앞지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세수의 비중이 상속세에서 증여세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속·증여세의 조세총액 대비 세수 비중과 GDP 대비 세수 비중을 나타내는 [그림 II-3]과 [그림 II-4]를 살펴보면, 상속·증여세수에 서와 유사한 추이를 보인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수 비중을 살펴보면 2007년 현재 조세총액 대비 1.86%이고, GDP 대비 0.32%로 상속·증여세가 국세 및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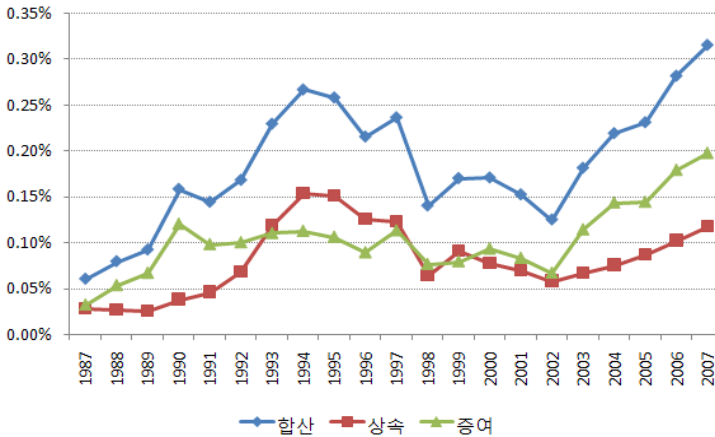
GDP 대비 상속세 추이를 살펴보면, 2002년 0.06%에서 이후 증가하는 추세로 2007년에는 0.12%로 나타나고 있다. 국세 대비 상속세 추이를 살펴보면, GDP 대비 상속세 추이와 마찬가지로 약간씩 상승하여 2002년 0.38%에서 2007년 0.66%로 증가하였다.

GDP 대비 증여세 추이를 살펴보면, 2002년 0.07%에서 이후 증가하는 추세로 2007년에는 0.2%를 나타내고 있다. 국세 대비 증여세 추이를 살펴보면, GDP 대비 증여세 추이와 마찬가지로 상승하여 2002년 0.47%에서 2007년 1.16%로 증가하였다.

[그림 II-3] 상속·증여세의 조세총액 대비 세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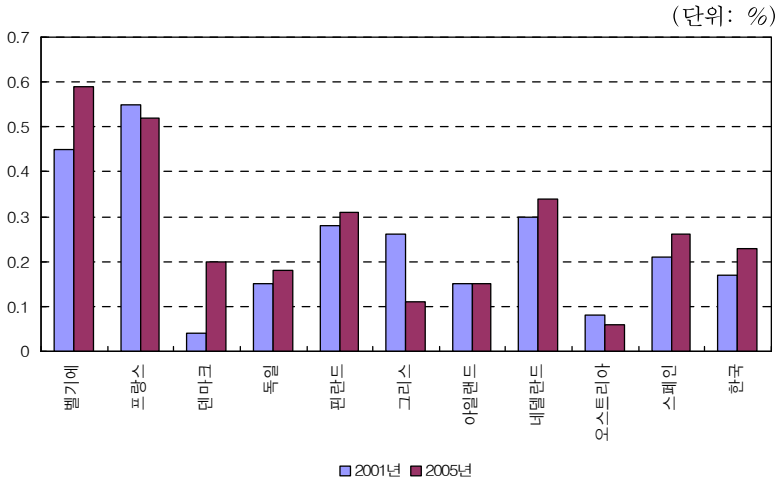
[그림 II-4] 상속·증여세의 GDP 대비 세수 비중



상속·증여세의 GDP 대비 세수 비중을 유럽의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다음의 [그림 II-5]와 같다. 2005년 기준으로 벨기에가 0.5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그 뒤로 프랑스 0.52%, 네덜란드 0.34%, 핀란드 0.31% 순이었다. 반면 오스트리아가 0.06%로 가장 낮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고, 아일랜드 0.15%, 독일 0.18%, 덴마크 0.2% 등도 상속·증여세 비중이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0.23%로 스페인 0.26%와 함께 중간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1년과 2005년의 국가별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를 비교해보면 2001년에 비해 2005년에 프랑스, 그리스, 오스트리아는 줄어들었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벨기에, 덴마크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 스페인 등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5] GDP 대비 상속 및 증여세 수입 비중 국가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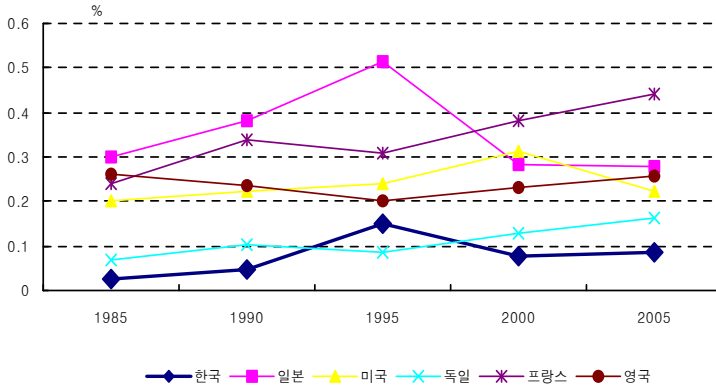


다음의 [그림 II-6]과 [그림 II-7]은 1985년부터 2005년까지 5년 간격으로 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과 총세수 대비 상속세수 비중을 국가별로 비교한 것이다. 먼저 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을 살펴보면 비교국 모두 0.5%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 일본, 영국, 미국이 0.2~0.5% 정도로 높은 수준이고, 독일과 우리나라가 0.2%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며, 우리나라, 독일, 프랑스가 약간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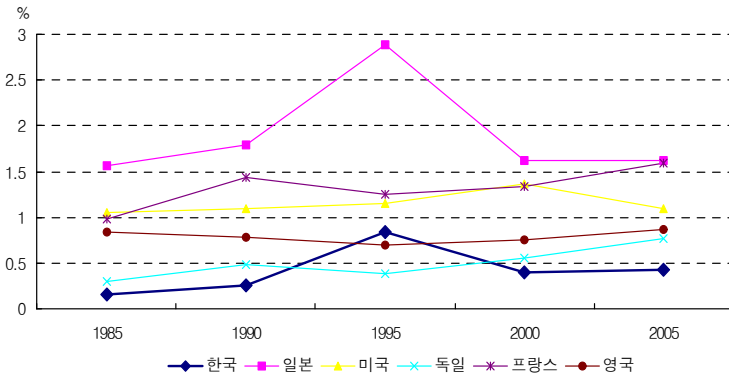
총세수 대비 상속세수 비중은 모든 국가에서 3% 이내로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일본의 총세수 대비 상속세수 비중이 1.5~2.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프랑스와 미국이 1~1.5% 정도로 나타났으며, 영국, 독일, 우리나라는 1% 미만으로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1995년을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독일과 프랑스만 약간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II-6] 주요국의 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 추이 비교



[그림 II-7] 주요국의 총세수 대비 상속세수 비중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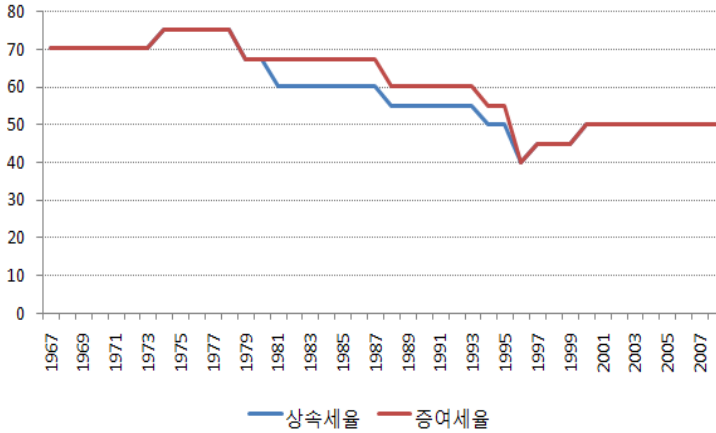
3. 상속·증여 세부담 지표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부담 지표로 적어도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는 법정최고세율이고 다른 하나는 평균유효세율이다. 법정세율은 과표구간별로 주어진 구간 한계세율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가 누진적인 구조를 갖기 때문에 가장 높은 법정세율은 가장 높은 과표구간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다.

1981년까지 상속세와 증여세의 법정최고세율은 변동은 있었지만 동일하였다. 1995년까지 증여세의 법정최고세율이 상속세보다 높았다. 이어 1996년부터 현재까지 다시 변동은 하지만 동일한 법정최고세율을 나타낸다. 단, 최고 과표구간의 저점을 낮추면서 시행된 법정최고세율의 인상이 증여세가 1년 늦게 2001년에 이루어져, 2000년의 경우 상속세의 법정최고세율이 증여세보다 높게 되는 반전이 한 번 있었다. 결과적으로 2001년 이후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구간과 법정세율은 동일하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의 최고법정세율은 대체로 감소하였고 최근에는 50%를 유지하여 다른 나라들의 최고법정세율보다 높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상속·증여세를 완화하는 국가들에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 세부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법정세율보다 세부담을 직접 나타내는 평균유효세율을 살펴봄으로써 분석할 수 있다.

[그림 II-8] 상속·증여세의 최고법정세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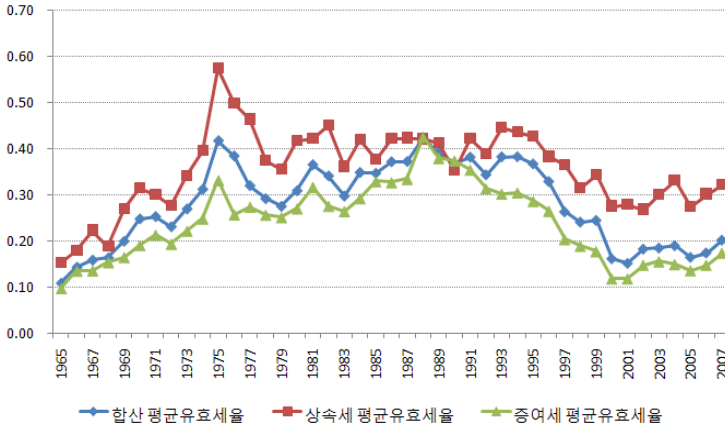


위의 그림은 1967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의 법정최고세율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1970년대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70~75%의 높은 수준으로 동일하였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증여세 최고세율이 상속세 최고세율보다 높았는데, 상속세율과 증여세율 모두 67%에서 40%로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시기였다. 1996년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이 40%로 같았으나 과세구간은 상속세가 더 컸다. 1997년 이후 과세구간과 세율을 45%로 단일화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50%로 인상되어 2008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세부담 측면에 대한 논의에서는 평균유효세율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 평균유효세율은 과세표준을 결정세액으로 나눈 평균치이다. 아래의 그림은 평균유효세율의 추이를 나타내는데 상속세, 증여세, 합계의 세 가지 흐름이 있다. 대체로 상속세의 평균유효세율이 증여세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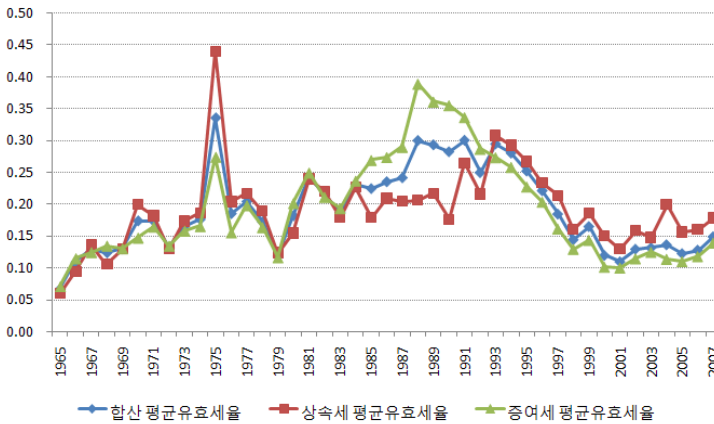
[그림 II-9] 상속·증여세의 평균유효세율 추이

(평균유효세율 = 총결정세액/과세표준)



[그림 II-10] 상속·증여세의 평균유효세율 추이

(평균유효세율 = 총결정세액/재산가액)



위의 [그림 II-9]는 1965~2007년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평균유효세율의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전 구간에서 상속세의 유효세율이 증여세의 유효세율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상속세의 평균유효세율은 15~61%의 분포를 보이고, 증여세의 평균유효세율은 10~45%의 분포를 보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상속세는 34~37%, 증여세는 25~31%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사용한 평균유효세율은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수치이다. 한편 [그림 II-10]은 재산가액을 총결정세액으로 나눈 수치인데, [그림 II-9]의 수치보다 약간 낮게 나타나지만 비슷한 추이를 나타낸다.

이외에도 상속·증여세의 세부담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재차증여재산가액이 있다. 재차증여재산가액은 상속의 대체재로서의 증여를 누적하여 계산하여야만 누진적 구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된 것이다. 1998년까지 5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의 합이었는데, 1999년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의 합으로 확대되었다. 이 외에도 상속공제와 증여공제가 세부담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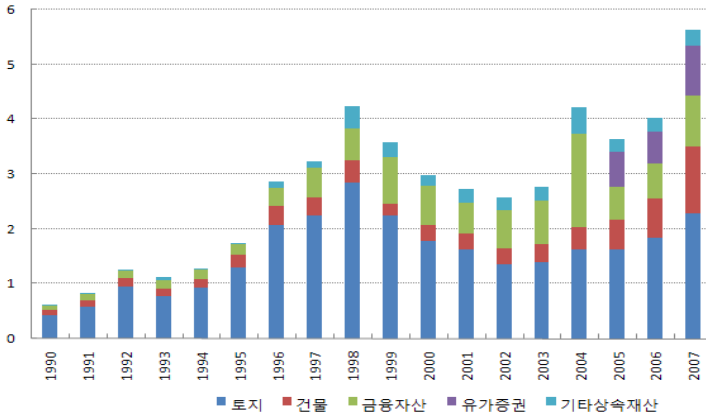
4. 자산이전 규모 및 생전증여비율

가. 자산형태별 이전자산 규모

재산 종류별 상속재산가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II-11]과 같다. 재산 종류는 토지, 건물, 금융자산, 그리고 기타로 구분된다. 상속재산가액의 경우 1990년 이후로 토지의 비중이 압도적이었지만, 2004년에는 금융자산의 비중이 토지의 비중을 앞질렀다. 그 이후로도 유가증권 등과 합하면 토지에 못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성 자산형태의 상속재산의 증가는 고령화, 선진화, 세계화에 기인하며 금융 개방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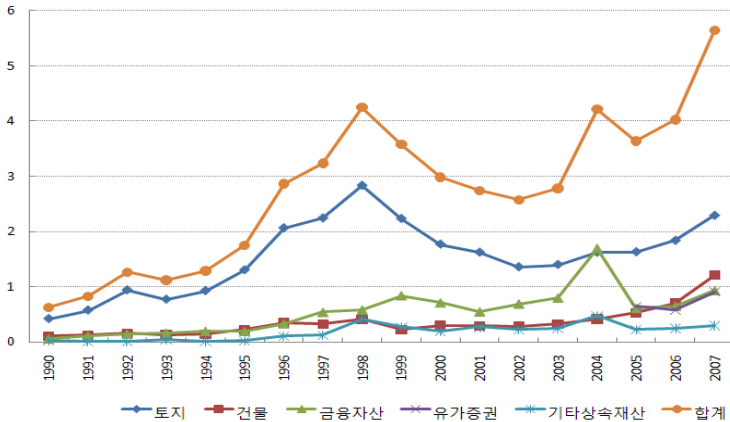
[그림 II-11] 재산 종류별 상속재산가액

(단위: 조원)



[그림 II-12] 재산 종류별 상속재산가액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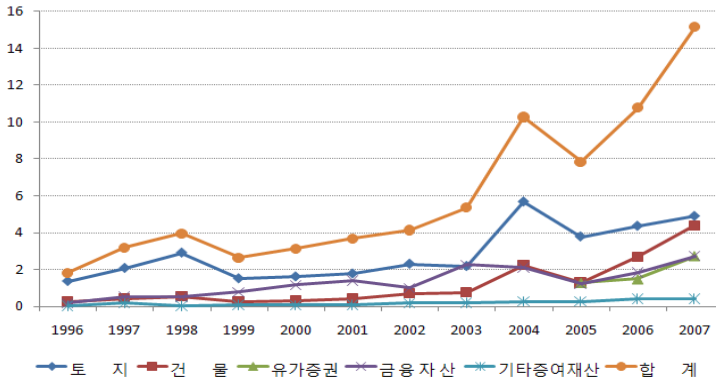


증여재산가액의 재산 종류별 추이는 다음의 [그림 II-13]에 잘 나타나 있다. 증여재산가액의 경우 토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 상속재산가액의 특

정과 다른 점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04년도에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자산 증여액이 증가한 것이 두드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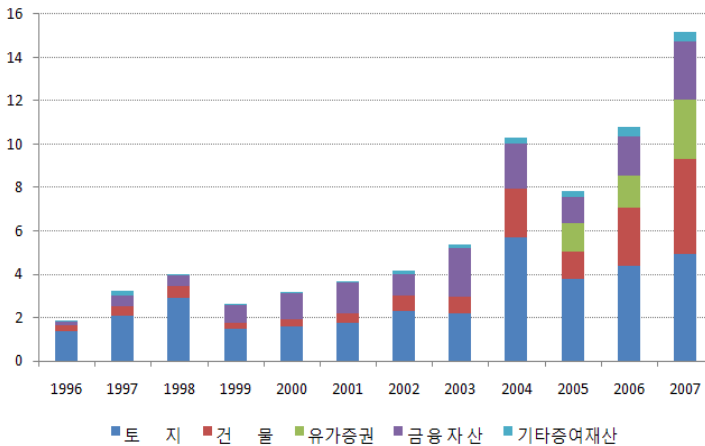
[그림 II-13] 증여재산 종류별 재산가액

(단위: 조원)



[그림 II-14] 증여재산 종류별 재산가액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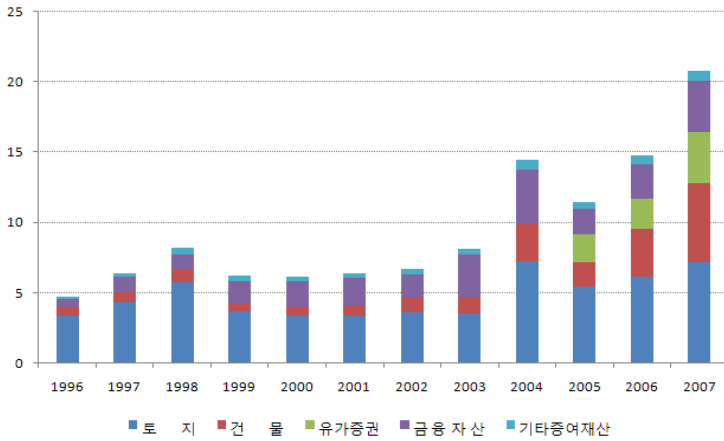
상속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이전재산가액을 재산 종류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II-15]와 같다. 이전재산가액 역시 대부분

II 자산이전과세 현황 39

이 토지인 것을 볼 수 있다. 금융자산이 2005년에 줄었다가 2007년 현저히 증가한 것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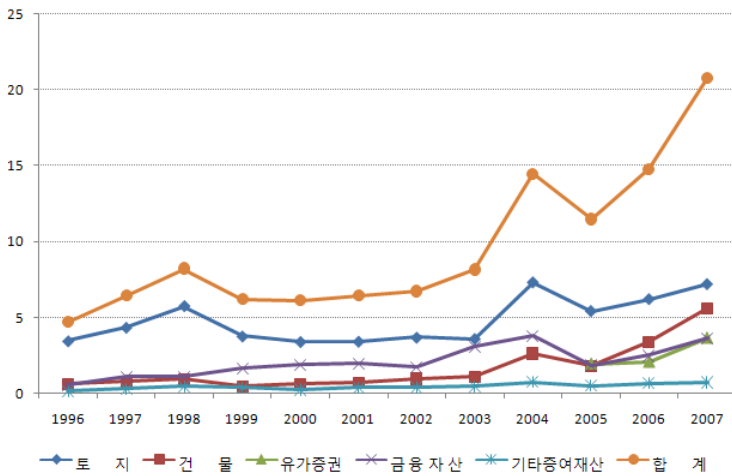
[그림 II-15] 자산 종류별 이전재산가액

(단위: 조원)



[그림 II-16] 자산 종류별 이전재산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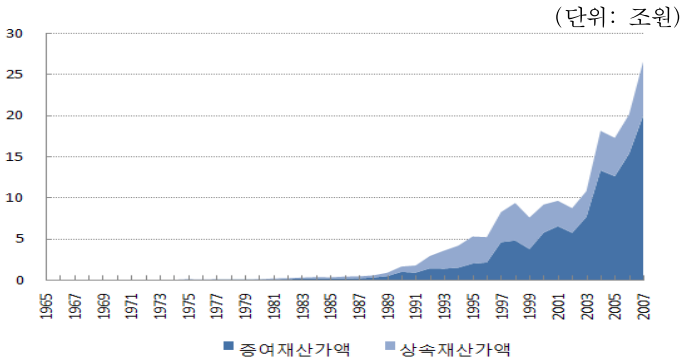
(단위: 조원)



나. 생전증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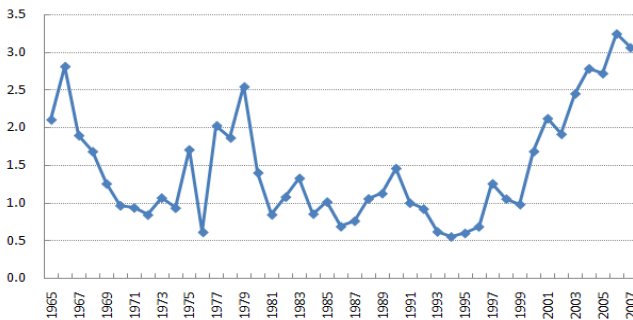
다음의 그림 [그림 II-17]은 상속과 증여 각각의 재산가액을 나타낸다.

[그림 II-17] 재산가액: 상속·증여(1965~2007년)



생전증여 비율 또는 사전증여 비율은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다음 [그림 II-18] 을 볼 때 일종의 사이클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18] 생전증여 비율(1965~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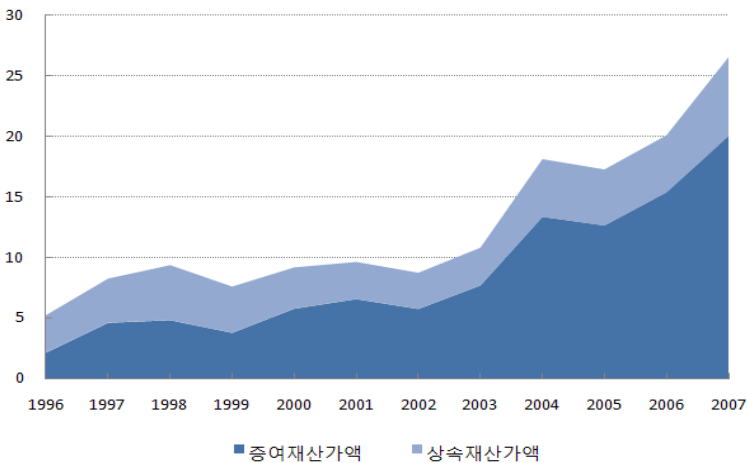


1990년부터 비율이 1보다 작다가 2000년부터는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속을 주로 하다가 생전증여로 이전행위가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전행위의 변화를 야기한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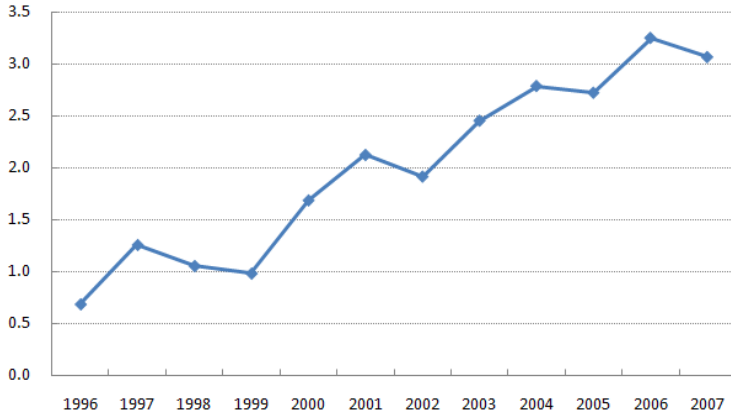
다음 그림들을 통해 1996년 이후 현재까지의 재산가액과 생전증여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증여의 비중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상속·증여과세구조가 증여가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II-19] 재산가액: 상속·증여(1996~2007년)

(단위: 조원)



[그림 II-20] 생전증여 비율(1996~2007년)



주: 생전증여 비율 = 증여재산가액/상속재산가액

III. 자산이전행위 분석

1. 상속 동기에 대한 연구

자산이전과세, 즉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이론적 또는 실증적 연구는 사망세신고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세청(IRS) 산하 조세분석처(OTA)를 중심으로 1990년대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Joulfaian(2004)은 미국 상속·증여세와 세대간 자산이전에 대한 모형을 개발하고 1933~1997년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미국 연방세인 이전세(transfer taxes)의 주요 변화를 기술하면서 1993년 이후로 상속과 증여의 법정세율구조가 동일함을 강조하였다. 미국의 증여세는 세금을 포함한 액수에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과표에도 더 높은 실효세율이 나타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공제액의 존재로 증여가 상속보다 더 높은 실효세율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Joulfaian(2004)의 연구는 시계열자료만이 연구자에게 주어지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약간의 제약을 더 가함으로써 분석에 활용될 수 있으며, 본고는 이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Adams(1978)과 Kuehlwein(1994)의 연구는 상속세 즉 유산세(estate tax)와 증여세(gift tax)의 실효세부담이 동일하도록 자산이전행위가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고전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결과는 Adams(1978)는 두 세목의 실효세부담이 동등해짐(equalization)을, Kuehlwein(1994)는 부동등해짐(non-equalization)을 각각 보고하였다. 우리나라 증여세가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과표에 법정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이론적 분석을 통해 동등성 또는 비동등성의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의 연구로 돌린다.

이준규(1996)는 간단한 이론적 분석을 통해 증여공제가 상속공제의 현재가치보다 클 경우에는 증여가 유리하고 반대로 증여공제가 상속공제의 현재가치보다 작을 때는 상속이 유리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자율의 변화가 증여 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박용일(1999)은 증여가액과 상속가액의 비율이 증여공제가액과 상속공제가액의 비율과 누적증여재산가액에 영향을 받는다는 가설을 국제통계연보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최명근(2006)은 상속·증여과세 존폐에 대한 재검토를 시도하였다. 전통적 과세근거론으로 법이론적 근거로서 (i) 시민법상의 재산상속권을, (ii) 경제이론적 근거로서 회피조세정산설과 응능부담력설을, 그리고 (iii) 정책론적 근거로서 출발점 평등(Equality of Opportunity)의 문제, 인적 자본(Human Capital) 비과세에 대한 보완과세, 권력 및 부의 집중억제 등을 설명하였다. 상속과세 폐지 근거론으로 (i) 법이론적 근거로서 자연법상의 재산상속권을, (ii) 사망세라는 비난에 대해서는 사람을 화나게 하는 세금, 사망세의 도덕성 결여, 상속과세는 상징적인 제도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iii)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iv) 상속과세가 저축과 투자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저축에 대한 영향과 투자·생산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였고, (v) 세수의 과소·행정 및 납세순응비용의 낭비에 대해서는 상속과세 세수입의 과소, 행정비용 및 납세순응비용과 조세회피비용의 문제, 그리고 상속과세가 다른 세목의 과세 보완장치로 작용하는지를 언급하였고, (vi) 부의 집중억제(또는 기회균등)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한 주요 선진국의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는데, 주요 국가들의 동향 대강에 대한 논의를 거쳐 캐나다의 자본이득과세에 대한 대체방식을 자본이득과세의 구조 및 상속 등의 유상처분 의제방식을 통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유산과세 폐지 동향을 설명함으로써 개정 과정의 대강, 최종 통과와 그 내용의 대강,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평가도 논의되었는데, 완전포괄주의의

문제점, 포괄증여 정의 규정에 대한 평가, 포괄증여 개념 정의의 문제점을 통해 개선방안으로서 열거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였다.

조경엽(2007)은 상속세 연구가 유산상속의 동기를 어떻게 가정하는냐에 따라 매우 다른 연구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적기하면서, 기존 연구들을 유산상속의 동기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하여 서술하고 있다.

첫 번째는 Davies(1981), Abel(1985), Hurd(1987)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자손에게 유산이 상속된다는 이론(accidental bequest model)이다. 사람의 삶은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누구나 미래의 건강, 은퇴 이후의 소비를 대비하여 저축을 하고 재산을 축적하게 된다. 그러나 자기의 죽음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 모든 재산을 소비하지 못하고, 남은 재산이 자녀에게 상속된다. Abel(1985)는 국가 전체의 자본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이와 같이 뜻하지 않은 유산상속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Davies(1981)와 Hurd(1987)는 재산 자체가 효용을 가져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죽기 전에 노인들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증거로 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Bernheim(1991), Gale and Scholz(1994), Kotlikoff(1989) 등은 세대간 증여, 생명보험, 연금 등 의도적으로 노후를 대비하거나 세대간 부를 이전하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갑작스런 죽음만으로 노인들의 재산보유 행태를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남은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세는 적어도 피상속인의 경제적 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때 부과되는 상속세는 일괄세(lump-sum tax)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효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정부의 세수입만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상속세로 인해 감소하기 때문에 피상속인과 달리 상속인은 상속세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상속세의 당위성은 상속세로 인해 감소한 상속인의 효용과 증가한 정부

세수입과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두 번째는 Barro(1974)와 Becker(1974)의해 제기된 순수 이타적 상속이론(pure altruism model)을 들 수 있다. 이들 이론에서 부모의 효용함수는 자신의 소비와 자녀의 효용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부모는 자신의 소비를 한 단위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한계비용과 상속으로 인해 증가하는 자녀의 소비에 대한 한계편익이 같은 점에서 상속을 결정하게 된다. 순수 이타적 상속이론은 만약 자녀들이 보유한 기본재산(endowment)이 각각 다르다면 부모의 상속도 차별화되어 자녀에게 지급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부모는 자녀의 기본재산에 따라 상속을 차별화함으로써 모든 자녀의 한계효용이 같아지도록 만드는 것이 곧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된다. 그러나 Tomes(1988), Becker and Tomes(1986), Perozek(1996)를 제외한 대부분의 실증분석은 이타적 상속이론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Cox(1987), McGarry and Schoeni(1995), Altonji et al.(1997)은 부모의 부가 1달러 증가하고 자녀의 부가 1달러 감소한다면, 이타적 상속 동기이론에 의하면 상속이 1달러 증가해야 하지만 실증분석결과는 1달러보다 적게 상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Menchik(1980, 1988), Wilhelm(1996)은 실증분석 결과 이타적 상속이론과 달리 소득이 적은 형제가 소득이 많은 형제보다 적은 상속을 받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순수 이타적 상속이론에서 상속은 외부효과(externality)를 창출한다. 만약 부모가 자신의 효용과 자녀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자녀가 자신의 효용만을 극대화한다고 가정한다면, 부모의 선택은 자신의 소비를 얼마만큼 줄이고 상속을 통해 자녀의 소비를 얼마만큼 증가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그러나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사회계획자(social planner)입장에서는 두 가지 상쇄효과에 의해 결정되는 부모의 효용뿐만 아니라 자녀의 효용도 함께 고려하게 된다. 상속으로 인해 자녀의 한계효용이 조금이라도 증가하게 된다면, 상속은 사회적 적

정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순수 이타적 상속이론에 의하면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대신 보조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상속이 노동공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만약 상속이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면, 상속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타당성은 약화된다. 또한 자녀가 부모의 이타적 상속 동기를 알고 있다면 자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는 필요 이상으로 소비를 함으로써 부모로부터 더 많은 상속을 받으려는 동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Gale and Perozewck(2001)는 상속세가 이러한 과소비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 번째는 순수교환(pure exchange) 이론으로서 부모는 자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이론이다. Bernheim et al.(1985)과 Cox(1987)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는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자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러한 거래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행위라는 것이다. Bernheim et al.(1985)에 의하면 부모는 부의 이전을 연기함으로써 보다 오랜 기간 동안 자녀를 컨트롤하고 교환으로부터 잉여를 더 많이 가져가고자 하기 때문에 부모는 증여보다는 상속을 선호하게 된다.

순수교환 이론에 따르면 상속세는 소비세와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상속세의 크기는 자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수요탄력성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서 자녀의 사랑과 관심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매우 낮(높)다면 적정 상속세율은 상대적으로 높(낮)게 부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Yarri(1965), Fusher(1973), Blinder(1976), Andreoni(1989), 문형표(1990), Carroll(2000) 등이 제기한 부모는 상속하는 것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자녀에게 상속한다는 “joy-of-giving” 이론을 들 수 있다. 상속 동기가 다르지만 순수 이타적 상속 동기와 같이 상속은 경제적 외부효과를 창출하게 된다. 따라서 상속에 대해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이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된다. 그러나 “joy-of-giving” 이론에서 문제는 부모와 자녀 세대 모두 소비를 줄이도록 하는 정책이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부모가 상속으로부터 얻는 효용이 매우 큰 경우 두 세대의 소비를 줄이고 상속을 키우는 경우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다.

2. 개인자산이전행위

부모가 자녀에게 ‘부의 이전’ (wealth transfer)을 하는 경우를 분석하기 위한 단순경제모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분석의 편의를 위해 모든 부가 현금(cash) 형태라고 가정한다. 물론 현실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부의 형태가 다양하다. 즉, 현금, 예금, 보험금, 신탁 재산, 퇴직금, 사업장, 토지, 부동산, 채무면제, 부동산 무상사용, 현물 출자, 전환사채, 주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증여 및 상속을 통해 이전이 가능한 부의 시간별 배분에 관심을 갖는 경제주체들의 행위를 분석하고자 한다. 부모가 생존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증여(gift)를 할 수도 있고 사망하면서 유증(bequeath)할 수도 있다. 또한 사망하면서 상속(inheritance)이 집행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간단하게 1, 2, 3의 세 시기가 있다고 가정하자. 즉 현재시점인 1기에 증여하는 것과 미래시점인 2기에 증여하는 것 그리고 사망시점인 3기에 상속을 할 수 있다.

부모의 이전시기의 결정은 현재증여(G_1), 미래증여(G_2), 상속(B)의 세 가지 경제적 재화(economic goods)의 이전 시기에 대한 효용극대화 문제로 볼 수 있다. 또한 각 재화의 구입에 따른 대가를 가격으로 생각할 수 있고 현재 갖고 있는 부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세 시점에 이전을 해야 하는 제약식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대표적인 부모의 효용함수가 이 세 가지 ‘자녀에게로의 이전’

이라는 소비로부터 결정된다고 가정하면 일반적인 형태의 효용함수 식 (1)을 상정할 수 있다.

$$U(G_1, G_2, B) \tag{1}$$

현금 또는 일반적인 경우 부의 현재가치를 W 라고 하자. 현재증여, 미래증여, 유증의 세 재화에 대한 가격은 상속세율(e), 증여세율(g), 이자율(r) 또는 일반적인 경우 부의 평균수익률, 시간할인율(δ) 등에 영향을 받는다.

현재증여의 가격은 $P_1 = \frac{1}{1-g_1}$ 이다. 부모가 현재의 소비재인 1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차감한 $(1-g_1)$ 만큼만 자녀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만약 1원만큼의 현재증여를 이루기 위해서는 $P_1 = \frac{1}{1-g_1}$ 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따라서 이것이 현재증여의 현재소비를 기준으로 한 상대가격이 된다. 증여세율이 50%이면, 증여가격은 2가 된다. 이것은 현재 부모가 1원을 증여 하고자하면 2원의 비용이 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증여의 가격은 $P_2 = \frac{(1+r)}{(1-g_2)(1+r)}$ 이다. 부모가 현재의 소비재인 1원을 저축하면 미래에 $(1+r)$ 원을 얻고 이를 증여하면 $(1-g_2)(1+r)$ 만큼이 자녀에게 미래에 이전되기 때문에, 만약 1원만큼의 미래증여를 이루기 위해서는 $\frac{1}{(1-g_2)(1+r)}$ 만큼의 현재소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자녀가 받는 미래이전이 모두 자녀의 소비로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 부모가 시간할인율로 할인한다고 하자. 이 시간할인율은 현재 $(1+\delta)$ 만큼의 소비가 주관적으로 볼 때 미래의 1만큼의 소비에 해당한다고 부모가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미래

증여의 현재소비를 기준으로 한 상대가격은 $P_2 = \frac{(1+)}{(1-g_2)(1+r)}$

이다. 3기의 사망 시에 발생하는 상속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의를 할 수 있으며 상속 또는 사망증여의 (현재소비를 기준으로 한) 상대가격은

$P_3 = \frac{(1+)^2}{(1-e)(1+r)^2}$ 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세 가지 증여의 가격이 주어지면 부모의 예산제약 식을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즉, 각 시기의 증여에 대한 지출의 합은 현재의 부(W)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 자식에게 부를 이전하는 수단으로 상속 또는 증여의 적정 선택을 고려하는 대표적인 부모의 경제행위는 현재증여(G_1)와 미래증여(G_2), 그리고 유증 또는 상속·증여($B = G_3$)의 세 경제적 재화(economic goods)를 상정하여 자신의 예산제약(W)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이전자산의 할당 문제로 정식화할 수 있다.

$$\begin{aligned} & \text{Max } U(G_1, G_2, B) \\ & \text{s. t. } P_1 G_1 + P_2 G_2 + P_3 B = W \end{aligned} \quad (2)$$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부를 통한 부모의 효용함수를 부모의 예산제약식하에서 극대화하는 위의 문제를 수학적으로 풀면, 소위 최적결정의 필요조건이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frac{U_1}{U_2} = \frac{P_1}{P_2} \quad \text{그리고} \quad \frac{U_1}{U_3} = \frac{P_1}{P_3} \quad (3)$$

이것은 대표적인 부모가 이전의 시간적 배분에 대해 최적결정을 할 때 성립해야 할 조건이다. 효용 극대화 조건의 의미는, 현재시점에서 증여를 선택하는 것은 현재시점에서 증여가격과 미래시점에서 증여

혹은 상속가격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대표적인 부모가 선택을 고려하는 시점에서의 효용의 한계대체율과 각 시점에서의 가격이 동일하여야 한다.

이자율 또는 일반적인 경우 부의 평균수익률이 시간할인율과 동일하다면($r = \delta$), 상속가격은 $P_3 = \frac{1}{1-e}$ 가 된다. 따라서 위의 균형식을 따르면, 현재증여가격(P_1), 미래증여가격(P_2), 그리고 상속가격(P_3) 각각이 현재증여세율(g_1), 미래증여세율(g_2), 그리고 상속세율(e) 모두에 영향을 받는다는 명제를 얻는다.

증여 및 상속을 통한 부의 무상이전에 있어서의 시기별 의사결정이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에 의존한다는 기본명제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여러 방향으로 분석을 확장할 수도 있다. 먼저 생존기간이 여럿이어서 증여가 n 개의 시기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위의 명제는 유지된다. 또한 좀 더 현실적으로 사망시기가 불확실한 경우 각 시기별로 사망확률을 도입하여 분석하면 위의 명제는 여전히 유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가 유사한 법정세율체계를 갖기 때문에 두 가지 조세가 상속과 증여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두 조세는 상이한 영향을 준다. 첫째, 두 조세의 재산공제 조건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평균유효세율이 상이하야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둘째, 두 조세의 평균유효세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여도 증여와 상속의 시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자율에 따른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생존자간 증여(inter-vivo gifts)는 상속에 의한 유산보다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다. 세대간 경제모형에서 자주 제기되는 바대로 생산성이 높은 젊은 세대에게 늙은 세대의 생산자본이 이전됨으로써 기업상속이나 영농상속에서 제기되는 생산단위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미시단위의 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거시적으로 성장을 유발할

수 있다. 물론 생존자간 증여 모두가 생산단위의 이전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자간 증여가 세부담, 경제력 등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다. 본절에서는 증여로 인한 세수, 즉 증여세수가 각종 세부담 및 경제력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증여세수의 각종 탄력성을 구하고자 한다.

먼저 증여세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증여세와 상속세를 들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상속은 미래의 증여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기간 의사결정모형의 균형조건에서 도출되며, 증여시 증여세와 상속세를 포함하는 증여가격과 상속가격이 중요한 영향을 준다. 또한 이러한 다기간 의사결정모형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현재의 증여로 인한 세수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증여세부담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대체로 조세의 세율 및 각종 공제제도는 미리 국회(또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 결정되기 때문에 미래의 증여세부담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

세율을 이용한 증여세부담의 지표로는 법정세율, 한계유효세율, 평균유효세율 등을 들 수 있다. 한계유효세율은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제외한다. 이에 대한 대체변수(proxy)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법정세율이다. 하지만 법정세율은 누진적 구조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5개가 있다. 각각의 과세구간에 서 한계세율로 작용하여 어느 정도 대체변수로 생각할 수 있음을 감안하고 분석의 편리를 위해 최고법정세율을 증여세부담의 지표로 사용한다. 또한 평균유효세율도 대체변수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부담의 지표로 사용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증여세 소득공제가 다양하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 또한 세부담의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증여 및 상속의 대상은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자산도 가능하므로 이러한 자산의 가격이 증여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주가지수 자료를 이용한다. 기타 이외의 변수들이 증여세수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변수로 한국은행의 소득자료를 추가한다.

증여 및 상속세 등 조세의 과세체계 변화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상당기간이 소요되며, 대체로 다음 기에 세율이 상승할 것인지 혹은 하락할 것인지 예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합리적인 부모를 가정한다면, 현재 기의 증여가격(세율)이 상승하는 경우 다음 기에 증여를 하거나 혹은 상속을 하는 의사 선택을 할 것이며 이는 현재 기의 증여세 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에 다음 기에 증여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면 현재 기에 증여를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한편 향후의 평균적인 상속가격(세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 기에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므로 이는 현재 기의 증여세 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부담 및 경제력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이 결정되어 궁극적으로 증여세수가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경제모형을 상정할 수 있다. 각 변수들을 GDP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질변수로 전환한 후 로그를 취하면 다음의 다중회귀모형을 구성할 수 있다.

$$GE_t = +z_1 GP_{t-1} + z_2 GP_t + z_3 GP_t + z_4 BP_{t+1} + z_5 SP_t = z_6 Y_t + z_7 GR_t + i$$

여기서 GE 는 실질증여세수의 로그값, GP 는 증여가격의 로그값, BP 는 상속가격의 로그값, SP 는 실질주가지수의 로그값, Y 는 실질소득의 로그값, GR 은 실질증여공제의 로그값을 의미하며, 하첨자 $t, t-1, t+1$ 은 시점을 의미한다.

자료는 1975년부터 2007년까지³⁾ 국세통계연보에서 제공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시계열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분석대상 기간 동안 법정세율의 변화는 크지 않은 반면에 각종 면세 및 공제제도 등으로 평균유효세율(=산출세액/과세표준)의 추이가 [그림 II-9]와 같이 관측되었으며, 동 세율을 세부담 지표로 이용하였다.

3) 조세자료는 1965년부터, 소득자료는 1970년부터 있으나 추가자료가 1977년부터 제공되기 때문이다.

〈표 Ⅲ-1〉 증여세수 추정 결과

	계수추정치	표준편차	t-통계치
상수항	-13.5561	2.0273	-6.69
log(GP, t-1)	0.7554	0.7115	1.06
log(GP, t)	5.9956	1.20	5.00
log(GP, t+1)	-1.3779	0.8537	-1.61
log(BP, t+1)	0.7288	0.8048	0.91
log(SP, t)	-0.1021	0.0994	-1.03
log(Y, t)	1.2437	0.2585	4.81
log(GP, t)	0.5309	0.1441	3.68

주: Adjusted R-squared: 0.9764

〈표 Ⅲ-1〉은 위의 다중회귀분석 모형을 통상최소자승법(OLS)으로 추정한 결과이다. 증여세수에 이전 기와 현재 기의 증여가격이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다음 기의 증여가격은 음(-)의 영향을 준다.

이것은 이론에서 도출된 예상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다음 기에 증여세율이 증가하여 증여가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 현재 기에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며, 따라서 현재 기의 증여세수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과세체계의 변화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전 기의 증여가격이 높았다면 현재 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이전 기의 증여가격의 상승은 현재 기의 증여세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한 현재 기의 증여가격 상승에 대해 현재 기의 증여세수 감소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03년까지의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가 이론적인 예측과 일치하였기 때문에, 2004년 이후 2007년까지의 증여세수에 다른 결과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실증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각 기의 증여가격에 대한 계수추정치를 보면, 현재 기의 계수 추정치 절대치가 가장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증여세수의 증여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현재 기가 다른 시점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여기서 증여가격의 효과가 다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단기효과와 장기효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즉, 증여세수가 증가, 감소를 반복하면서 그 방향을 예측하기 곤란한 것을 이해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먼저 증여공제와 법정증여세율의 변화를 주로 하는 증여과세정책의 변화는 증여세의 평균유효세율 또는 한계유효세율을 변화시킨다. 이는 단기적으로 아주 높은 가격탄력성(5.99)을 갖는다. 그러나 2기에 걸친 장기적 가격탄력성은 단기보다 낮은 수치(1.38)를 나타낸다. 이러한 증여세수의 단기적-장기적 가격탄력성의 차이는 증여세 조세정책이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증여공제액이 증여세수에 주는 영향은 이론적으로 크게 두 가지다. 증여공제를 확장하는 정책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증여세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증여공제의 확장으로 인한 증여 동기의 실현화를 가속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증여세수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간접적인 가격효과가 직접적인 수량효과를 포괄하여 전반적으로 증여세수를 증가시켰다.

다음으로 다음 기의 상속가격, 즉 기대상속가격이 높으면 현재 기의 증여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속과 증여가 보완재(substitutes)임을 나타낸다. 주가지수의 경우, 주가지수가 상승하면 현재 증여를 보류하고 자산가치를 제고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하여 당연히 증여세수가 줄어들 것이며, 추정결과도 계수 추정치가 음(-)의 수치를 보였다. 2003년까지의 데이터를 통한 분석에서 양(+)의 결과가 나온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증여재산의 종류별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국민소득, 즉 GDP가 증여세수에

주는 영향은 양(+)¹⁾의 수치를 보였다.

이상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증여세수는 증가와 감소가 빈번하며, 장기적인 거시 시계열 자료는 불안정(non stationary)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변화를 종속변수로 놓고 회귀 분석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제 경제변수들의 현재 기와 다음 기의 차분(difference)을 새로운 변수로 정의하여 앞에 d 를 표시하기로 한다. 이러한 차분을 이용한 차분변수(difference-in-difference) 다중회귀모형식은 다음과 같다.

$$dGE_t = +z_1dGP_{t-1} + z_2dGP_t + z_3dGP_t + z_4dBP_{t+1} + z_5dSP_t = z_6dY_t + z_7dGR_t + i$$

다음의 <표 III-2>는 평균유효세율을 이용하여 산출한 증여가격, 상승가격의 차분을 설명변수로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그 결과 대체로 수준(level)변수를 이용한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예상과도 대체로 부합되었다. 특히 증여가격에 대한 증여세수의 반응은 이전결과와 유사하게 현재 기에 가장 크게 반응하였다. 증여공제 차분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표 III-2> 증여세수 변화 추정 결과

	계수추정치	표준편차	t-통계량
상수항	0.0687	0.1011	0.68
d log(GP, t-1)	2.2119	0.8475	0.25
d log(GP, t)	6.10	1.2126	5.03
d log(GP, t+1)	-0.4514	1.0647	-0.42
d log(BP, t+1)	0.5131	1.0151	0.51
d log(SP, t)	-0.1986	0.1548	-1.28
d log(Y, t)	0.3188	1.3804	0.23
d log(GR, t)	0.5290	0.1387	3.81

주: Adjusted R-squared: 0.631809

3. 기업상속행위

기업상속 또는 기업상속에 대한 연구는 일천하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기업상속행위에 대한 연구는 신상철(2007)이 대표적이다. 이하에서는 신상철(2007)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상속행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경영자의 평균연령은 1993년 48.2세에서 2004년에는 52.7세로 증가하였으며, 60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1993년 10.6%에서 2004년에는 15.7%로 증가하였다. 특히 소기업(50.4세)보다 중기업(54.5세)에서 고령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0세 이상 및 70세 이상 경영자 비율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60세 미만의 경영자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향후 5~10년 이내에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더욱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고, 이에 따라 기업승계의 문제도 더욱 크게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 경영자 중 60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는 1997년에 이미 14%를 넘었으며, 최근에는 16%대에 육박하고 있어 중소기업 경영자 중 60세 이상 경영자의 비율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의 평균연령은 10.6년 정도이고, 20년 이상 장수하는 중소기업의 비율도 1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많은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성장단계에서 장수하지 못하고 짧은 기업 수명을 나타내고 있다.

고령화로부터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EU는 고령화로 인하여 향후 10년 동안 전체 기업의 3분의 1 정도가 사업에서 철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 결과 매년 69만개 중소기업과 280만개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2005년에 29만개 기업이 폐업하였고, 이로 인해 20만~35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추산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유럽 각국 및 일본이 고령화 등으로 인한 승계 위험에 직면해 있는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하여 적절하게 추산된 통계가 아직 미비하지만 이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EU는 이와 같은 급속한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2005년부터 사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환경조성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표 III-3〉 주요국의 기업 승계 현황

국가	승계 상황에 직면한 기업수
독일	향후 5년 동안 354,000개
프랑스	향후 10년간 600,000개
이탈리아	향후 10년간 전체기업의 40%
오스트리아	2004년~2013년 전체 기업의 23%
영국	중소기업의 1/3
일본	연간 29만개의 폐업기업, 이에 따른 고용상실은 매년 20만~3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자료 : EU, 2006

Ⅲ. 자산이전행위 분석 59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정책 방안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해 한국신용평가정보(주)에 등록된 업력 30년 이상, 업력 20년 & CEO 55세(2005년 12월 31일 현재) 이상 중소기업(1,897개 업체)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응답자 자기 기입식으로 조사(2007. 6. 1~2007. 6. 10)를 실시하였다.

〈표 Ⅲ-4〉 조사대상 중소기업인 추출

(단위: 개)

① KIS-FAS 중소기업인		69,243
② 대표자 정보 미비	(32,080)	37,163
③ 업력 30년 이상	2005년 12월 31일 기준	844
④ 업력 20년 & CEO 55세 이상	2005년 12월 31일 기준	1,486
⑤ 조사대상업체	(③+④에서 중복업체 제외)	1,8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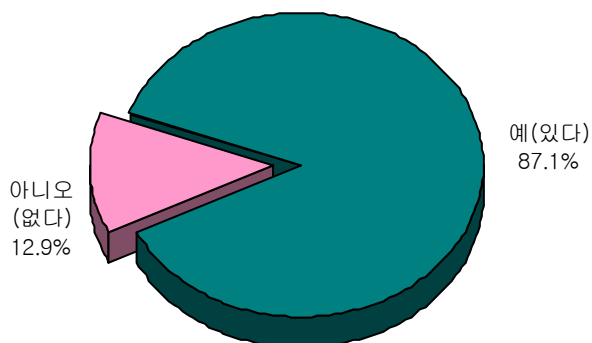
각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EO 유형별로 보면 창업자(58%)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창업2세(35%)가 많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희망 은퇴연령은 66세 이상이 62%를 나타내고 있어 고령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경제성장 및 의료 수준 향상에 따른 은퇴연령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Ⅲ-5〉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사례수	구성비
전체		1,871	100.0
CEO 유형별	창업자	1,093	58.4
	창업2세등	659	35.2
	전문경영인	83	4.4
	기업인수/합병	36	2.0
희망 은퇴 영령별	65세 미만	363	19.4
	66~70세	548	29.3
	71~75세	610	32.6
	76~80세	317	16.9
	81세 이상	33	1.8
가업 승계 의향별	승계	1,630	87.1
	비승계	241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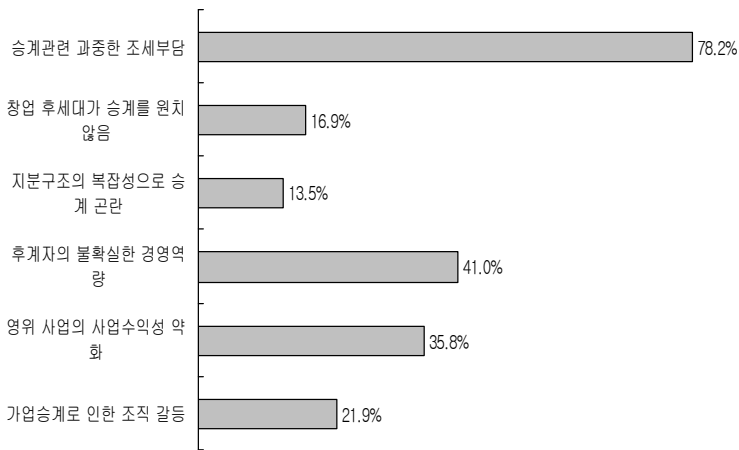
[그림 Ⅲ-1] 가업승계 의향



III. 자산이전행위 분석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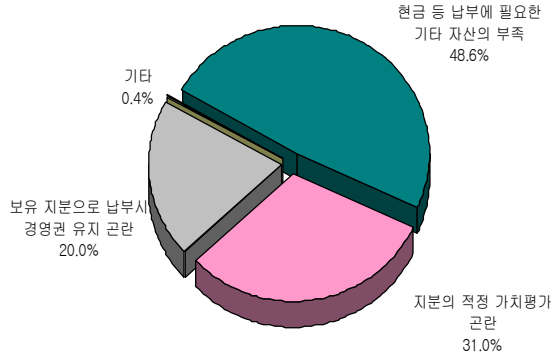
응답자의 87.1%가 가업승계 의향을 보인 반면에 29.1%는 가업승계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승계 의향은 CEO 유형별로 창업자(94%)가, 희망 은퇴연령별로는 60대 후반에서(66~70세: 90%, 71~75세: 95.2%, 76~80세: 94%, 81세 이상: 100%)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2] 가업승계의 주된 장애 요인



가업승계의 주된 장애 요인으로 응답자의 78.2%가 승계관련 과중한 조세부담을 꼽고 있으며, 다음으로 후계자의 불확실한 경영역량(41%), 영위 사업으로 사업수익성 약화(35.8%), 가업승계로 인한 조직 갈등(21.9%), 창업 후세대가 승계를 원치 않음(16.9%), 지분 구조의 복잡성으로 승계 곤란(13.5%)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가 어려운 이유



가업승계시 부과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주된 사유로 응답자의 48.6%가 현금 등 납부에 필요한 기타 자산의 부족을 들고 있으며, 다음으로 지분의 적정 가치평가 곤란(31%), 보유 지분으로 납부시 경영권 유지 곤란(20%) 등으로 나타났다.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법인이 상속세를 납부 후 폐업하는 경우와 세감면 존속 후 법인세 및 감근세 세수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상속세를 납부 유예하거나 감면받아 기업이 존속하는 경우, 약 3~4년이 경과하면 동일 기간 동안 납부 예상되는 법인세와 감근세의 합계액이 상속세 납부 예정액과 유사한 규모로 나타났다.

III. 자산이전행위 분석 63

〈표 III-6〉 상속세, 법인세, 갑종근로소득세 추정

(단위: 개, %)

상장유형	기업수	평균 지분율	상속세	누적 법인세			누적 갑근세		
				5년	10년	15년	5년	10년	15년
전체	1,511	48.0	4,897	4,356	9,855	16,796	2,033	4,684	8,140
비상장기업	1,282	51.9	3,269	2,830	6,404	10,915	1,499	3,455	6,003
상장·등록기업	229	26.8	1,127	1,525	3,450	5,881	533	1,229	2,137

이와 같은 결과는 상속세가 사업관련 유동성 또는 자산으로부터 납부되어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한다면, 장기세수 손실 가능성을 감안할 때 상속세를 통한 단기세수 확보는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납부대상 상속세 분석에 사용한 기업 중 표준기업을 선정하여 주요국의 상속과세 규모와 비교한 결과 한국 표준기업의 납부 예상되는 상속세액이 독일의 약 4배, 프랑스의 약 5배 정도로 나타나 주요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III-7〉 추정 상속세액의 국제 비교

(단위: 만원)

국가	한국	독일	프랑스	일본
추정 상속세액	196,695	64,431	45,162	173,549

분석은 1,511여개 기업에서 자산, 부채 등 자본구조와 지분율을 고려하여 표준기업을 선택하였으며, 비교국의 상속재산가치는 우리나라와 같다고 가정된 후 환산 환율은 사례기업 추정 시점에 맞추어 2005년 말 환율을 적용하였다.

4. 상속·증여세 주요 논점

개인의 사망에 기인한 상속 또는 생존자간의 증여에 의하여 개인간 재산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진다.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국가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한 과세방법은 무상이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무상이전자가 이전하는 재산의 크기를 측정하여 과세하는 유산세형(estate tax type)과 무상취득자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하는 재산의 크기를 측정하여 과세하는 유산취득세형(inheritance tax type)으로 구분하고 있다. 유산세형은 재산의 무상적 이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유산취득세형에서는 재산의 무상적 취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일제 치하에서 채택하고 있던 유산세형을 그대로 승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유산세형을 채택하여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에 대하여 피상속인(무상이전자)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다.

높은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사전상속을 막기 위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세의 세율은 증여세와의 통합세율인데, 최저 10%에서 최고 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다만, 세대를 건너뛴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액의 30%를 할증한다.

다음으로 증여세는 수증자 과세방식을 채택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리고 동일한 수증자에 대한 분산증여를 통하여 높은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0년간의 증여재산을 누적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증여세의 과세가액에서 배우자간의 증여에 대하여는 6억원,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에 대하여는 3천만원(직계비속인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1,500만원), 기타의 친족에 대하여는 500만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Ⅲ. 자산이전행위 분석 65

200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1,720명이고, 상속세액은 4,853억원으로서 전체 국세수입의 0.4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증여세의 세수는 8,297억원으로서 전체 국세수입의 0.79%를 차지하고 있다. 2003년도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수가 24만 5,800명임을 감안하면, 사망자 중 상속세를 내는 과세자의 비율은 0.7%이다. 이는 일본의 과세자 비율 5%대보다 매우 낮다. 향후 낮은 과세자 비율의 제고가 중요한 정책방향이 되어야 한다.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을 정하는 방식으로는 열거주의 방식과 포괄주의방식이 있다. 종래에는 열거주의방식을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행위 또는 거래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함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열거주의방식의 맹점을 이용한 증여세의 회피행위를 근원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0일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즉 민법상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나 거래라고 하더라도 그 명칭이나 형식이 무엇이든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세금 없는 부의 무상이전이 원천적으로 봉쇄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이 크게 제고되었다.

그러나 현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상속세제는 유산세형을 채택하여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피상속인(무상이전자)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산세형은 응능부담의 원칙에 충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의 집중의 분산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유산세형은 현행의 상속제도 및 실태에 적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속세 과세유형의 세계적인 추세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젊은 세대로의 재산의 이전이 늦어져 상속재산이 국민경제의 활력적인 성

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정태적으로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증여세와 소득과세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자산수증이익)이 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 재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종래부터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밖에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 승계제도가 불비되어 조세 회피가 이루어지고 있다.

상속·증여세제를 둘러싸고 있는 납세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서는 세계적인 상속·증여세제의 완화 움직임과 인구 고령화의 진전이다. 세계화 및 정보화의 진전, 국경을 초월한 거주지의 이전과 기업의 입지 선택권의 확대, 자본의 국가간 이동의 자유화에 따라 개인의 경제활동의 장소와 생활의 본거지의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재산의 보유 및 운용형태가 다양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화 및 정보화의 진전은 필연적으로 상속·증여세제를 포함한 조세제도의 세계화 내지 국가간 조세제도의 조화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자국 내에 기업·자본 또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유리한 조세 여건을 제공하며 조세경쟁을 하고 있다. 특히 근래의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세계적인 흐름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의 진전은 상속에 의한 재산의 이전시기를 평균연령의 연장 기간만큼 지연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상당한 부분이 국민경제의 활력적인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정태적으로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상속·증여세제는 상속 또는 증여라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응능부담의 원칙의 실현과 부의 재분배 기능의 강화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상속·증여세제 개혁의 기본목표로서 상속·증여세제의 글로벌 기준과의 조화, 성장잠재력의 확충, 응능부담의 원칙의 실현과

부의 분산 촉진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개혁방안으로서는 유산취득세형으로의 전환, 창업 유도를 위한 증여세 특례제도의 확충,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수준의 검토, 소득세제와의 관계의 명확화 및 역할의 조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상속·증여세 완화 논쟁

상속·증여세를 완화하자는 최근의 논의에 대한 찬반론과 논의의 출발점을 제시했던 미국 상속·증여세의 한시적 완화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상속·증여세 완화 논쟁의 찬성론이 제기하는 근거의 하나는 외국의 경우 상속과세를 폐지하거나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캐나다(1972년), 호주(1977년)는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였고 미국은 2010년에 상속세가 폐지될 예정이다. 뉴질랜드(1992년), 이탈리아·포르투갈·슬로바키아(2004년), 스웨덴(2005년)도 상속세를 폐지하였다. 캐나다는 상속·증여시점에 상속·증여를 양도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하는 방식이고, 호주는 상속인·수증자가 상속·증여받은 재산 양도시 피상속인·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과세하는 방식이다.

상속세과세는 소득세를 부담하면서 축적한 부에 대한 이중과세의 성격을 갖는다. 또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등으로 상속세 부담이 높아 경영권 승계가 어려우며,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주가 기업이익을 재투자하지 않고 배당을 통해 기업주 개인재산으로 축적하게 되어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가업상속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최대 15년까지 연부연납할 수 있으나, 주식이 분산된 상장기업은 지분을 기준(50%)을 충족하기 어려워 일시적 상속세 납부 부담으로 가업승계가 어렵다.

상속·증여세 완화 논쟁의 반대론 또한 외국사례를 들 수 있다. 즉,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미국은 2010년에 한해 상속세를 폐지하지만, 2011년부터는 2001년도 상속세 체계(최고세율 55% 적용)로 복귀되도록 입법되어 있다.

현행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율 10~50%는 명목세율 기준으로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다. 참고로, 미국은 18~46%, 일본은 10~50%, 독일은 7~50%, 프랑스는 5~60%의 누진세율 체계이고, 영국은 상속세는 40%, 증여세는 20%로 단일세율 체계를 갖는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구간도 우리의 경우 30억원이므로 외국에 비해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참고로, 미국은 250만달러(24억원), 일본은 3억엔(24억원), 독일은 2,526만 5천유로(300억원), 프랑스는 170만 유로(20억원)이다.

기업주가 기업이익을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재투자하는 경우가 배당하는 경우보다 기업성장 속도가 훨씬 커 상속세를 부담하더라도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과거 상당수의 재벌그룹이 불법·편법적인 주식거래 등을 통해 상속세를 제대로 낸 경우가 거의 없다. 기업의 경영권은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므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경영능력에 대한 객관적 검증절차를 거쳐 경영권이 승계되어야 한다.

미국의 상속세 영구폐지 법안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2001년 5월 26일 향후 10년간 1조 3,500억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하는 '경제성장과 감세조정법안'을 의결하였다. 이 감세법안에 따라 공제액은 연차적으로 높아지고 최고세율은 연차적으로 낮아져 2010년에 한해 상속세가 폐지된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2001년도 상속세 체계(최고세율 55%)로 복귀한다.

이에 공화당 측에서 상속세의 영구폐지를 추진하여 2005년 4월 13일 하원은 통과하였으나 2006년 6월 8일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2006년 6월 22일 하원에서 2011년 이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새로운 절충안을 찬성 269, 반대 156으로 의결하여 상원으로 송부한 상황이다. 그

내용은 500만달러(부부는 1,000만달러)까지 상속세를 비과세하며, 2,500만달러까지 15%, 2,500만달러 초과분에는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당초 상속세 영구폐지 법안보다는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상속세 감면의 혜택이 일부 부자에게만 돌아간다는 점과 재정적자 문제 등을 감안하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나. 상속·증여 분석 논점

최근 제기된 상속·증여세 완화 논쟁을 기점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시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상속·증여세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자주 발견되는 것으로 상속·증여, 경영권 승계, 경영권 방어 등이 혼재되어 있다. 또한 상속·증여세의 현황에 대한 오해가 많다. 마지막으로 상속보다는 생전 증여를 유도하는 외국사례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도 중장기적 세제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중장기적 상속·증여세제 설계를 위한 기초연구가 시급하다.

상속·증여세는 세대간 자산이전에 과세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인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과세로서의 상속·증여세와 법인과세의 분리는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허용하는 것으로, 상속·증여세는 재산권 상속에 관여하며 원칙상 대주주의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의 기조는 대주주의 경영권 승계에 과세함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연 상속·증여세가 높은 세부담을 갖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한편으로 상속·증여세수 및 평균유효세율의 추이를 볼 때 거시경제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경영권 승계를 고려할 때 개인 차원에서 세부담이 높을 수 있는데 만약 세부담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면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의 세수는 2004년 상속 결정세액 9,540억원,

증여 결정세액 1조 5,212억원, 총결정세액 2조 4,752억원으로 나타났다. 총결정세액은 1989년부터 급증하여 1997년에 정점을 이루다가, 다시 감소하여 2001년에 저점을 이루고,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GDP 대비 총결정세액 비중은 2001년에 0.17%, 2003년에 0.2%이다. 이는 다른 나라의 2001년 비중이 프랑스 0.55%, 스위스 0.28%, 스웨덴 0.19%, 독일 0.15%인 것을 볼 때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법정한계세율이 과세표준으로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임에 비하여, 평균 유효세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즉, 2004년도 평균유효세율은 상속세 33.2%, 증여세 15%이다. 추세를 보면, 상속세는 2000~2003년 사이 30% 이하를 유지하고 있고 증여세는 1997년 이후 20%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경영권 승계에 대한 논의가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배구조의 변화로 가시화되고 있다. 먼저 경제 환경의 변화로는 정부주도형 압축성장의 종료 및 기업주도형 지속가능 성장의 비전과 글로벌화로 인한 기업규모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이에 따른 지배구조의 주된 변화는 대주주 지분율의 하락이며, 기업집단의 경우 지배구조의 약화, 오너의 고령화, 순환출자 등의 제 현상이 나타났다.

개인기업의 경우 경영권의 승계와 재산의 상속이 일치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기업의 자산과 오너의 재산이 일치하기 때문이며, 최근 이루어진 가업상속제도로 가업승계를 유도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가업상속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그 실효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되지만 지속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개인기업의 경우 상속과 생전증여에 대한 인식 및 상속설계에 대한 이해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 경영권의 승계, 경영권 방어, 재산의 상속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주지해야 한다. 먼저 경영권 방어에 대해 여러 가지 기제가 논의될 수 있으며 상속·증여세제의 변화는 직접적으로 관계

되지 않는다. 그리고 경영권 승계의 정당성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가 있고 경영권 승계를 상속·증여세제하에서 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경영권 승계가 경영권 방어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가 많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기업 경영권 승계의 근저에 있는 경영권 승계와 투자 감소 및 성장둔화 억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 상속·증여세의 설계에 대한 시사점으로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 또한 상속이전보다(생전)증여이전이 유리한 조세구조를 형성하여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의 추세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상속·증여세는 소득과세와 재산과세의 접경에 위치하기 때문에 조세정책 또는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입장 정립이 우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세율은 소득과세-재산과세에 대한 입장 정립이 우선시되어야 결정된다. 또한 소득과세로의 이전은 자본이득과세에 대한 입장 정립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산보유의 다각화, 가족구조의 변화, 직접금융시장의 발달, 대기업 오너들의 고령화 등의 제 요인에 의해 중장기적 상속·증여세제 설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 소득과세와의 관계 검토

증여받은 재산(자산수증이익)이 소득세에 있어서의 과세소득을 구성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로서 과세할 것인지 또는 증여세로서 과세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종래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세 우선과세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즉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에서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등이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증여재산이 소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미국과 일본 등은 증여세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법리적으로 볼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특별소득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 우선과세의 원칙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의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을 폐지하고 소득세법에서 개인이 상속·유증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재산이 있다면 이에 관하여는 별도의 특례규정에 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의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증여로 인한 이익이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아 해석상 다툼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법령에서 명확한 구분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등으로서 그 주식 등의 증여일 등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 등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일정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⁴⁾.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3.

III. 자산이전행위 분석 73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 또는 협회 등록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저가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상장 또는 협회 등록에 따른 시세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은 증여 등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평가차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주식 등의 증여로 인하여 얻은 이익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법리적으로 볼 때 당해 주식 등을 매매 등에 의하여 처분함으로써 그 이익이 실제로 실현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로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⁵⁾와 미성년자 등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등이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 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재산가치가 증가함으로써 일정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의 증여⁶⁾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상속이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당해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상 취급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로 자본이득세를 면제하는 방법, 둘째로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하여 이득을 실현하기까지 자본이득세의 과세를 연기하는 방법, 셋째로 사망 또는 증여시에 이득이 실현된 것으로 의제하여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는 방법이다⁷⁾.

우리나라는 첫째 방안에 따라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무상이전을 양도의 범위에서 제외하면서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을 처분할 때에도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로부터 승계한 취득가액이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5.

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7) 캐나다에서는 1972년 중전의 상속세(Capital Transfer Tax)를 폐지하고 상속과 증여(배우자간의 상속과 증여는 제외)에 의한 재산권의 이전에 대하여 유상이전으로 의제하여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아닌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자본이득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우자 및 친족간의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의 회피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배우자로부터 수증한 자산의 취득가액 승계규정⁸⁾과 특수관계자간의 증여거래의 부인에 관한 특례규정⁹⁾을 두고 있다.

특수관계자간의 증여거래의 부인에 관한 특례규정은 현행대로 존치하되, 배우자로부터 수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승계제도는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및 특정시설물의 이용권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¹⁰⁾. 즉 배우자로부터 일정기간 안에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승계취득가액기준(donor's basis)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취득가액승계제도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중 토지·건물 및 특정시설물의 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그러므로 배우자로부터 수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식 등·기타자산 중 특정주식 및 영업권은 그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승계취득가액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배우자로부터 수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수증한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그 취득가액의 승계 여부가 달라지는 것과 같은 차별은 합리적인 차별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배우자로부터 수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승계제도는 친족간의 증여자산의 취득가액의 승계제도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

8)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9)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10)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하다. 그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증여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를 증여자의 배우자와 증여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승계취득가액기준의 적용대상 자산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자산으로 확대하도록 개선한다. 셋째, 수증자의 보유기간은 현행 승계취득가액기준의 적용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5년을 그대로 존치한다. 넷째, 승계취득가액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을 양도소득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증여세액은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도록 한다.

라. 유산취득세 전환의 검토

상속세의 과세방법을 현행의 유산세형에서 유산취득세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상속인이 취득하는 유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유산의 취득자인 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산세형은 미국 및 영국¹¹⁾ 등과 같은 영미법 국가 중 일부 국가만이 채택하고 있을 뿐이다. 유산세형을 고수하여 오던 미국은 2010년에는 상속세를 폐지하도록 입법하였고, 그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도 유산취득세형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벨기에, 일본¹²⁾, 룩셈부르크, 스페인, 네덜란드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유산취득세형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근래의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세계적인 흐름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캐나다·오스

11) 영국의 상속세의 과세유형은 유산세형과 유산취득세형의 혼합형에 속한다.

12) 일본은 법정상속분 과세방법에 의한 유산취득세형을 채택하고 있는데, 순수한 유산취득세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트리니다드·토바고·뉴질랜드·이탈리아·포르투갈·슬로바키아 및 스웨덴 등이 그 예이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변화 추이에 발맞추어 국제적 과세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유산취득세형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의 유산세형은 제도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유산취득세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¹³⁾. 예를 들어, 각 상속인별 유산취득의 크기나 개인적 사정의 차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한계세율에 의하여 과세를 행하기 때문에 상속인의 담세력에 따르는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 상속재산을 불균등 분할함으로써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의 취득액에 차이가 심한 경우에도 상속재산가액이 적은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가액이 많은 상속인이나 적용되는 한계세율은 동일하다. 유산취득세형을 취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된다는 주장이다.

유산세형 아래에서는 유산취득액이 동일하더라도 유산총액의 크기, 배우자의 유무와 상속공제액의 크기 등에 따라서 상속세액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과세의 형평이 침해된다. 예를 들어 유산총액 50억 원 중 유산분할에 의하여 1억 원을 취득한 상속인 A, 유산총액 2억 원 중 법정지분(50%)에 해당하는 1억 원을 취득한 상속인 B,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에 의하여 유산총액 1억 원 전액을 취득한 상속인 C를 비교하여 보기로 한다. 위의 경우 3인 모두 상속에 의하여 각 1억 원씩을 취득하고 있으나, 그 상속세의 부담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상속세 부담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이 유산취득세형 아래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에 유산세형을 유산취득세형으로 바꾸기에는 전제조건인 과세행정인프라 구축 및 선행 시뮬레이션 연구의 부족으로 그 득실을 비교하기 어렵다. 향후 중장기적 과제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책방향을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된다.

13) 최명근(2002), 한상국·배준호·이광재(1996) 등.

IV. 이슈별 분석과 개선방안

상속·증여세제의 개선방안을 살펴봄에 있어 먼저 주요 논점을 논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선방안의 방향에 대해 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요 논점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단순한 논쟁거리에 지나쳐 실익이 없는 사항들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상속·증여세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경제적 분석으로 (i) 상속세 완화의 경제적 기능, (ii) 상속보다 증여를 권장하는 세계적 추세에 대한 우리의 입장, 그리고 (iii) 가업승계를 도모하는 세계적 추세에 대한 우리의 입장 등 세 가지 주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주제인 상속·증여세 완화의 방법으로는 과세체계 조정, 공제 조정, 재산평가방법 개선 등을 논할 수 있다. 과세체계 조정의 유력한 방안으로 상속·증여세 세율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 두 번째 주제인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의 관계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율구조를 최근에 갖추었기 때문에 과세구간 조정을 통해 세부담을 조정하고 세율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체계 조정에서 상속과 증여의 관계를 다루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주제인 가업승계에 대한 분석은 가업상속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장에서는 상속·증여세제의 개선방안을 과세체계 조정, 공제 조정, 재산평가방법 개선, 가업상속제도 개선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과세체계 조정은 구간 및 세율 조정을 포함한다. 공제 조정은 다른 세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재산평가방법 개선과 가업상속제도 개선에서는 우리나라 현황과 외국의 사례, 그리고 개선방안으로 나누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상속·증여 과세체계 조정

상속·증여세제의 과세체계 조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다른 세목과의 비교를 통해 소위 조세믹스(tax mix)의 한 구성으로 논할 수 있다. 크게는 소득세와 재산세와의, 작게는 양도소득세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체계 조정 및 상호관계성을 논할 수 있다. 구간의 재설정 및 세율의 조정 등을 살펴볼 수 있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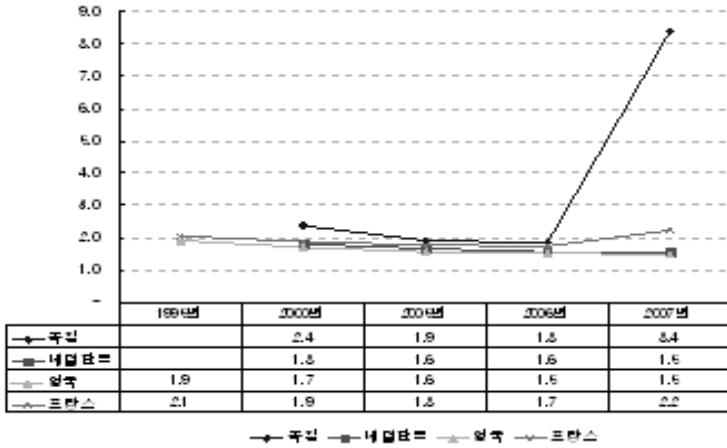
우선적으로, 소득세와의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한다. 상속·증여과세는 소득세와 재산세의 접경에 있는 세목으로 양대 세목의 세율 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소득세율이 상대적으로 재산세율보다 높다면 상속·증여가 촉진될 수 있는 반면 경제 활성화가 더딜 수 있다. 반대로 재산세율이 상대적으로 소득세율보다 높다면 경제 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는 반면 상속·증여가 더딜 수 있다.

다음은 독일,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소득세와 상속세의 1인당 GNI 대비 최고구간 적용치를 살펴본 것이다. 1인당 GNI 대비 소득세 최고구간은 1.5~2.5배로 네 국가 모두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다만 독일이 2007년 8.4배로 나타나는 것은 소득세 최상위 구간을 하나 더 늘렸기 때문인데, 2006년 최고구간 52,152유로, 최고세율 42%이던 것을 2007년에 이 위로 최고구간 250,000유로, 최고세율 45%로 구간을 하나 더 늘려 고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을 늘렸다. 1인당 GNI 대비 상속·증여세 최고구간 적용치는 영국(12~14배)이 가장 낮고, 네덜란드(26~28배), 프랑스(57~83배), 독일(860~1032배) 순으로 높아진다. 1인당 GNI 대비 상속·증여세 최고구간은 1995년 이후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경우 1995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이슈별 분석과 개선방안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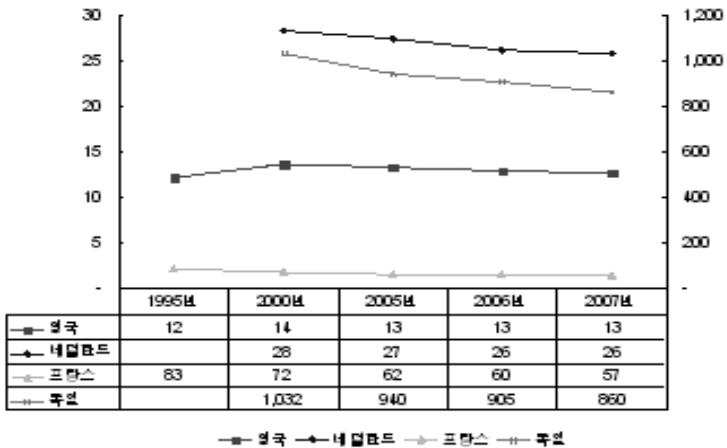
[그림 IV-1] 1인당 GNI 대비 소득세 최고구간

(단위: 1인당 GNI 배수)



[그림 IV-2] 1인당 GNI 대비 상속·증여세 최고구간

(단위: 1인당 GNI 배수)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상호보완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산에 대한 법률적인 지위나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할 때, 타인에게 유상으로 이전하면 양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면 상속이 된다. 이러한 관계 때문에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상호보완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근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양도 대신 상속·증여를 고려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상호보완성에 대한 연구 기대가 높다.

〈표 IV-1〉 재산제세 부과현황

(단위: 천명, 10억원)

	합계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인원	과세표준	총결정세액	인원	과세표준	총결정세액	인원	과세표준	총결정세액	인원	과세표준	총결정세액
1997	346	15,881	4,940	309	10,097	3,419	2.8	2,140	780	34.2	3,644	741
1998	388	13,471	3,764	336	7,865	2,414	3.5	2,317	728	48.6	3,290	622
1999	245	12,102	3,117	207	6,987	1,866	2.0	2,072	711	36.4	3,043	539
2000	362	18,743	3,535	323	11,938	2,437	1.4	1,865	514	37.2	4,939	584
2001	408	21,319	3,707	356	14,352	2,652	2.0	1,434	401	49.6	5,533	654
2002	637	24,270	4,238	580	18,067	3,107	1.7	1,767	474	55.0	4,435	657
2003	678	29,670	5,079	622	21,971	3,659	1.7	1,542	462	54.4	6,157	958
2004	723	38,612	6,893	618	25,565	4,418	1.8	2,876	954	103.0	10,171	1,521
2005	850	45,131	7,734	785	32,246	5,614	1.8	2,646	726	62.9	10,240	1,395
2006	793	64,192	11,747	702	49,400	9,172	2.2	2,510	758	88.3	12,282	1,817
2007	871	80,279	15,758	747	60,643	11,797	2.6	3,617	1,167	121.5	16,020	2,795

주: 과세표준 미달자는 작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자료: 국세통계연보, 양도소득세는 e-나라지표(국세청 내부행정자료) 참조

IV. 이슈별 분석과 개선방안 81

양도소득이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될 때 발생하는 자본이득으로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한다. 과세대상은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과 출자 지분, 기타자산 등으로 과산신고에 의한 처분, 농지의 교환·분합,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은 비과세된다. 여기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2년 거주, 3년 보유이고,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6억원 이상을 의미한다.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양도차익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제 경비를 제하고 계산한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얻은 후 기본공제(250만원)를 감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구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한다. 양도·취득가액의 결정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는 모든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등을 사용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로 미등기자산, 일정한 1세대 2주택 이상 소유주택, 비사업용 토지 등은 적용이 배제된다. 또한, 공제는 3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의 15%, 10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의 30%, 1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양도차익의 45%에 해당한다.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대상은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 전체 자산으로 부동산·주식에 대해 각각 250만원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다음의 <표 IV-2>와 같다.

〈표 IV-2〉 양도소득세 세율

(단위: %)

구분		세율	
		국내분	국외분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1년 미만 보유	50	좌동
	1~2년 미만 보유	40	좌동
	2년 이상 보유	9,18,27,36	좌동
	일정 1세대 3주택 이상	60	-
	일정 1세대 2주택 ¹⁾	50	-
	비사업용 토지 ¹⁾	60	-
	미등기전매	70	-
기타 자산		9,18,27,36	좌동
상장주식 등	대기업주식 등으로 1년미만 보유	30	20
	중소기업주식 등	10	
	기타	20	
비상장주식 등	대기업 대주주의 1년미만 보유주식 등	30	
	중소기업주식 등	10	
	기타	20	

주: 1) 일정 1세대 2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는 2007년부터 적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중 높게는 70%까지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상속 또는 증여와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양도소득세가 높기 때문에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적 성격의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 세수 규모를 살펴보기로 한다. 최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총결정세액이 증가하였는데, 그 원인으로는 실거래가 과세대상의 확대, 실거래가 등기부기재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과세표준 양성화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총결정세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IV. 이슈별 분석과 개선방안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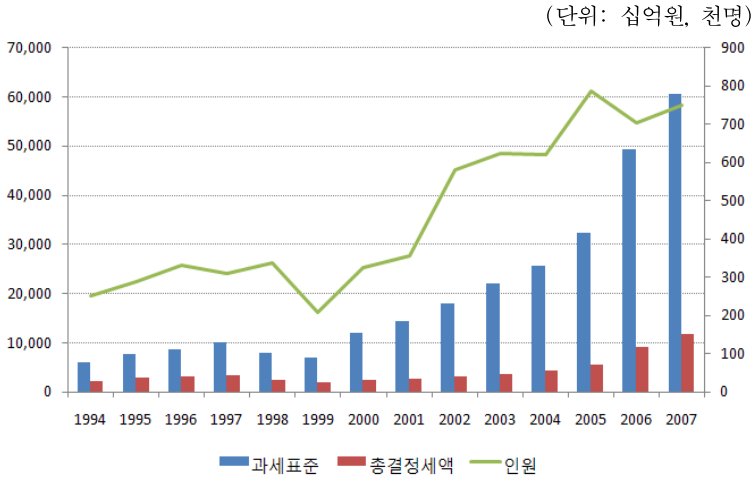
〈표 IV-3〉 양도소득세 부과 현황

(단위: 천명, 십억원)

	인원	과세표준	총결정세액
1994	250	5,905	2,130
1995	286	7,552	2,763
1996	329	8,726	3,063
1997	309	10,097	3,419
1998	336	7,865	2,414
1999	207	6,987	1,866
2000	323	11,938	2,437
2001	356	14,352	2,652
2002	580	18,067	3,107
2003	622	21,971	3,659
2004	618	25,565	4,418
2005	785	32,246	5,614
2006	702	49,400	9,172
2007	747	60,643	11,797

주: 과세표준 미달자는 작성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자료: e-나라지표(국세청 내부행정자료) 참조

[그림 IV-3] 양도소득세 부과 현황



OECD 주요 국가들의 소득세와 상속세의 세율구조를 비교한 것이 다음의 <표 IV-4> 이다. 상속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가 가장 큰 국가는 덴마크로서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거의 2배에 달했다. 상속세율과 소득세율이 역전되어 소득세율과 상속세율의 차이가 가장 큰 국가는 이탈리아로 39%p 차이가 났다. 물론 각 나라마다 조세구조가 다르고 경제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확정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소득세율보다 상속세율이 높고, 일본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하다.

IV. 이슈별 분석과 개선방안 85

〈표 IV-4〉 주요 국가의 소득세율과 상속세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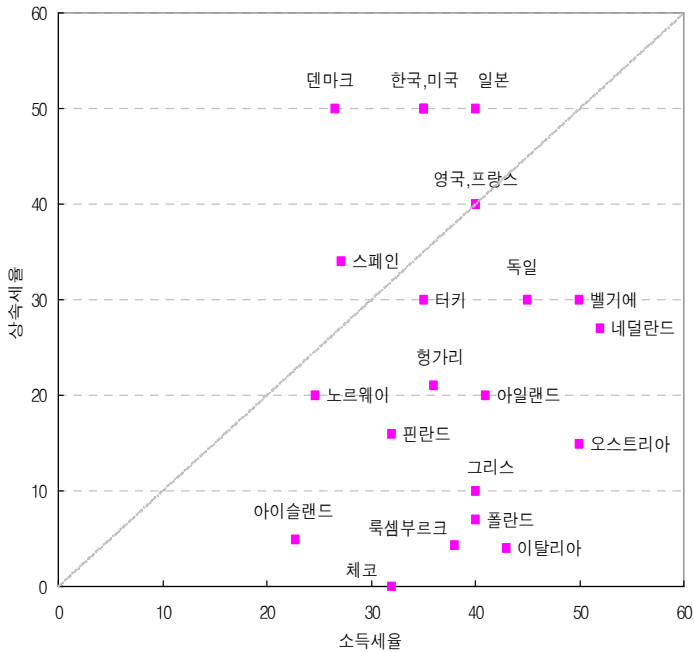
(단위: %)

국가명	소득세율	상속세율
덴 마 크	26.48	50
한 국	35	50
미 국	35	50
일 본	40	50
스 페 인	27.13	34
프 랑 스	40	40
영 국	40	40
터 키	35	30
아 일 랜 드	41	20
아 이 슬 란 드	22.75	5
노 르 웨 이	24.6	20
독 일	45	30
형 가 리	36	21
핀 란 드	32	16
벨 기 에	50	30
네 덜 란 드	52	27
그 리 스	40	10
체 코	32	0
폴 란 드	40	7
룩 섴 부 르 크	38	4.4
오 스트 리 아	50	15
이 탈 리 아	43	4

OECD국가의 소득세와 상속세의 분포를 배우자와 직계비속 기준으로 도식화한 것이 다음의 [그림 IV-4]이다. 덴마크, 한국, 미국, 일본, 스페인 순으로 상속세율의 소득세 대비 상대적 비중이 크다. 영국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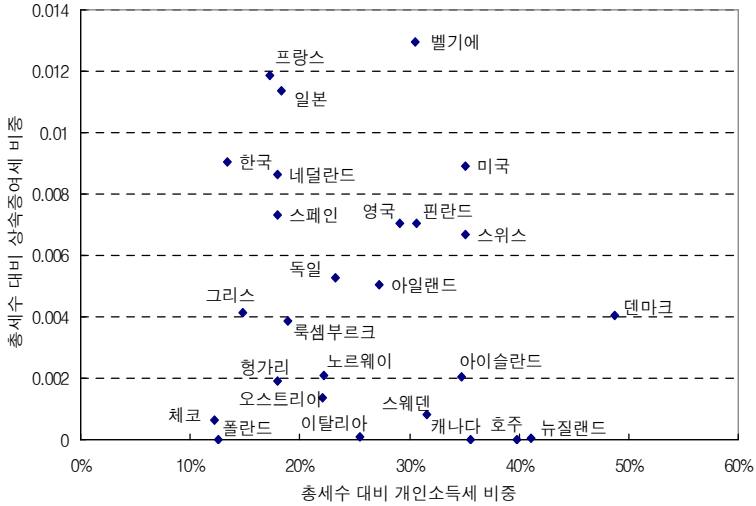
프랑스는 소득세율과 상속세율이 동일하였다.

[그림 IV-4] OECD국가의 소득세와 상속세의 분포
(배우자와 직계비속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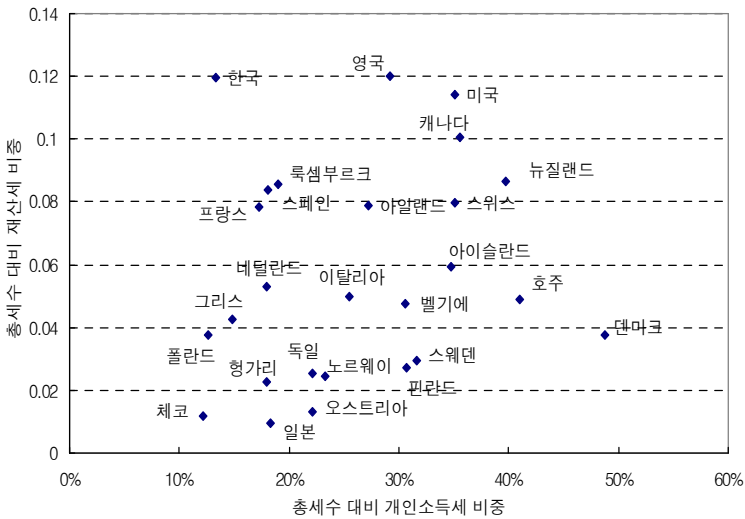


[그림 IV-5]와 [그림 IV-6]은 OECD 국가에 대한 총세수대비 상속 증여세수와 개인소득세수 비교, 총세수대비 재산세수와 개인소득세수 비교를 각각 나타낸다.

[그림 IV-5] 총세수 대비 상속·증여세수와 개인소득세수 비교



[그림 IV-6] 총세수 대비 재산세수와 개인소득세수 비교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큰 국가는 덴마크, 한국, 미국, 일본, 스페인 등이었고, 소득세율과 상속세율이 같은 국가는 프랑스, 영국 등이었다. 소득세율이 상속세율보다 큰 국가는 터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독일, 헝가리, 핀란드,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스, 체코, 폴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이었다. 이외에도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자본이득과세하는 국가로는 호주, 캐나다,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멕시코가 있다. 또한 상속세와 자본이득과세를 모두 과세하지 않는 국가로는 뉴질랜드가 있다. 지방정부가 상속세를 과세하는 나라의 대표적인 국가는 스위스로 지자체 중심의 재산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의 <표 IV-5>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들의 소득세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IV-5> 상속세 비과세 국가의 소득세율

(단위: %)

국가명	소득세율
호주	45
캐나다	29
포르투갈	42
슬로바키아	19
스웨덴	25
멕시코	28
뉴질랜드	39
스위스	11.5

호주와 캐나다는 대표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이다. 호주는 대부분 소득과세로 이전된 경우이고, 캐나다는 자본이득과세로 이전된 경우로 볼 수 있다. 최근 상속세 폐지를 단행하고자 하는 오스트리아의 경우 소득과세와 토지 등의 재산과세로 상속세를 이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 대비 소득세의 세율 자체는 낮은 것으로

IV. 이슈별 분석과 개선방안 89

나타났다. 이는 최고법정한계세율을 비교한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세 부담을 나타내기에는 평균유효세율보다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러나, 법정한계세율이 높다는 것은 세부담이 높다고 유추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점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기본구조에 따라 유산세형, 유산취득세형, 그리고 자본이득세형으로 분리하여 살펴보았다. 이들 세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소득세와 상속세의 세율을 비교하기로 한다. 다음의 표들은 과세유형별로 대표적 국가의 상속세 최고세율과 소득세 최고세율을 비교한 것이다. 또한 GNI 대비 기준금액 수준을 나타냄으로써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최저 재산가액을 나타내고 있다.

〈표 IV-6〉 유산세형 국가의 최고세율 기준금액 비교

(단위: 1인당 GNI 대비 배수)

	우리나라	미 국	영 국
최고세율	50%	50%	40%
소득세	35%	35%	40%
최고세율 기준금액(①)	\$3,227,194 (30억원)	\$2,500,000	\$588,676 (30만파운드)
소득세	\$86,059	\$349,700	\$65,343
'07년 1인당 GNI (②)	\$18,392	\$44,190	\$39,213
GNI 대비 기준금액 수준(①/②)	175.5	56.6	15.0
소득세	4.7	7.9	1.7

주: 환율은 2006.12.29 매매기준율 기준

〈표 IV-6〉은 유산세형 상속·증여세제를 갖는 우리나라, 미국 그리고 영국의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최저 재산가액 기준금액은 한국, 미국, 영국 각각, \$3,227, \$2,500, \$589로 GNI 대비 기준금액 수준은 각각 175.5, 56.6, 그리고 15배로 나타났다. 이를 소득

세 최고구간의 기준금액과 비교하면 한국, 미국, 영국 각각 4.7, 7.9, 1.7 배로 나타났다. 이를 보건대,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과세보다 상속과세가 40배 정도로 나타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산취득세형을 취하는 국가 즉, 독일, 프랑스, 일본에 대해 최고세율 적용구간에 대해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 IV-7>이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최저 재산가액, 득 기준금액은 각각, \$33,606,331, \$2,235,164, \$2,523,227로 GNI 대비 기준금액 수준은 독일, 프랑스, 일본이 각각 954.6, 63.1, 그리고 73.8배로 나타났다. 이를 소득세 최고구간의 기준금액과 비교하면 각각 9.3, 2.5, 4.4배로 나타났다.

<표 IV-7> 유산취득세형 국가의 최고세율 기준금액 비교

(단위: 1인당 GNI 대비 배수)

	독 일	프랑스	일 본
최고세율	50%	40%	50%
소득세	45%	40%	40%
최고세율 기준금액(①)	\$33,606,341 (2,556만유로)	\$2,235,164 (170만유로)	\$2,523,117 (3억엔)
소득세	\$328,701	\$87,670	\$151,420
'07년 1인당 GNI (②)	\$35,204	\$35,404	\$34,188
GNI 대비 기준금액 수준 (①/②)	954.6	63.1	73.8
소득세	9.3	2.5	4.4

자본이득세형을 표방하는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를 나타낸 것이 다음의 <표 IV-8>이다. 캐나다는 GNI 대비 기준금액이 2.7배, 호주는 3.4 배로 나타나 그 수치가 낮았다. 이는 자본이득세형 자체가 소득세와의 상호보완성 때문에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IV. 이슈별 분석과 개선방안 91

〈표 IV-8〉 자본이득세형 국가의 최고세율 기준금액 비교

(단위: 1인당 GNI 대비 배수)

	캐나다	호 주
최고세율	29%	45%
최고세율 기준금액(①)	\$104,186 (120,887캐나다달러)	\$125,702 (125,702호주달러)
'07년 1인당 GNI (②)	\$38,951	\$36,553
GNI 대비 기준금액 수준 (①/②)	2.7	3.4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대간 자산이전의 두 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속세가 갑작스런 사망에 의한 이전이라면, 증여는 생전에 이루어지는 이전이라 볼 수 있다. 사망에 의한 이전보다 생전이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라 할 수 있지만,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자산이전을 하는 시점을 가급적 늦추고자 하는 국가도 있다. 국제비교를 할 때, 이러한 상속과 증여에 대한 입장에 따라, 증여촉진형, 통합형, 증여억제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의 표는 상속과 증여에 대한 3가지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표 IV-9〉 상속·증여세율 체계 국제비교

◇ 통합형(상속세율=증여세율)

우리나라	1억원 이하 10%~30억원 초과 50%(5단계)
미국	1만달러 이하 18%~250만달러 초과 49%(13단계)
프랑스	7,600만유로 이하 5%~170만유로 초과 40%(7단계)
독일	5만 2천유로 이하 7%~2,556만 5천유로 초과 50%(7단계)

◇ 증여장려형(상속세율 > 증여세율)

영국	상속세율 : 40%, 증여세율 2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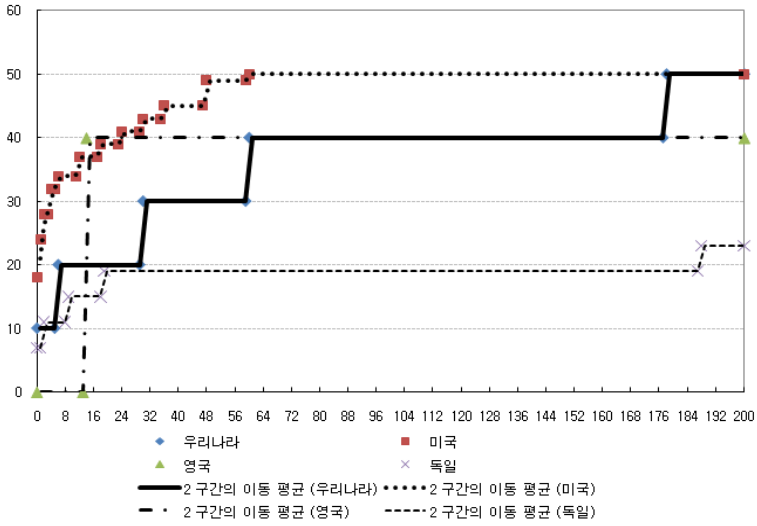
◇ 증여억제형(상속세율 < 증여세율)

일본	상속세율 : 1천만엔 이하 10%~3억엔 초과 50%(6단계) 증여세율 : 200만엔 이하 10%~1천만엔 초과 50%(6단계) * 상속시 정산제도 선택시 증여세율 20% 적용
대만	상속세율 : 30만원 이하 2%~1억 6천만원 초과 60%(18단계) 증여세율 : 30만원 이하 4\$~1억 5천만원 초과 60%(17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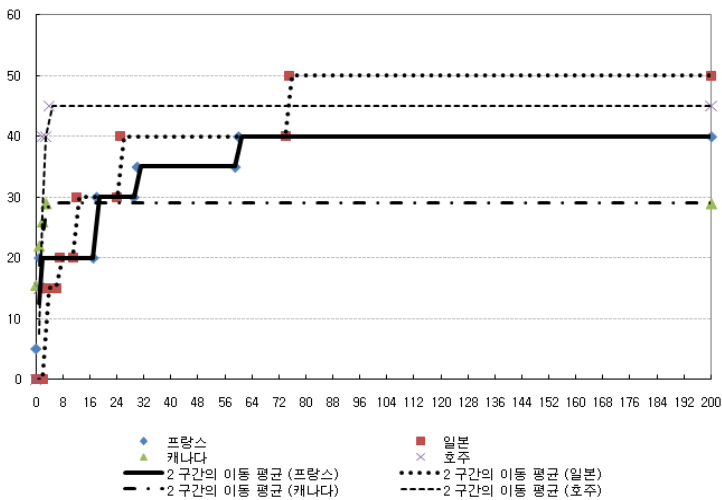
1인당 GNI 배수당 상속세 과표구간 및 세율 분포를 나타낸 것이 다음 그림 [그림 IV-7] 및 [그림 IV-8]이다. 우리나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등 8개국에 대해 살펴보았다.

IV. 이슈별 분석과 개선방안 93

[그림 IV-7] 1인당 GNI 배수당 상속세 과표구간 및 세율 분포
(한국, 미국, 영국, 독일)



[그림 IV-8] 1인당 GNI 배수당 상속세 과표구간 및 세율 분포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GNI 배수로 과표구간을 표현한 결과, 독일의 경우 과표구간이 상당히 넓게 퍼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아 보인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의 상속이전에 대해서는 저세율을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의 상속이전에 대해서는 고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차별화하는 방식이다. 독일은 최고소득세율이 상속재산이전에도 적용되도록 그 적용구간을 매우 넓게 배치한 경우이다. 이는 과세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을 경우, 조세회피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소득-재산과세의 형평성을 구비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호주가 과표에 비해 최고세율구간에 가장 빨리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세율은 45%이지만, 과표구간이 좁아 과표가 늘어날수록 세부담 증가가 가장 빠른 것으로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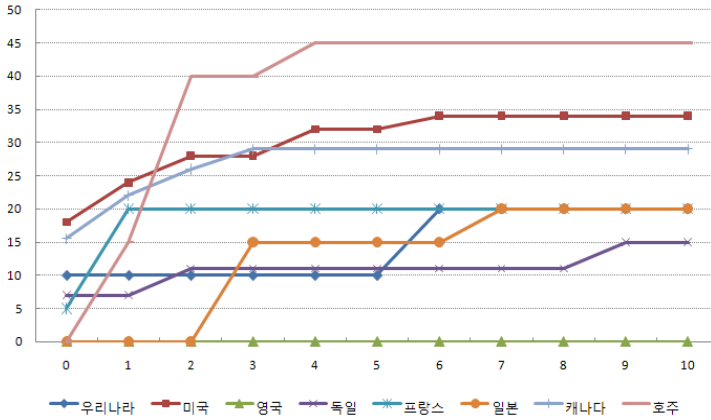
미국의 경우도 세부담이 비교적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세율이 50%인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먼저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적 평균적으로 조세구조가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자산가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는바, 향후 이러한 재산가액의 세대간 이전이 조세순응을 통해 세수로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대간 이전을 통해 재산권이 잘 행사되기 위해서 변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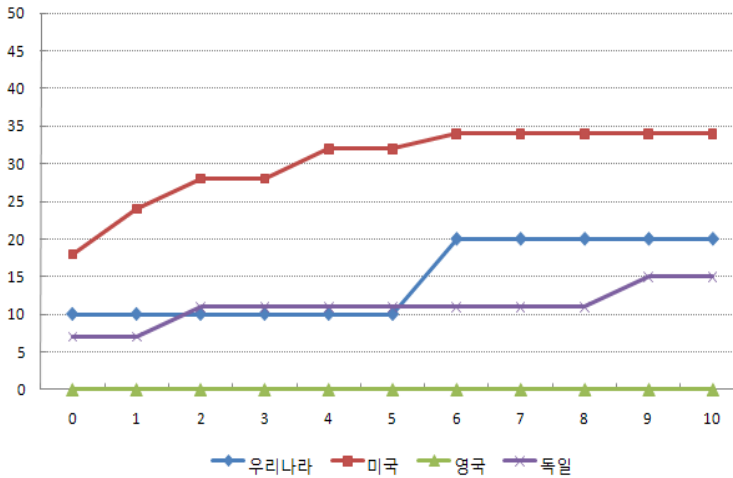
GNI 대비 10배수까지를 확대하여 나타낸 것이 다음의 [그림 IV-9]이다.

IV. 이슈별 분석과 개선방안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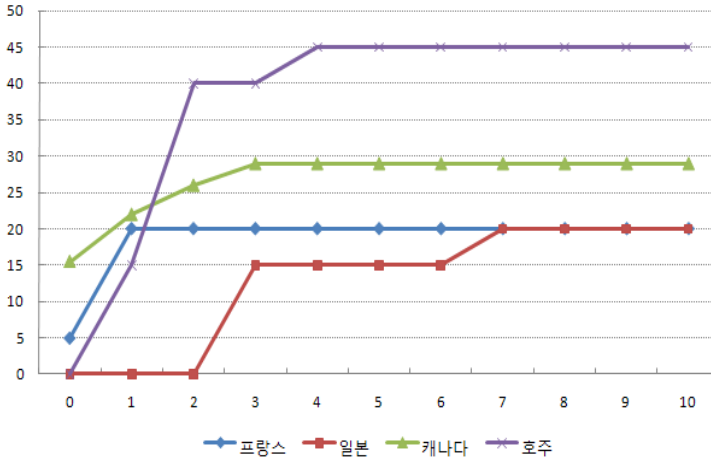
[그림 IV-9] 국가별 GNI 배수로 표현한 과표구간과 세율 비교
(GNI 10배수까지만)



[그림 IV-10] 국가별 GNI 배수로 표현한 과표구간과 세율 비교
(GNI 10배수까지만)(한국, 미국, 영국, 독일)



[그림 IV-11] 국가별 GNI 배수로 표현한 과표구간과 세율 비교(GNI 10배수까지만)(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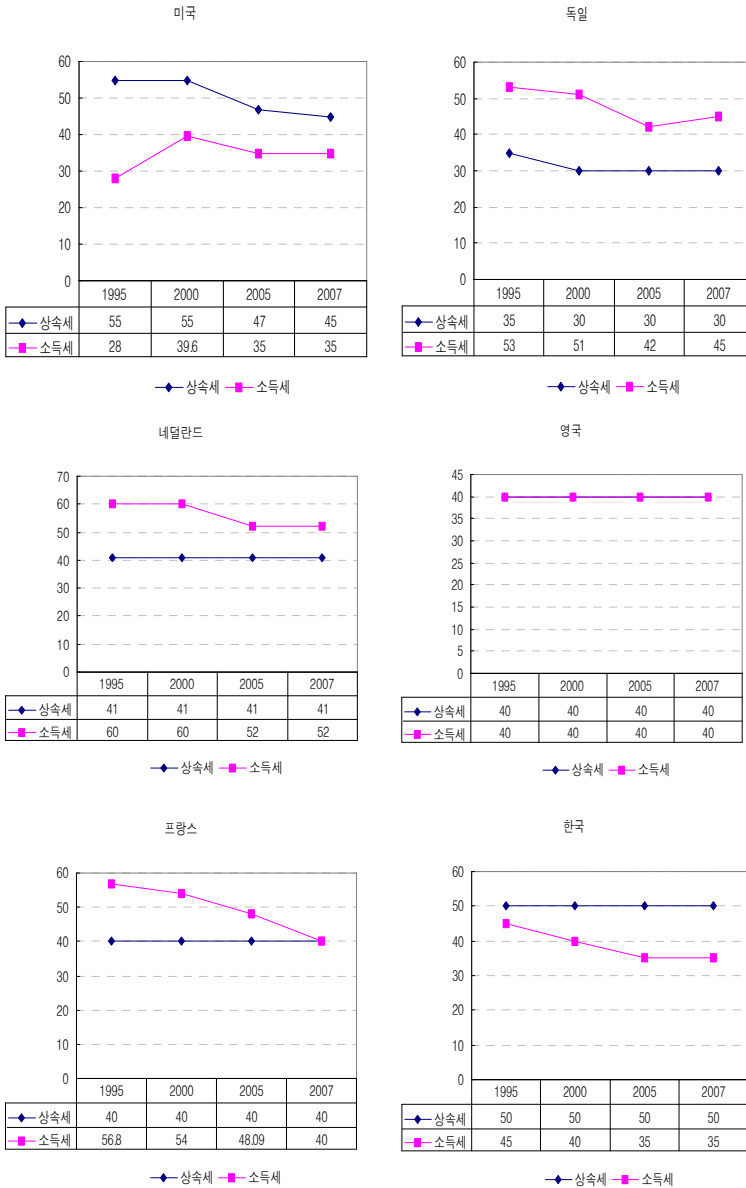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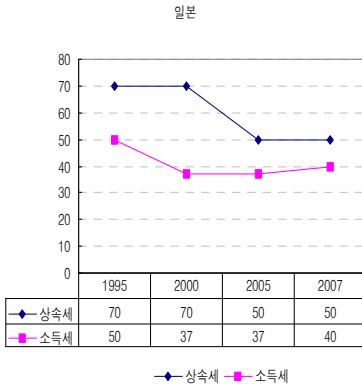
국가별 과표를 GNI 배수로 표현한 앞의 그림에서 GNI 10배수까지만 살펴본 그림이다. GNI 10배수의 구간에서는 호주가 45%로 가장 높은 세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아래로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20%), 일본(20%), 한국(20%), 독일(15%), 영국(0%)으로 나타나고 있다. 호주의 경우 GNI 4배수 정도에서 이미 최고세율(45%)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주가 자본이득과세로 상속이전에 대한 과세 방식을 변경한 것과 유관하다. 면적을 세부담이라고 봤을 때 GNI 10배수 구간에서는 호주가 세부담이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는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한국, 일본, 독일, 영국 순으로 볼 수 있다.

자료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주요 국가들의 상속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의 추세를 살펴본 것이 다음의 그림이다. 미국은 소득세가 강화된 경우이다. 독일은 소득세와 상속세의 간극이 좁혀진 경우이다. 영국은 최근 10여 년간 세율 변화가 없었다.

IV. 이슈별 분석과 개선방안 97

[그림 IV-12] 주요국의 상속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 추이





2007년 현재 각국의 상속세 최고세율과 소득세 최고세율을 살펴보면,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높은 국가는 우리나라, 일본, 미국이고, 소득세 최고세율이 상속세 최고세율보다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 독일이며, 소득세 최고세율과 상속세 최고세율이 같은 국가는 프랑스, 영국이었다.

이상과 같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이 소득세 세율과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높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최소이전금액의 크기도 상대적으로 크다. 이것은 향후 상속세 세율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을 나타낸다.

2. 상속·증여 공제 조정

상속·증여세제의 각종 공제에 대한 조정도 개선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재산가액 중 상속 및 증여공제를 제한 후 과세표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유효세율은 공제가 많으면 낮아진다.

상속공제는 상속세에 대해 비과세하는 기준점을 제공함으로써 상속

IV. 이슈별 분석과 개선방안 99

세 부담의 정도를 나타내는 바로미터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물론 각 나라마다 조세구조와 경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상속공제액 범위가 클수록 세부담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표 IV-10>는 주요 국가의 상속공제금액과 최고세율 적용금액을 1인당 GNI의 배수로 표현한 것이다.

<표 IV-10> 1인당 GNI 대비 상속공제 수준 및 최고세율 구간 국제비교

구 분	상속공제 금액	GNI배수	최고세율 구간금액	
			최고세율 구간금액	GNI배수
한 국	10억원	60 ¹⁾	30억원(50%)	178
미 국	37억원	87	25억원(50%)	60
일 본	7억원	19	27억원(50%)	75
영 국	9.8억원	25	6억원(40%)	14
프랑스	10.5억원	29	21억원(40%)	60

주: 1) 한국의 상속공제 10억원은 1인당 GNI('05년:16,812천원)의 60배에 해당함을 의미

각국의 상속공제금액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일본, 프랑스는 비슷한 수준이며,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약 4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GNI 대비 상속공제금액으로 비교해보면, 일본과 영국, 프랑스가 19~29배에 비해 우리나라와 미국이 각각 60배와 87배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고세율 구간금액은 한국(30억원)과 일본(27억원), 미국(25억원), 프랑스(21억원) 순으로 비슷한 반면, 영국(6억원)은 낮은 편이었다. GNI 대비 최고세율 구간 금액으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178배로 일본(75배), 미국(60배), 프랑스(60배), 영국(14배)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의 상속세 면세점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 상속세 부담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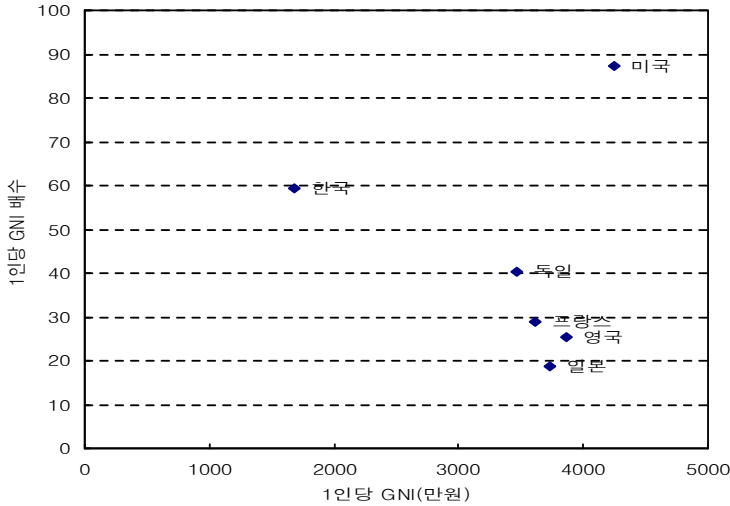
〈표 IV-11〉 주요국의 상속세 면세점 국제비교

구분	국가	상속세 면제금액 (①)	1인당 GNI (②)	1인당 GNI 배수 (①/②)	비 고
유산 세형	한 국	10억원	1,682만원	59.48	· 배 우 자 : 5억원 · 일괄공제 : 5억원
	미 국	37억원	4,241만원	87.23	· 배 우 자 : 한도없이 전액
	영 국	9.8억원	3,871만원	25.31	· 배 우 자 : 한도없이 전액 · 자 녀 : 공제는 없으나 £300,000(=5.5억원) 까지는 "0"세율
유산 취득 세형	독 일	14억원	3,465만원	40.4	· 배 우 자 : €307,000(4.7억) +256,000(3.9억, 생계비) · 자 녀 : €205,000(3.1억) + 연령추가공제* * €52,000, €41,000, €30,700, €20,500, €10,300
	프 랑스	10.5억원	3,617만원	29.03	· 배 우 자 : 한도없이 전액 · 자 녀 : €150,000 * 손자 €30,000, 형제 €15,000 조카 €7,500
	일 본	7억원	3,729만원	18.77	· 배 우 자 : ¥160,000,000(14.5억) 까지 전액 초과하는 법정지분 한도 상당 공제 · 미성년자 : 20세까지 연 ¥60,000 (57만원) · 장 애 인 : 70세까지 연 ¥60,000 (중증¥120,000) * 일본은 세액공제제도 운영

주 : 배우자 + 자녀3 가정 기준

자료 : 일본세제조사회('06.5), IBFD(Global Tax Surveys)

[그림 IV-13] 1인당 GNI 배수로 표현한 공제금액



유산세형과 유산취득세형을 취하는 우리나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6개국에 대해 1인당 GNI 대비 배수 상속세 면세점을 구한 결과, 각각 59.8, 87.23, 25.31, 40.4, 29.03, 18.77배로 나타났다.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면세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면세점을 낮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점의 감소는 실증분석을 통해 보면, 탄력성 1.8로 나타나기 때문에 세수 감소가 탄력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

3. 재산평가방법 개선

가. 우리나라 현황

우리나라 비상장주식 및 출자지분 평가 등의 재산평가방법은 상속·증여재산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속·증여 세부담에 큰 영

향을 미친다. 재산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시장에 의해 결정된 경우에는 이견이 존재하지 않겠지만, 시장에 의한 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재산가치를 평가할지가 논의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

현행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즉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의 타당성에 대해 회계학적 실증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평가액이 시가보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견해와 고평가되었다는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 상속세나 증여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적정 수준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과세대상 재산의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주식의 실제가치보다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만일 비상장주식이 과소평가된다면 편법 증여·상속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주식의 증여나 상속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과대평가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납세의무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세부담을 부여하게 되며, 시가가 존재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현행 보충적 평가방법이 일반적으로 주식의 적정가격을 평가하지 못한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평가방법이 너무 경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식의 가격은 주식을 발행한 기업 및 국내외 경제여건 및 경영권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하여 형성된다. 따라서 모든 주식은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 가치도 달라지게 되는데 불구하고 일률적인 평가방법으로 이를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된다.

가업승계와 관련된 상속세 관련 특별조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특례를 적용하는 대상이 되는 가업승계재산이다. 가업승계재산의 경우에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가업승계를 위해 사용되는 재산 중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고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이 된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가업승계특례에 있어서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대하여 서술한다.

1) 평가방법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식(출자지분)수를 곱하여 비상장주식가액을 평가하고, 이 경우 1주당 가액의 원 미만은 절사하며, 순자산가액 또는 수익가치가 부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10%)로 나누어 1주당 수익가치를 계산하는바, 이는 법인의 수익력을 자본으로 환원하는 것으로 일명 '수익환원가액'이라고도 한다.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추정이익의 평균액의 계산시에는 직전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하고 최근 연도부터 차례대로 3.2.1의 가중치를 둔다. 이 때, 사업연도 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은 당해 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고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 중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추정이익의 평균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으며,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 0으로 한다.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가산할 금액을 더하고 차감할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이란 법인세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며 가산하거나 차감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산할 금액은 국세·지방세 과오납에 대한 환급금이자,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금액,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

불산입 금액 등이 있고, 차감할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체납처분비,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 업무무관 지출비용,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기부금한도 초과액, 접대비한도 초과액,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금액,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등이 있다.

주식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에 의한다.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순자산가액이란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의미한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장부가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감가상각자산인 경우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순자산가액이 음수이면 그 부분은 “0”으로 적용한다.

순자산가액 = 영업권 포함 전 순자산가액 + 영업권
영업권 포함 전 순자산가액 = 자산가액 - 부채가액
자산가액 =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 + 평가차액 + 자산에 추가하는 가액 - 자산에서 제외되는 가액
부채가액 = 대차대조표상 부채가액 + 평가차액 + 부채에 추가하는 가액 - 부채에서 제외되는 가액

IV. 이슈별 분석과 개선방안 105

자산에 대한 평가차액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종류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법 제60조 내지 제66조)과 대차대조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자산가액에 포함시킨다. 이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시가감정서로 갈음하여 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자산에 가산하는 가액으로는 법인세법상의 유보금액, 유상증자한 금액,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이 있고, 자산에서 제외되는 가액으로는 선급비용, 종전에 이연자산으로 분류되던 무형고정자산, 증자일전의 잉여금의 유보액, 이연법인세자산이 있다.

부채에 대한 평가차액은 대차대조표상의 부채 종류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대차대조표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부채가액에 포함시키며, 미계상된 부채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부채에 가산하는 가액으로는 법인세·농어촌특별세 및 주민세, 배당금과 상여금, 퇴직급여추계액 등이 있으며 부채에서 제외되는 가액으로는 제준비금, 제충당금, 외화환산대, 이연법인세부채 등이 있다.

영업권은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함)를 감안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한도초과이익금액은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함)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영업권 지속연수를 감안하여 10%로 할인한다.

2) 최대주주 소유주식의 할증평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최대주주 소유주식이 일반주주 소유주식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주주 지분을 규모에 따라 50% 이하일 경우 당해 주식의 평가액에 그 가액의 20%(중소기업의 경우 10%)를 가산하여 평가하고, 최대주주 지분을

이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평가액에 그 가액의 30%(중소기업의 경우 15%)를 가산하여 평가한다. 최대주주의 지분율 계산은 상속일 또는 증여일로부터 1년 내 양도 또는 증여한 주식 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제도는 2009년 12월까지의 적용이 유예되어 있다.

3)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중소기업으로서 자산·매출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상장법인이나 협회 등록법인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가 일정기간 전까지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액 및 그 평가 부속서류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불구하고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청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4) 문제점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이란 1주당 순순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여기서 순순익가치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순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순익가치환율')로 나눈 것을 말한다(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것

IV. 이슈별 분석과 개선방안 107

을 말한다(상증법 시행령 제54조 2항). 판례는 순자산액을 계산함에 있어 회사가 보유중인 제품가액에 대한 평가를 예상수익을 배제한 최종 투입원가인 장부가액으로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고, 법인의 채권이 회수불능상태에 있어서 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경우 이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이라 할지라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이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순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부동산 비율이 높은 경우 평가대상법인의 가치는 수익력보다 자산가치가 더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울러 비상장주식의 경우라 할지라도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당해 법인의 사업성·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상증법 제63조 제2항31).

또한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해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영업권 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로서 납부할 세액과 이익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배당금과 상여금, 퇴직급여 총당금 등은 부채에 가산된다(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아울러 기업공개중인 주식 등의 평가에 관하여도 평가에 관한 특칙

이 마련되어 있는데(상증법 시행령 제57조), 그 요지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 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도입하여 그 가액과 법정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상장 준비중인 주식을 통한 변칙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또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공채·사채와 전환사채 등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 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에 의한다(상증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58조의2 제1항). 그 이외의 국채와 대부금·외상 매출금 및 받을 어음,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 등에 관하여도 별도의 평가방법을 두고 있고(상증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특히 2000년 12월 29일 개정으로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 이외의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하여는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불가능한 기간과 그 전환이 가능한 기간으로 나누어 상세한 평가규정을 두고 있다(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그러나 이러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불특정인 사이의 매매의 실례가 없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방법이므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다만 회사의 경영권을 지배하는 이례적인 주식매매 대금을 적정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자들이 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빠른 시간 내에 후계자에 대한 사업승계가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비상장회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승계와 관련하여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의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소유주가 후계자에게 사업을 승계하고자 하나 과도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인해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될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중소기업의 사업승계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

IV. 이슈별 분석과 개선방안 109

세법상에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사회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도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감 등의 조치와 함께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기업의 승계 및 주식이전을 통한 경영권의 승계는 단순한 재산의 이전이 아니다. 기업은 수많은 이해관계자에게 둘러싸여 있고 기업의 존폐는 국가경제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을 개인의 고유 재산으로 보고 평가·과세하는 것은 기업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제 기업의 경영승계 문제는 개인의 재산승계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순순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기업규모와 기업 특성에 따라 일부 예외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어떠한 이론에 근거하지 않고 있는 절충형 방식으로서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에서의 순순익가치는 일종의 유사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방법으로서 현금흐름의 측정을 포함하여 많은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 많이 존재한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에서의 순자산가치는 진정한 순자산가치의 의미보다는 일종의 청산가치에 근접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외국 현황

주요 국가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미국

미국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은 연방상속세 및 증여세 규정(Federation Estate Tax and Gift Tax Regulations)에 근거하고 있다. 동 규정은 공정한 시장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정형화된 공식은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맞는 방법을 통해 평가할 것을 정하고 있다.

평가방법으로는 (i)순자산가치평가법 (ii)수익력가치평가법 (iii)배당력가치평가법 (iv)상대가치평가법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들 평가방법에 각각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각 방법별 가중치에 관해서 정형화된 공식은 없으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된다.

미국 내국세법은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에서 기초적이고 신중한 분석을 요구하는 요소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 평가요소들은 회사의 성격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상대적 가중치를 제시하고, 공중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들의 주식을 평가할 때는 자산가치에 최대한의 가중치를 두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은 각 회사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비상장주식과 관련한 법으로는 플브라이트법(Fulbright Bill)이 있다. 동법은 미국의 기존 증권법이 상장주식을 염두에 두고 있어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장외시장의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해서도 상장법인의 주주와 동일한 정도의 보호를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따라서 동법은 원칙적으로 주간 통상의 방법에 의한 주식거래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기존의 연방증권법의 적용범위와 동일하다. 결국 동법은 비상장주식의 거래를 규제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당해 주식의 거래와 관련한 투자자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비상장주식 평가시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i)사업의 종류 (ii)경제적 전망 (iii)장부가치 (iv)이익가치/유사기업을 들 수

있다.

2) 일본

시장성이 없는 주식은 상대거래나 세무상의 평가방법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며, 이러한 주가 형성에는 양도주주의 속성, 양수주주의 속성 및 발행회사의 상황 등이 주된 요인으로 고려된다.

‘자산가치’, ‘수익성’, ‘업계의 경기동향’ 등 주가를 형성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상장주식의 경우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이 최종적으로 시장가격이라는 형태로 형성되게 된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그 시장가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주가의 형성에 관계되는 요인들을 사전에 정한 뒤에 해당 주식이 어느 요인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여 주식의 가격을 평가하게 된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는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나 주식을 어떠한 시점이나 관점에서 분석·평가하는가에 의해 계산의 방법이 달라진다. 실제 실무계에서 채용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평가하는 때의 착안점에 기초하여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 평가회사의 자산가치에 착안한 방법

이 평가방법은 평가회사의 자산가치를 통해 평가하는 방법이다.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하여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계산은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어 실제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으로는 ‘순자산가액방식’이 있다.

순자산가액방식이란 평가회사의 자산으로부터 차입금 등의 부채를 공제한 잔액, 즉 정확한 순자산가액을 구하여 그것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1주당 주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자산을 시가평가하여 산

정하는 것을 '시가 순자산가액'이라 하고, 장부가액 그대로 산정하는 것을 '장부가 순자산가액'이라고 한다.

나) 평가회사와 유사한 주식의 시장가격과 비교계산하는 방법

이 평가방법은 평가회사와 업종·규모·수익 등이 유사한 기업이나 유사업종의 자산 및 이익 등 복수의 비교요소를 비교하여 기준이 되는 비율을 계산하고 그것에 기준되는 주가를 곱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비교대상을 상장회사로 하는 것으로 평가회사의 자산으로서의 자산 및 현금흐름의 이익 등으로부터 시장가격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유사회사 비교방식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 평가회사의 수익성에 착안하는 방법

이 평가방법은 평가회사의 수익에 착안하여 주식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평가회사로부터 주주가 획득한 배당에 기초하여 주식을 평가하는 배당환원방식과 평가회사가 시장으로부터 획득한 세전 당기이익을 기초로 하여 주식을 평가하는 수익환원방식, 또한 평가회사가 시장으로부터 획득한 현금흐름을 기초로 주식을 평가하는 현금흐름 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DCF)이 있다.

라) 주주의 의결권 비율별 평가

비상장회사의 주식이라고 하여도 그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의 의결권 비율에 의해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회사의 오너 일가족과 같은 지배주주는 그 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그 소유를 통해 회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유주식에는 회사 지배권이라는 가치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동족 이외의 종업원이나 임원과 같이 소

수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갖는 주식의 가치는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 소유주식에는 배당 청구권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상속세 평가에 있어서는 동족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의 업적이나 자산 내용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방식(원칙적 평가 방식)에 의해 평가하는 방법과 소수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의 배당실적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배당환원방식(특례적 평가방식)의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마) 발행회사의 규모에 따른 평가

비상장회사 중에는 상장회사와 같은 대기업도 있지만 개인사업 정도의 영세기업도 있다. 따라서 회사의 규모에 따라 그 평가방법도 달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경우에는 비상장회사의 동족주주의 소유주식에 대해서는 '종업원 수', '직전 기말 이전 1년간의 매상고', '장부가 총자산가액'이라고 하는 회사 규모의 3요소에 의해 평가대상회사를 '대회사', '중회사', '소회사'의 3가지로 구분하고 다시 자산보유 상황 및 영업의 상황이 특이한 회사를 '특정 평가회사'로 하여 각각 적용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다. 회사 규모의 판단은 종업원 수, 순자산가액과 종업원 수, 거래금액의 3가지로 평가한다. 먼저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대회사로 판단하며, 100명 이하인 회사의 경우에는 총자산가액과 종업원 수 및 거래금액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평가방법은 상장회사 정도의 대회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적에 착안하는 유사업종 비교방식으로 평가하며, 개인사업과 소회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산가치에 착안한 순자산가액방식에 의해 평가한다. 아울러 대회사와 소회사의 중간 정도인 중회사의 주식은 대회사와 소회사의 평가방법을 병용하여 평가한다. 병용 비율은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다. 다음으로 회사의 자산보유 상황이나 영업의 상황이 특이한 회사의 주식은 특정 평가회사의 주식으로서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순자산가액방식에 의해 평가한다.

3) 영국

주식의 상속이 사업용 자산공제 또는 농업용 자산공제에 의한 100% 소득공제의 적용을 받게 되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에 관한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해당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i) 자산가치의 이전에 의해 양도인의 재산가치가 감소한 부분에 대해 IHT가 부과되고 (ii) 관련 자산의 조세회피 규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양도자산의 가치는 이전한 가치와 동액이기 때문에 금액이 명확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양도인이 금전 증여를 한 경우 양도인의 재산은 양도인이 증여한 금액만큼 감소한다. 단, 양도대상이 자산인 경우에는 자산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자산의 가치는 공개시장에 있어서 매각 희망자와 구입 희망자가 매매를 했을 경우에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매매대금이다. 상기 내용은, IHT의 중요한 특색이며, 「양도측의 손실」(loss to the transferor)원칙이라고 일컫는다.

비상장주식을 예로 들면 해당 주식의 가치는 소유자에게 부여된 의결권의 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회사 의결권의 80%를 수반하는 지분이, 의결권의 20%를 수반하는 지분보다도 주당 가격이 높다. 어떤 회사 주식의 80%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20%를 계속해서 소유하는 형태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이전한 자산가치는 양도되는 60%의 주식 자체의 가치와는 동등한 것이 아니라 80% 지분의 가치와 20% 지분의 가치의 차액과 동등하다.

어떤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고, 해당 자산과 관련되는 자산이 존재

하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가 해당 자산 및 관련 자산의 ‘대응부분’(appropriate portion)의 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가치는 ‘대응부분’의 가치로 결정된다. 원칙적으로 ‘대응부분’의 결정에 있어서 각 자산의 가치는 집합체로서 자산으로부터는 떨어진 독립자산으로 가치가 평가된다. 단, 이 원칙은 집합체로서의 자산가치의 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동일한 종류의 주식이면 ‘대응부분’은 단순히 주식 수에 의해 결정된다.

4) 프랑스

비상장주동족사업 지분의 재산적 평가, 특히 비상장기업의 지분의 평가는 상속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때 세무당국은 기업가치를 재평가한 뒤 그 평가액에 근거하여 과세액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상속할 때 사업지분의 평가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세무당국에 의한 이의나 재판소에 의한 최종적인 변경의 여지를 남긴 채 기업가치는 결정된다. 프랑스의 세법에서는 증여의 경우에만 사업지분 또는 자산의 가치를 세무당국에 사전확인할 수 있다.

1998년 1월 22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적용된 평가 결정 절차(procédure de rescrit)에서 증여를 하고자 하는 사업소유자는 사업지분의 가액(또는 자산의 가액)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얻기 위해서 세무당국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세무당국이 해당가격을 승인했을 경우에는 이후에 세무당국에 의하여 해당 가격이 변경되지 않는다. 보다 자세히 말하면 사업소유자는 세무당국에 대하여 사업의 지분(또는 자산)의 평가액을 제출한다. 해당 절차는 사업지분(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상장기업의 시가는 시장가격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절차는 비상장기업에만 적용되며 사업용 자산(사업주가 주요 사업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자산)만이 대상이 된다. 평가의 실시 후 세무당국은 납

세자의 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6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회답을 해야 한다.

세무당국의 회답이 긍정적인 경우, 증여자는 세금의 재평가 리스크를 모면한다. 단, 이를 위해서 해당 증여가 세무당국의 판단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평가액에 근거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세무당국이 회답하지 않을 경우에 회답은 유보될 수 있으며 승낙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5) 독일

원칙적으로 자산은 평가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의 시가로 평가되지만 사업자산, 농업 및 임업의 자산 및 기업의 주식은 예외다. 평가의 목적상 자영업자의 자산은 사업자산과 동등하게 다루어진다.

사업자산은 평가일 현재 세무상 금액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자산평가이익은 상속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세무상으로는 자산평가이익과 같이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원가로 계상되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에 대해서도 보통 시가보다 낮은 금액이 산출되는 일정한 산정 방식을 따라 평가된다. 미개발지의 가치는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별로 공표되는 표준지가에 따라 산정된다. 미개발지의 가치는 통상 연평균 임대소득으로부터 경비 및 감가상각분을 공제한 금액에 근거한다.

전년의 대차대조표에 있어서의 자산가격이 올해의 자산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평가일에 있어서의 자산가격도 전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격에 의해 결정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에 있어서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여지는 없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IGTA)에 근거하는 정액공제 및 정률감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상속인은 최대 225,000유로의 정액공제를 할 수

IV. 이슈별 분석과 개선방안 117

있다. 증여자 또는 피상속인은 최후의 유언에 따라 과세공제에 의한 이익을 누가 향유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사업자산은 사업자산의 가치에서 과세공제하고 해당 금액의 65%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정액 공제는 10년에 1회에 한해서 인정을 받지만, 정률감세는 상시 이용가능하다. 정액공제와 정률감세의 전제조건은 아래와 같다.

대상 자산이 다음에 정의되는 사업자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독일에 소재하는 기업, 기업의 독립된 부문, 사업조합의 지분, 자영업의 조합지분 또는 유한책임조합의 무한책임지분의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증여자 또는 피상속인이 그 주식의 25% 이상을 직접 보유할 경우에는 해당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지분(주식)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과 더불어 수증자는 5년간 사업활동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상속 전 기간 요건은 없다. 이하의 경우 우대조치의 적용이 제외된다. 기업 또는 농업 혹은 임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매각될 경우, 계속 사업에 필요한 주요 자산이 매각될 경우, 수증자가 후에 사업을 포기할 경우 등이 해당한다. 수증자가 사업조합 또는 자영업조합에서 자신의 이익 및 자본준비금에서 52,000유로 이상을 환급받은 경우나 수증자가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거나 수증자의 주주관계 이외의 관계에 대해서 출자한 다른 기업의 자본준비금에서 해당기업의 주식을 총당(현물출자)할 경우가 해당한다.

세액공제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규정된 자산(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 이 조항의 목적은 증여자 또는 피상속인의 측근 친족이 아닌 수증자에게 제Ⅰ유형의 대상자(배우자, 자녀, 사망한 자녀의 자녀 등)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의 세액공제 조치는 수증자가 제Ⅱ유형 또는 제Ⅲ유형에 속할 경우에 적용된다. 제Ⅱ유형은 부모 및 직계존속(제Ⅰ유형에 속하지 않는 경우),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자녀, 계친, 인척 관계상의 자녀 및 부모, 이혼 배우자를 말한다. 제Ⅲ유형에 속하는 것은 그 밖의 계승인이다. 세액공제는 수증시에 제Ⅰ유형의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세

을을 이용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과 수증시에 제Ⅱ유형 및 제Ⅲ유형에 속하는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이용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88%를 곱하여 산출한다.

납세기한 연기에 대해서는 사업자산 또는 농업 및 임업의 자산의 수증자는 최대 10년간의 납세기한 연기를 인정하고 있다. 사업자산은 기업 또는 사업조합의 자산이다.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지분(주식)은 사업자산으로서 보유된 경우에만 우대의 대상이 된다. 주식이 개인자산으로서 보유될 경우에는 납세기한 연기는 적용되지 않는다. 덧붙여 납세기한 연기가 계속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세금이 기업의 cash flow에서 지불될 수밖에 없는 경우, 납세기한 연기가 필요하게 된다. 수증자가 자신의 개인재산으로부터 세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경우에는 납세기한 연기 조치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의 경우에는 무이자에 따른 납세의무 기한 연기가 허가된다. 상속에 의한 경우와 달리 증여의 경우 이자는 지불해야 한다. 지난 2005년에 독일 정부는 동족사업의 상속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을 공표하고, 동족사업이 처한 문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에 따르면 수증자가 10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사업자산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의 납부를 10년 후까지 연기하거나 이월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사업의 계속에 따라 세금은 10년 동안 연부연납할 수 있다. 해당조치는 사업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지분(주식)에도 적용된다. 상속세에 관한 조치는 아니지만 사업체를 원활하게 이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경감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즉, 55세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 전체의 자산을 매각·청산하는 경우에 해당연도의 소득세(종합과세)의 산정시 평균세율의 1/2을 적용하고 있다.

다. 개선방안

1) 평가방법의 다양화 필요성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다양한 평가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나, 어느 것도 완벽한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에 맞게 다양한 평가방법을 정해 두고 사안별로 가장 적합한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다양한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경직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주식은 단순히 재무적 가치만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경영권의 유무 등과 같은 다양한 가치들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비상장주식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비상장주식의 상황에 맞는 평가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미래 가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DCF방식이 적당할 것이다. 이 방법은 평가회사의 경영계획에 따라 장래 획득이 예상되는 사전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주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장래 수익성이 고려된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장래에 대한 예측이라는 점에서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 방식은 적당하지 않으며, 현재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다른 평가방법에 비해 객관성이 높은 순자산가액 방식이 적당할 것이다. 그러나 동 방법은 회사의 청산가치를 산출하는 성격상 시장 유동성이나 장래 수익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개별 평가방법은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비상장주식에 적합한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평가기준의 다양화 필요성

주식의 가치, 즉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가치는 기업의 현재가치뿐만 아니라 장기적 비전과 같은 미래가치, 전체적인 경제전망과 기업의 경쟁력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된다.

거래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고려되어 가격이 형성되고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기업에 관해 공개된 모든 정보가 고려된 시장가격은 그 기업에 대한 합리적 가치평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장을 통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 관한 정보가 시장에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다. 기업에 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기업에 대한 가치판단이 왜곡될 수 있으며, 이는 주식가격의 왜곡으로 나타날 수 있다. 주식가격의 왜곡은 결국 상속세나 증여세 산정이 잘못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를 통한 탈세나 부당한 경영승계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해 살펴본 대부분의 판례가 실제 거래가액을 비상장주식의 적정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는 점에서 비상장주식의 정확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장주식과 달리 기업에 관한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주식 가치, 즉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제도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에서의 평가와 동일한 정도의 합리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평가기준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회사 규모에 따른 평가방법의 구분과 주주의결권 비율에 따른 평가방법의 구분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할증·할인제도의 도입 필요성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양한 평가방법을 도입하고 다양한 평가기준을 통하여 분석한다고 하여도 그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 이유는 동일한 기업의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라 할 지라도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입장과 처지에 따라 주식양도가 갖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49%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2%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새롭게 2%를 취득하여 주주가 된 경우에 동일한 2%의 주식거래이지만 이것이 갖는 의미는 매우 다르다. 또한 동일한 주식의 거래이지만 시장성 높은 상장기업의 주식거래와 시장성 없는 비상장기업의 주식거래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상장주식의 경우 이러한 요소들이 시장에서 평가되어 가격에 반영 되겠지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주식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 적정하게 할인 또는 할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하여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여 할증평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할증평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5호는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는 경우의 하나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할증평가의 근거가 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당해 주식발행법인이 계속기업으로 존속하는 때에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

라서 청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미 경영권 프리미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에 대한 개정이 요구된다.

아울러 회사의 경영권과 관련한 주식에 대해 할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경영권과 관련 없는 주식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을 할인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상장주식의 할인평가와 관련해서 (i)시장성의 여부 (ii)경영참여 가능성 및 (iii)경영상 핵심 인물의 변동 등을 주요 고려사항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이 중에서 자산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이론적으로 볼 때에 자산에 기초한 평가방법과 초과이익자본화법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혼합형이라고 할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주당 순자산가치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순자산가액에는 내재영업권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내재영업권은 일종의 초과이익 개념을 활용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50%에서 자기자본에 대한 일정 수익률을 차감한 값을 국세청장 고시 이자율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의 자산가치 평가방법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업의 자산가치 평가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추가로 기업의 가치 평가에서 자산가치 평가방법을 한 가지 선택사항으로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자산가치 평가방법은 수익가치 평가방법에 비하여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의 개입 여지가 낮기 때문에 다른 방법에 비하여 더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매우 정교하게 측정이 가능하다. 자산에 기초한 평가방법은 기업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

IV. 이슈별 분석과 개선방안 123

으며, 따라서 기업지분의 가치는 이러한 기업 자산의 총가치에서 부채의 총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라는 개념에 기초한다.

자산에 기초한 평가방법에는 장부가치법(Book Value Method), 대체가치법(Replacement Value Method), 그리고 자산축적방법(Asset Accumulation Method)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자산축적방법이 가장 정확한 측정방법이며 소규모 기업에 적절하다. 자산축적방법을 비상장 기업의 평가에 있어서 하나의 선택으로 추가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 방법은 대상이 되는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다른 분류로 나눈 다음에 각 분류들은 분석되고 또한 별도로 가치가 평가된다. 이 방법은 주로 소규모 기업의 가치 평가에 사용되는데 기본적인 가정은 유형자산에 대한 정상수익률을 초과하는 기업의 수익은 기업의 무형자산에 기인한다는 개념이다. 또한 대상 기업에서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분리하여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평가한다. 자산축적방법의 장점은 무형자산의 평가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자산축적방법의 시작은 원가에 기초한 대차대조표이다. 가치에 기초한 대차대조표는 두 가지 면에서 원가에 기초한 대차대조표와 내용면에서 차이가 있다. 하나는 자산과 부채계정의 잔액이 재평가가 되며, 다른 하나는 몇 개의 새로운 자산이 추가된다.

자산접근법(자산가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별 자산·부채를 시장가치로 측정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국내외의 회계기준에서는 가능한 경우 개별 자산·부채의 시가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 왔으나, 여전히 장부가액과 시장가치의 차이는 존재하므로 자치평가 목적으로는 장부가액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는 우선 해당 자산의 중고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면 그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중고가액이 가장 정확한 시장가치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역사적 원가에서 진부화 등을 감안해 주는 방식으로 대체원가나 재생산원가를 계산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때 감안하는 진부화 요인에는 물리적 감소, 기능적 진부화, 기술적 진부화, 경제적

진부화 등이 있다. 한편, 자산접근법을 적용하는 데 가장 어려운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무형자산의 가치 측정과 관련된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특허권 등 기술가치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무형자산 평가는 개별 무형자산별로 별도의 평가기법을 개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소득접근법과의 혼합방식인 초과이익방식을 통해 일괄계산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인 접근방식일 수 있다. 이와 함께 토지, 건물이나 기계장치와 같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해당 자산의 전문가에 의해 평가된 감정평가액을 개별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액으로 수용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4. 기업상속제도 개선

기업인들이 기업상속과 관련하여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i) 세 부담 (ii) 비상장주식 평가의 어려움이라는 두 가지 문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세 부담과 관련한 문제는 과다한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문제이다. 창업자는 사업을 후계자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과다한 상속세로 인해 기업을 유지·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상속세 납부를 위한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 주식이나 기타 자산을 처분해야 하며, 이것은 기업의 운용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소유주이자 경영자는 자신의 사업체를 후계자에게 승계시키기 위해 주식을 생전에 증여하거나 상속하게 된다. 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현재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과다한 세금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적당한 후계자가 있어도 증여세가 부담스러워 증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과다한 상속세로 인해 사업승계를 포기하는 후계자도 어렵지 않

게 발견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 문제는 많은 중소기업이 비상장주식회사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주식회사인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승계를 위해서는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해야 하는데, 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게 된다. 그런데 보충적 평가방법 자체가 정확한 주가를 산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도 중소기업의 경우 주식이 쌀 때 후계자에게 이를 이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고 이익을 배당하지 않아 사내에 유보함으로 인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가 과다하게 평가되면 주식가격이 더 비싸지므로 사업승계가 더욱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많은 국가들은 중소기업의 사업승계와 관련한 상속 및 증여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사업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통한 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1월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상속·증여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나름의 대책을 마련하였다(조특법 제100조의2).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고 있지 않으며 중소기업의 사업승계가 본격화되는 경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본 논문은 중소기업의 사업승계와 관련한 문제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다 부과에 관한 문제점과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문제점으로 구분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가. 우리나라 기업상속제도 현황

1) 기업승계 상속공제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경영하던 중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3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그 공제한도를 대폭 확대 하되 가업을 상속받은 후 10년 안에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가업용 자산을 100분의 80(5년 이내에는 100분의 90)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상속세를 추징하도록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30억원 한도)과 2억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업상속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고,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제조업 등)이어야 한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이어야 하고, 가업을 영위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5년 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가업상속으로 공제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추가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가업상속 재산은 다음을 의미한다.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에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이고,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에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이 있다.

2)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 특례

상속세(증여세)는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특정의 경우 납부의 기한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납세부담을 이연시키는 제도로써 '연부연납'이 있다. 이는 상속재산(증여재산)의 환가 과정의 필요와 상속재산(증여재산)에 대한 정부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연부연납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상속세(증여세)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것과 연부연납에 대한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가 있을 것을 명기하고 있다.

연부연납의 기간은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최장 5년이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100분의 50을 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 거치 12년의 범위에서, 그 외의 가업상속재산은 연부연납 허가 후 2년 거치 5년의 범위에서 연부연납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3)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시점에는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이 제도는 출산을 저하 및 고령화 진전에 대응하여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 이전을 통하여 경제활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2005년에 도입되었다. 상속시에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에 포함되고 세액공제를 통하여 정산된다.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i)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여야 하고, (ii)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iii) 시행령 제27조의 5 제7항에 규정된 업종 외의 업종을 영위하여야 한다.

4)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나. 외국 기업상속제도 현황

〈표Ⅳ-12〉 주요국의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 운영 현황

국 가	세율	기업관련	분납제도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율 : 18~45% · 최고세율 적용구간 : 250만달러 이상 · 면세점 : 70만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기업 승계 시 최대 130만달러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10년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율 : 10~50% · 최고세율 적용구간 : 3억엔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장 주식에 대해 중소기업 10%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만엔 초과시 최대 5년
영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율 : 40% · 최고세율 적용구간 : 24.2만파운드 이상 · 면세점 : 24.2만파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배주식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장기업 100% - 사업에 이용되는 개인자산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이전의 경우 10년
독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율 : 7~50% · 최고세율 적용구간 : 2,600만유로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승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6만유로 공제후 - 잔액의 35% 차감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 동사업계속시 10년
프 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율 : 7~50% · 최고세율 적용구간 : 170만유로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용 자산에 대해 75%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상속시 5년

자료 : 일본 중소기업청(2007)

1) 미국

미국의 동향을 개관하면, 먼저 현행 제도는 1997년부터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130만달러까지 비과세하는 조치가 처음으로 채택되었고 사업용 자산의 평가에 대한 특례나 연납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첫 번째로, 1997년에 창설된 사업용 자산에 관한 130만달러까지의 비과세제도가 있다. 이 때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i) 개인 경영이나 법인 형태를 불문하고 미국내에 사업용(Trade or Business)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산일 것. 주식 등의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다른 가족이 50%를 초과하여 보유(2가족이라면 70% 초과 보유, 3가족이라면 90% 초과 보유)하고 있을 것

ii) 상속전 3년간, 주식 등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았을 것

iii) 상속인이나 가족이 상속 전 8년 중에서 5년 이상, 해당사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고 있었을 것(상속 전의 실질적 종사기준)

iv) 상속인이나 가족이 상속 후 10년 내에 연속된 8년 중 5년 이상 해당사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할 것(상속 후 실질적 종사조건)

요약하면, 상속 후 10년 이내에 8년간 중에서 5년간 실질적으로 종사하고 있지 않았거나 가족 이외에게 해당자산이 양도되거나, 위의 공제여건을 만족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연도에 부과세가 과세된다.

두 번째는, 개인사업자만에게 적용되는 소규모사업자산의 상속세 평가특례이다. 통상 부동산은 시가로 평가되지만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면 76만달러를 감액하는 것을 상한으로 하여 현재 이용가치에 근거한 평가가 가능하게 된다. 요건은 물적자산(토지·건물 등)이 가족에게 이전될 것, 상속 전 8년 중 5년 이상 상공업·농업에 사용했을 것, 대상 물적자산이 피상속인의 총자산의 25% 이상을 점유하고 있을 것 등이 있다.

세 번째는, 소규모 사업용 자산의 연납제도가 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지분, 주식에 대해서 당초 4년간은 이자세의 납세만 납부하고, 그 후 최대 10년간 연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자세는 유산액 100만달러까지는 2%, 그 이상은 9%로 하고 있다. 또한 조합지분·주식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권리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조합원주·주주의 수가 15인 이하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네 번째는, 가족이 구성원이 되어 조성한 파트너십의 지분이 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시에 통상보다 30%에서 40% 낮은 평가를 하는 것이 국세청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가족파트너십의 자산평가 경감).

미국의 가족 소유 사업에 대한 특별공제제도는 다음과 같다. 사업의 소유자이자 경영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산세 부담으로 인하여 가족이 사업의 운영 혹은 소유를 포기할 수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미국의 경우에는 가족 소유의 사업은 유산에서 특별공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1997년 12월 31일 이후 사망한 자의 유산에서 자격이 되면, (i) 고인이 보유한 가족 소유 사업의 권리나 (ii) 130만달러의 한도 내에서 고인의 재산에 적용되는 공제대상을 제외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고인의 유산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으려면 자격이 있는 피상속인에게 물려주는 고인의 가족 소유 사업권이 조정된 총유산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유산집행인은 유산에 대하여 권리를 보유한 모든 사람에게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및 가족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상속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입법을 2001년에 단행하였다. 징벌적 성향이 있는 높은 세율의 상속세는 사업용자산의 규모에 비하여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무거운 부담이 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결과이다. 가족기업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3년 내에 파탄을 맞게 된 승계자 10명 중 9명이 그 실패 요인으로 상속세를 꼽고 있다. 상속세 납부가 완화되면 가족기업이 연방정부에 징벌적 조세를 납부하기 위해 해산하거나 자산을 매각하지 아니하고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승계할 수 있어 기업의

IV. 이슈별 분석과 개선방안 131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상속세 완화의 주된 내용은 2010년에 상속세와 조부가 손자에게 상속하는 세대생략이전세(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를 폐지하고, 2009년까지 상속세와 세대생략이전세의 통합세액공제에 의한 면제금액을 점진적으로 증액시키고, 최고명목세율은 점진적·단계적으로 인하 조정하는 방안이다.

미국의 사업승계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세제로는 적격소규모사업자 자산의 비과세 조치(QFOBI: Qualified Family Owned Business Interest exemption)가 있다. 사업용 자산에 관한 상속세 경감조치로서 1997년 도입하였으며, 사업용 자산에 관련한 상속세에 대하여 130만달러까지는 비과세로 경감해주는 제도이다. 그 대상은 다음의 주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지분비율 50% 초과하여야 하고(상속 전 3년간 비상장일 것), 둘째, 상속 전 8년 중 5년 이상 사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고 있어야 하고, 셋째, 상속 이후 10년 동안, 연속하는 8년 중 5년 이상 사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며,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의 전체 자산 가운데 사업용 자산의 비율이 50%를 초과하여야 한다.

2) 일본

일본의 경우에 사업승계와 관련하여 개인경영의 경우와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상속세 과세평가액의 계산에 대하여 특례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즉, 개인의 경우에 조세특례조치법 제69조의 4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택지에 대하여 면적요건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상속세의 과세평가액을 80% 감액하는 특별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법인의 경우에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조치법 제69조의 5에 의하여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과세평가액의 10%를 감액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앞에서 서술한 사업용 택지와 비상장주식에 대한 특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산 중에 택지나 사업에 사용되었던 택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택지 등의 평가액의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특례가 있다. 이것을 소규모 택지 등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특례라고 하고 이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이나 유증을 통하여 택지 등을 취득한 개인이다.

이 특례의 적용을 받은 택지 등은 특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한도 별 감액률은 다음과 같다. (i) 상속 개시 직전에 피상속인이나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피상속인의 친족의 사업용이나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택지 등 일 것 (ii) 건물이나 구축물의 부지용으로 사용될 것 (iii) 재고자산이나 이에 준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iv) 일정한 한도면적 내일 것 (v) 상속세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분할되어 있을 것 등이다.

일본의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는 다음과 같다. 일본의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도입취지는 고령화 진전과 동반하여 상속에 의한 세대간 재산 이전의 시기가 종래부터 크게 늦어지고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고령자가 보유한 자산의 유효 활용을 통해 경제사회 활성화에도 이바지한다는 사회적 요청 등을 근거로 하여 장래에 상속관계에 있는 부모와 자식간 재산이전에 대해 생전의 증여와 상속과의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산이전의 원활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3년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는 65세 이상의 고령인 부모가 성인(20세 이상)인 자식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2,500만엔까지는 증여시에 과세하지 않고 상속세로서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의 도입으로 납세자금의 경감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금 준비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되어 사업승계가 쉬워졌다. 또한 소득이 생기는 재산을 생전에 증여함에 따라 한층 더 사업승계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의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는 향후 보다 효과적인 사업승계를 위

IV. 이슈별 분석과 개선방안 133

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일본의 경제산업성과 중소기업청은 2007년도 세제개정시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에 있어 65세로 제한된 부모의 나이를 철폐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후계자를 둘러싼 기업의 집안싸움을 예방하기 위해 의결권 없는 주식에는 상속세 평가를 20% 경감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 후계자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00년 이상 된 기업이 1만 5,000개에 달하는 일본 역시 중소기업의 경영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2005년 10월 '사업승계협의회'를 설립해 가업승계 기업에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토지에 대한 경감조치로 특정 소규모 택지 상속시 상속세액 평가를 최대 80% 경감하고 있으며,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를 경감해 주고 있다. 즉,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상속인이 이를 3년 이내에 발행회사에 되판 경우 의제배당과세(최고세율 50%)가 아닌 주식양도익과세(세율 20%)를 적용한다.

일본에서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 재산의 상속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경영권 할증과세가 없으며, 최근에는 경영승계의 원활화를 통한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 인하 등 중소기업 관련 세제를 개정하는 등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2006년 상속세 최고세율을 종전 70%에서 50%로 인하하였으며, 유보금 과세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여 가족회사에 대한 이익 유보금 과세제도를 철폐하였다(2007). 60세 이상(기존 65세) 중소기업 경영자가 경영승계를 위해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경우 3,000만엔(기존 2,500만엔)까지 비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누진세를 부가하지 않고 유보했다가 추후 상속시 정산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를 확대하였다(2007). 상속세 분할 납부가 20년간 허용되고, 이자율도 1999년 4월부터 연 5.4%에서 3.6%로 하향 조정하였다.

안정적인 경영승계를 위한 의결권 분산 대책 또한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회사법 시행으로 다양한 주식 종류를 이용하여 후계자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에 권한이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2006. 5. 1). 주식 내용을 변경하여 경영자 사후에 후계자에게는 보통주식을, 사업과 관계없는 상속인에게는 의결권 제한 주식을 상속할 수 있게 하였다. 주식평가와 관련해서는 각종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을 개선하였다. 배당우선 무의결권 주식이나 거부권부 주식의 상속에 대하여는 5% 할인 평가하여 과세하는 등 의결권 방어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였다(2007. 4).

정부가 2008회계연도 기간중에 상속세 과세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취지를 규정하기 위하여 비상장주식의 상속세 납세유예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세법 일부 개정안을 2009 회계연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승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상속세 부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비상장주식 등의 상속세에 대해서는 고용 유지를 비롯한 5년간의 사업 계속을 요건으로 하여 현행 10% 경감에서 80% 납세유예로 대폭 확대하였다. 2009회계연도 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안의 시행일(2008년 10월 1일 예정) 이후 상속에 대하여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3) 영국

사업회사(개인경영도 포함)의 사업용 자산이나 주식의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상 100% 공제대상이 된다. 또한 상속대상의 형태에 따라 50% 공제도 적용된다. '사업용 자산의 공제'의 중요한 요건은 2가지인데, 사업회사(개인경영도 포함)이어야 하고 상속 전 최저 2년 전부터 해당 사업용 자산을 실제로 보유·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영국의 사업승계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영국 국세청은 이 제도에서 개인자산을 가장해 놓은 것은 아닌가,

IV. 이슈별 분석과 개선방안 135

임대업의 렌트(rent)수입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고 상속세만 부과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한 생전증여는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CGT) 및 상속세(Inheritance Tax, IHT)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가업인 사업이 직계비속에게 승계될 경우에는 세무부담을 경감하거나 일정한 경우에는 비과세로 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사업용 자산의 이전과 관련하여 영국 상속세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속세(IHT)는 상속·증여 기타 재산의 자발적 처분 또는 이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양수인이 아닌 양도인에게 부과된다. IHT는 주로 사망에 의한 재산의 이전으로 과세가 되지만 생존중의 증여 및 그 밖의 양도도 과세대상이 된다(예를 들면, 양도인이 양도후 7년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 조건부증여일 경우 또는 재량 신탁을 위한 증여일 경우).

자본이득세(CGT)란 자산(비과세자산을 제외)의 처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이나 소득세의 대상으로 계상되지 않는 것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 CGT의 대상이 된다. 비거주자는 영국에서 행한 거래 또는 사업에 사용되는 일정 자산을 처분할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된다. CGT의 대상범위는 광범위하여 모든 형태의 재산이 명확히 비과세로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영국에 소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자산으로 간주된다. 명확히 CGT가 비과세가 되는 자산에는 자가용차, 저축증서 및 시장성이 없는 유가증권, 납세자의 유일 혹은 주된 주거, 유형의 동산(단, 6,000파운드 이하로 매각되는 것에 한함)이 포함된다.

1992년 재정법(No. 2) 제73조에 따라 사업용 자산 또는 농업용 자산의 자산액을 상속세의 산정으로부터 100% 공제하는 것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절 과세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사업의 승계가 용이하다. 이 제도는 소유 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양도되

는 자산가치 중 특정한 종류의 사업용 자산에 귀속될 가액을 소정의 비율로, 생전 또는 사망시에 양도될 가치로부터 공제하며 소유의 이익 유무에 관계 없이 고정자산도 적용 대상이 된다. 특정 종류의 재산에 대해서는 공제 비율이 100%이다(즉, 실제로는 IHT가 전액 면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상 농업용 자산의 공제에 대한 내용을 생략하고 사업용 자산에 대한 공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본다.

영국의 사업용 자산 등에 대한 경감규정은 다음과 같다. 영국의 경우 사업용 자산과 농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경감해주고 있다. 감면방법은 적격자산의 과세평가액에 법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만큼 과세가액을 감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면비율(rate of relief)이 100%인 경우에는 사실상 그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과세를 전액 면제하는 결과가 된다. 이 사업용 등에 대한 경감규정은 생전에 하는 증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경우 사업용 자산이 경감을 받으려면 사망한 사람이 무상이전 직전에 최소한 2년 이상 그 경감 대상이 되는 자산을 소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생전증여의 경우에는 이 경감 적용이 제한된다. 즉, 증여자가 그 경감 대상이 되는 자산을 증여한 후 7년 안에 사망한 경우, 그리고 증여받은 자가 경감 대상이 되는 재산을 소유하지 않게 되거나 또는 경감 대상이 되는 자산이 경감 적격을 상실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영국은 사업용 자산의 승계시 경감조치(BPR: Business Property Relief)를 실시하고 있다. 1976년에 도입(경감비율 30%)되어, 1992년에 중소기업 진흥 관점에서 대폭 확충하여 실시하고 있다.

대상 및 경감비율은 비상장기업의 주식 및 개인사업주의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100%를 경감하고 있으며, 회사가 사업에 이용하고 있는 개인 소유의 토지·건물·기계설비는 50%를 경감하고 있다. 주요 요건으로는 피상속인이 상속 2년 전부터 사업용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승계자에 의한 사업계속 요건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증여자가 생전증여 후 7년 이상 생존해 있을 경우

IV. 이슈별 분석과 개선방안 137

증여세가 면제되는 제도(PET : Potentially Exempt Transfer)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 국세 세수 규모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0.9%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4) 독일¹⁴⁾

독일의 상속과세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눈 과세등급(Steuerklasse)에 7~50%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독일 상속·증여세법 제15조 1항에서는 과세등급을 다음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제 I 유형에는 배우자, 자녀 및 입양자녀, 자녀 및 입양자녀의 후손, 사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부모와 그 선대를 포함시키며 제 II 유형에는 제 I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경우의 부모와 그 선대,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1대 후손, 양부모, 사위 및 며느리, 배우자의 부모 그리고 이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 유형별로 보면 제 I 유형에는 7~30%의 세율이, 제 II 유형·제 III 유형은 공히 3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독일의 상속과세는 연방세가 아닌 16개 주(州)세로서 2005년 세수규모는 약 41억유로이며, 총세수의 약 0.7%, 총주(州)세수의 약 2.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상속 관련 세수에서 기업재산 비중은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14) 박중수, 『주요국의 가업승계지원세제의 현황과 시사점』, 2009 참조

〈표 IV-13〉 독일의 현행 상속세율

(단위: 유로, %)

과세대상 취득재산의 가치	인원	과세표준	총결정세액
	I	II	III
75,000까지	7	30	30
300,000까지	11	30	30
600,000까지	15	30	30
6,000,000까지	19	30	30
13,000,000까지	23	50	50
26,000,000까지	27	50	50
26,000,000 초과	30	50	50

자료: 박중수, 『주요국의 기업승계지원세제의 현황과 시사점』, 2009

독일은 '기업승계자 부담 경감을 위한 법안(Gesetzentwurfs zur Erleichterung der Unternehmensnachfolge)'을 제정하였다. 동 법안은 중소기업 및 가족기업에 대해 상속 이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즉, 상속기업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자 없이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준 다음 1년간 기업이 유지될 때마다 10분의 1씩 상속세를 감면하면서 10년간 기업이 성공적으로 운영할 경우 상속세 전액을 면제하여 준다. 이때 상속세 면제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기업이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한다.

독일은 상속세·증여세에 대해 동일한 세율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증여세 부과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부담 경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기업승계시 22.5만유로(약 3억원) 특별공제 후 잔액의 35% 차감 평가, 기업운영에 필수적인 재산은 10년간 과세이연을 해주고 있다.

IV. 이슈별 분석과 개선방안 139

또한 가업승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연방경제기술부와 26개 경제단체가 중심이 되어 '가업승계 우호 캠페인(NEXT-Change)' 등을 전개하고 있다.

독일은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할인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25% 할인 평가하여 상속세 납부를 완화하였다. 1996년에는 자녀가 아닌 자를 후계자로 삼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여 자녀 이외의 친족, 종업원이 계승하는 경우도 감면대상에 추가하였고, 피상속인과의 친소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상속세율도 최고 우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현재 사업용 자산과 관련한 상속세에 대하여 22.5만유로를 공제한 후, 잔액에서 35%를 공제하여 주고 있다. 수혜 대상기업의 주요 요건으로 자본회사에 대해서는 지분비율이 25% 이상이 되어야 하고, 상속 이후 5년 동안 사업용 자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분의 상속 전 보유기간 요건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사업용 자산을 상속에 의해 획득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선택권이 주어진다. 한 번 내려진 선택은 구속적이어서 사후에 변경할 수 없다¹⁵⁾.

① 선택1 : 상속받은 사업을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7년간 계속하는 기업상속은 이전받은 사업용 자산의 85%가 과세에서 제외된다. 다만 종업원 급여총액이 7년후 상속개시 시점의 급여총액의 65% 미만이어서는 아니될 것을 요한다. 그 밖에 총사업용 자산 중 관리자산의 비율은 최고 50%를 넘을 수 없다. 소기업에 대해서는 동시에 150,000유로의 일괄공제가 부여된다.

② 선택2 : 상속받은 사업을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10년간 계속하는 기업상속은 상속세 부담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다만 종업원 급여총

15) 박중수, 『주요국의 가업승계지원세제의 현황과 시사점』, 2009

액이 10년 후 상속개시 시점의 급여총액의 1,000% 미만이어서는 아니 될 것을 요한다. 그 밖에 사업용 자산 중 관리자산의 비율은 최고 10%를 넘을 수 없다.

5) 프랑스

프랑스는 2000년부터 사업회사(개인경영도 포함)의 사업용 자산이나 주식의 상속에 50% 공제를 인정하고 상속시 기업양도에 관한 획기적인 경감 특례가 도입되었다. 더불어 2001년부터는 요건이 대폭적으로 완화되었다. 또한 이후 공제율이 확대되어 75%에 달한다.

상속시 기업양도에 관한 프랑스의 조치는 3가지이다. 첫 번째는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상속시 기업지분·주식 및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75%를 공제하는 제도이고 두 번째는 개인기업이 적용대상이 되는 제도로서 상속세·증여세를 소득과세의 비용으로 계상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이며 세 번째는 기업상속의 경우에는 최장 15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프랑스의 세법은 동족사업의 상속(프랑스의 세법의 제787B조 및 제787C조) 및 일정한 증여에 대해서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 프랑스 세법 제787B조에 의한 조세조치의 적용은 회사 소유자가 사전에 계승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조건으로 하며, 준비가 없었을 경우에는 우대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제도는 회사·자영업자 모두가 대상이 되고 있다. 즉, 통상의 상공업보다 넓게 대상이 되고 있다. 부동산임대업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고 임대업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실제로 개인자산의 운용이나 금융자산의 운용만 하는 경우에는 고용 창출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주회사는 사업회사의 지주라면 대상이 되지만 운용자산의 내용에 따라 일정 정도의 제한도 있다.

프랑스는 개인기업 및 비상장기업에 대한 특례로 2000년부터 사업

IV. 이슈별 분석과 개선방안 141

용 자산의 경우 50%에 대해 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공제 요건을 완화하였고, 2005년에는 공제비율을 75%로 확대하여 적용했다.

또 상속·증여를 통한 기업양수시 납세의무 확정일로부터 5년간 분납 또는 10년간 매 6개월마다 1/20씩 분납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승계 친화적인 조세체계의 구축을 위해 상속과세로 인하여 기업활동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다.

상속 및 증여로 인하여 기업을 양수하는 경우에 해당 세금은 납세의무 확정일 이후 5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개인기업의 경우 산업, 상업, 수공업, 농업 및 자유직업의 경우이고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적어도 5% 이상을 상속이나 증여받아야 한다. 한편, 상속으로 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50%를 상속세 면제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증여에 의해 기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75세 이하인 경우에는 30%, 65세 이하인 경우에는 50%를 공제한다.

기업을 상속받는 자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그 기업의 50%에 상응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법인기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i) 해당주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고 (ii)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해당법인의 34%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의 법인에 적용되며 (iii)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6년간 그 주식을 소유하여야 하며 (iv)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인은 그 법인의 활동을 5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기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i) 무상으로 피상속인에 의해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적어도 2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ii)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후 적어도 6년간 유지하여야 하며 (iii) 기업승계를 한 경우에는 적어도 5년간 사업을 유지하여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기업양도에 관한 상속세 경감 특례를 시행하고 있다. 고용창출 및 경쟁력 강화 관점에서 사업용 자산에 관한 상속세 경감조치를 2000년에 도입하여 50% 감면을 시행하였으며, 2001년 요건을 완

화한 이후 2005년에는 경감비율을 75%로 확대하였다. 경감의 주요 요건으로는 첫째,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서는 상속 2년 전부터 보유하고 있을 것(비상장회사에 대해서는 34% 이상의 주식보유), 둘째, 상속 후 6년간 승계자가 사업용 자산을 계속 보유할 것(계약 등에 의한 약속), 셋째, 상속 후 5년간 승계자가 사업에 종사할 것(비상장회사는 경영자의 지위 계속) 등이고, 승계한 이후 요건에 대해서는 매년도 제출되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세무서가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상속세 제 지원은 피상속인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형제자매 등에 대한 세율이 배우자·자녀보다 높고 공제액은 작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 개선방안

중소기업의 사업승계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납세자금의 문제이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승계를 위한 상속이나 증여시 지나치게 높은 세율로 인하여 사업승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상속세나 증여세가 합리화될 수 있는 근거가 소득의 재분배나 부의 집중현상 조정 등의 기능이라고 하였을 때, 사업승계와 관련된 과세는 이러한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과도한 세부담으로 기업이 계속되지 못한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보다 큰 비용 낭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사업승계와 관련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경영 프리미엄에 대한 할증평가를 배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현재 한시적으로 할증평가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그 시한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사업승계를 위한 제한된 범위에 대해서는 할증평가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IV. 이슈별 분석과 개선방안 143

아울러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소유자 및 경영자가 생존 시 후계자에게 사업체를 승계시켜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예가 앞에서 살펴본 일본의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와 독일의 기업승계자 부담 경감을 위한 법안이다. 동 제도는 증여를 통한 효과적인 사업승계의 방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도입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세대간 자산이전에 과세되는 상속증여세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자산이전과세의 현황을 과세체계, 세수구조, 세부담 지표, 자산이전 규모 및 생전증여비율의 추이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세대간 자산이전행위에 대한 분석을 상속 동기에 대한 연구, 개인자산이전행위에 대한 실증분석, 기업상속행위에 대한 연구, 상속·증여세의 주요 논점 등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자산이전과세의 현황을 과세체계, 세수구조, 세부담 지표, 자산이전 규모, 생전증여비율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상속세수와 증여세수는 2002년까지 비슷한 수치를 보이다가, 2003년 이후 증여세수가 상속세수를 현저히 앞지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최근 다른 나라들 추세와 유사하게 자산이전과세의 비중이 상속세에서 증여세로 이동하는 것을 보여준다. 상속·증여세수의 GDP 대비 세수비중은 OECD국가들과 비교할 때 중간 수준을 나타냈다. 2000년 이후 상속세의 평균유효세율은 34~37%, 증여세의 평균유효세율은 25~31%의 분포를 나타냈다. 이전되는 재산의 유형으로 볼 때, 2004년 이후 금융자산의 비중이 토지의 비중을 앞질렀다. 상속과 대비되는 생전증여비율은 2000년부터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에서는 개선방안 및 시사점을 상속·증여 과세체계 조정, 상속·증여 공제 조정, 재산평가 방법 개선, 가업상속제도 개선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째, 상속·증여 과세체계를 검토·분석하였을 때 좀 더 과감한 세율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 우선 OECD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소득세수 대비 상속세수 또는 소득세수 대비 재산세수 비

중이 우리나라가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상속세 세율을 소득세 세율과 비교할 때 상속세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최소이전금액의 크기도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향후 상속세 세율의 완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상속·증여 공제의 범위를 재조정하여야 하며, 특히 영세점을 낮추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의 상속세 면세점 또는 영세점을 1인당 GDP 수준의 배수로 비교·검토한 결과, 우리나라는 거의 60배로 나타나 미국을 제외하고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상속·증여 공제범위 재조정의 한 방향으로 영세점을 낮추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이전 대상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 특히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에 관해서는 평가방법의 다양화, 평가기준의 다양화, 그리고 할증 또는 할인제도에 대한 검토를 고려할 수 있다. 넷째, 기업상속제도는 그간 여러 방면으로 기업상속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도하였지만 결국 좀 더 실제적으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자산이전과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분석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이 완결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속·증여세가 소득세·재산세 구조의 접점에 위치하고 있음에 유의한다면, 우선 소득세·재산세 구조의 선택이 선행된 후에 상속·증여세의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선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가 개선방안 선택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본 보고서에서는 상속·증여행위에 대한 자료로 『국세통계연보』를 사용하였다. 선진국의 연구에서 보듯이, 좀 더 정직한 모형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세무자료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기업상속과 관련하여 좀 더 정직한 형태의 자료가 사용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미시적 접근에 근거한 분석이 상속·증여세제에 직면한 개인의 자산이전행위에 대한 바로미터로 활용되어야 거시경제 차원의 시산

(calibration)분석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자산으로 금융자산의 비중이 상승하였지만 부동산자산의 비중이 제일 크다. 따라서 부동산자산에 대한 과세, 자산평가, 공제 등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 또한 미시적 자료의 사용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향후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정도라 하겠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이 논의의 출발점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나라 경제가 선진화하면서 자산집적에 대한 정책개발이 자본가 정신(entrepreneurship)의 제고에 주안점을 두기 위해서는, 자산에서 자본으로의 전환이 세대간 이전에 의해서 약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향후 과제로 돌린다.

참고문헌

- 김유찬, 「독일의 상속·증여세제도와 정책적 시사점: 포괄주의 개념의 도입 및 기업상속에 대한 공제의 확대」, 『재정포럼』, 4월호, 한국조세연구원, 2003.
- 김진, 「상속·증여세의 현황 및 경제적 효과: 세대간 자산이전 모형을 중심으로」, 『재정포럼』, 9월호, 한국조세연구원, 2005.
- 김진·원종학, 『상속·증여세의 경제적 효과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6.
- 국세청, 『개정세법해설』, 각 연도.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일본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 문형표, 「相續稅에 있어서의 衡平과 效率性의 乖離」, 『한국개발연구』 제12권, 제4호, 한국개발연구원, 1990.
- 박용일,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의 변화가 증여동기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12호, 한국산업경제학회, 1999.
- 성낙인·박정훈·이창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법학연구소, 재정경제부 용역보고서, 2003.
- 신상철,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07.
- 이준규, 「상속과 증여에 관한 세무계획」, 한국조세학회: 271-296, 1996.
-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각 연도.
- 조경엽, 『차기정부의 공공부문 개혁방향』, 한국경제연구원, 2007.

최명근, 『미국의 유산세 폐지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2.
 _____, 『상속과세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6.
 한상국·배준호·이광재, 『상속·증여세제의 합리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6.

國稅廳, 『平成14年度版 國稅廳統計年報書』, 2002.
 佐藤慎一, 『図説日本の税制』, 財経詳報社, 2004.
 税制調査會, 「平成17年度の税制改正に関する答申」, 2004.
 _____, 「平成15年度における税制改革についての答申—あるべき税制の構築に向けて」, 2002.
 _____, 「あるべき税制の構築に向けた基本方針」, 2002.
 _____, 「わが國税制の現状と課題—21世紀に向けた國民の参加と選擇—」, 2000.
 中村實, 「少子高齢化時代に對應した相續税のあり方」, 『知的資産創造』 11月号, 2003.
 松田淳・松崎啓介, 『税法便覽』, 稅務研究會出版局, 2005.
 安島和夫, 『相續税法—理論と計算』, 稅務經理協會, 2005.

Adams, J. D., "Equalization of true gift and estate tax rat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 1978, pp. 59~71.

Andreoni, James, "Giving with Impure Altruism: Applications to Charity and Ricardian Equivale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7(6), 1989, pp. 1447~1458.

Becker Gary S. and Nigel Tomes, "Human Capital and the Rise and Fall of Famili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4(3, part 2), 1986, pp. s1~s39.

Bernheim, B. Douglas, "Does the Estate Tax Raise Revenue?,"

- Laurence H. Summers (ed). *Tax Policy and the Economy* 1, 1987, pp. 113~138; "How Strong Are Bequest Motives: Evidence Based on Estimates of the Demand for Life Insura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9(5), 1991, pp. 899~927.
- Bernheim, B. Douglas, Andrei Shleifer, and Lawrence H. Summers, "The Strategic Bequest Motiv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3(6), 1985, pp. 1045~1076.
- Bernheim, B. D. and Robert J. Lemke and John Karl Scholz, "Do estate and gift taxes affect the timing of private transfer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 2004, pp. 2617~2634.
- Carroll, Christopher D., "Why Do the Rich Save So Much?," Joel B. Slemrod (ed). *Does Atlas Shrug?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Taxing the Rich*, Russell Sage Foundation and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 Constantinides, G. and John B. D. and Rajnish Mehra, "Junior is rich: Bequests as consumption," NBER Working Paper 11122, 2005.
- Cox, Donald, "Motives for Private Income Transfer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5(3), 1987, pp. 508~546.
- Gale and Slemrod, "Rethinking the estate and gift tax: Overview," NBER 8205, 2001.
- Gale William G. and John Karl Scholz,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the Accumulation of Wealth,"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8(4), 1994, pp. 145~160.
- Hurd M., "Savings of the Elderly and Desired Bequests," *American Economic Review* 77(3), 1987, pp. 298~312.

- Joulfaian, D., "Choosing between gifts and bequests: How taxes affect the timing of wealth transfers," NBER Working Paper 11025, 2005.
- _____. "Gift taxes and lifetime transfers: time series evidenc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 2004, pp. 1917~1929.
- _____. "The distribution and division of bequests: evidence from the collation study," OTA paper 71, 1994.
- _____. "The federal estate and gift tax: Description, profile of taxpayers, and Economic consequences," OTA Paper 80, 1998.
- Joulfaian, D. and Mark Rider, "Tax evasion by small business," OTA Paper 77, 1998.
- Kaplow, L. "A Framework for assessing estate and gift taxation," NBER Working Paper 7775, 2000.
- Kotlikoff, Laurence J., "Estimating the Wealth Elasticity of Bequests from a Sample of Potential Decedents," Laurence J. Kotlikoff (ed). *What Determine Savings?*, Cambridge, Mass.:MIT Press, 1989.
- Kuehlwein, M., "The non-equalization of true gift and estate tax rat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53, 1994, pp. 319~323.
- McGarry, Kathleen and Robert F. Schoeni, "Transfer Behavior in the Health and Retirement Study: Measurement, and the Redistribution of Resources Within the Family," *Journal of Human Resources* 30(5), 1995, pp. s184~s226.
- Menchik, Paul L., "Primogeniture, Equal Sharing, and the U.S. Distribution of Weal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4(2), 1980, pp. 299~316.

- Nakagami, Yasuhiro and Alfredo M. P., "Housing costs and bequest motives," *Journal of Urban Economics* 33, 1993, pp. 68~75.
- Perozek, Maria G., "The Implications of a Dynamic Model of Altruistic Intergenerational Transfers," Wisconsin, 1996.
- Poterba, J., "The estate tax and after-tax investment returns," NBER Working Paper 6337, 1997.
- Poterba, J., "Estate and gift taxes and incentives for inter vivos giving in the united states," NBER Working Paper 6842, 1998
- Poterba, J. M., "The distributional burden of taxing estates and unrealized capital gains at the time of death," NBER Working Paper 7811, 2000
- Rivers, R. and D. Larry C., "The timing problem for the unified estate and gift tax,"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46, 1979, pp. 125~138
- Schupp, Jürgen & Szydlík, Marc., "Inheritance and gifts in Germany," *Economic Bulletin*, Vol. 41, Issue 3, 2004
- Tomes, Nigel, "Inheritance and Inequality within the Family: Equal Division among Unequals, or Do the Poor Get More?," Denis Kessler and Andre Masson (ed). *Modeling the Accumulation and Distribution of Wealt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 Wilhelm, Mark O., "Bequest Behavior and the Effect of Heirs' Earnings: Testing the Altruistic Model of Bequests," *American Economic Review* 86(4), 1996, pp. 874~892.

<국문요약>

자산이전과세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김진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세대간 자산이전에 과세되는 상속·증여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자산이전과세의 현황을 과세체계, 세수구조, 세부담 지표, 자산이전 규모 및 생전증여 비율의 추이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세대간 자산이전 행위에 대한 분석을 상속 동기에 대한 연구, 개인자산이전행위에 대한 실증분석, 기업상속행위에 대한 연구, 상속·증여세의 주요 논점 등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개선방안 및 시사점으로는 상속·증여 과세체계 조정, 상속·증여 공제 조정, 재산평가방법 개선, 기업상속제도 개선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자산이전과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분석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이 완결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속·증여세가 소득세·재산세 구조의 접점에 위치하고 있음에 유의한다면, 우선 소득세·재산세 구조의 선택이 선행된 후에 상속·증여세의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선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가 개선방안 선택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 경제가 선진화하면서 자산집적에 대한 정책개발이 자본가 정신(entrepreneurship)의 제고에 주안점을 주기 위해서는, 자산에서 자본으로의 전환이 세대간 이전에 의해서 약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ive Asset-Transfer Taxation

Jin Kim

We study several policy suggestions for the enhancement of the Korean inter-generational transfer taxations based on economic modelling, empirical analysis, and international comparisons.

We examine the effects of inheritance and gift taxes upon the economic behavior of asset transfers among generations, which has recently shown an increasing trend. We introduce a multi-stage decision model of transferring monetary and real assets among generations, formalize the ratio of the effective average gift tax rates over inheritance tax rates as the opportunity cost of inter-vivos gift choice relative to inheritance bequeath choice, and highlight the meaningfulness of tax rate change into gift-inheritance mix in asset transfer decisions.

By using international comparisons with the OECD countries, we obtain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or the enhancement of the Korean inter-generational taxation system. Firstly, we find that its tax rates are relatively high, thus it's meaningful to consider the reduction of tax rates. Secondly, it is to be considered that the minimal asset price level for 'zero' taxation should be reduced. Thirdly, Korea needs to increase the flexibility in evaluation methods and evaluation criteria

for transferred assets. Fourthly, Korea needs to promote the transfer from the old generation to the young generation with more vital entrepreneurship.

We report that not only micro tax policies but also macro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are important to enhancing the efficacy and effectiveness of the Korean intergenerational tax system.

〈著者略歷〉

김 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자료 수집 및 정리

류인경 한국조세연구원 주임연구원

研究報告書 09-10

자산이전과세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2009년 12월 23일 인쇄

2009년 12월 30일 발행

저 자 김 진

발행인 원윤희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전화 :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천 세

인 쇄

© 한국조세연구원 2009

ISBN 978-89-8191-453-0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6,000원

